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제6조에 대한 해설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민사 영역)

2021년 12월 31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request to reproduce or republish a translation](#)에 연락해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1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에서 [Case-law] - [Case-law analysis] - [Case-law guides]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목차

일러두기	6
I. 범위: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개념	7
A. 제6조제1항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일반 요건	7
1.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진실하고 진지한” “분쟁”	8
2. 국내법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권리 또는 의무의 존재	10
3. 권리 또는 의무의 “민사적” 성격	13
B. 다른 분쟁 유형으로의 확대	14
C. 주 절차가 아닌 다른 절차에 대한 제6조의 적용가능성	19
D. 제외되는 사항	21
E. 다른 협약 조항과의 관련성	24
1. 제2조(생명권).....	24
2. 제5조(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	24
3. 제6조제1항(공정한 형사재판).....	24
4. 제6조제2항(무죄추정 원칙).....	25
5. 제8조(사생활).....	25
6. 제10조(표현의 자유).....	26
7. 기타 협약 조항	26
II. 법원에 대한 권리.....	26
A. 법원에 대한 권리 및 재판청구권	26
1.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리	28
2. 제한.....	34
B. 포기	39
1. 원칙.....	39
2. 조건.....	39
C. 법적 조력	40
1. 법적 조력 제공	40
2. 제공된 법적 조력의 실효성	41
III. 제도적 요건.....	43
A. “법원”의 개념	43
1. 독자적 개념	43
2. 관할권의 심급 단계	45
3. 완전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심사	45
4. 판결 집행.....	50
a.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사법적 결정의 신속한 이행에 대한 권리.....	50
b. 최종 사법 결정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권리.....	53
c. 외국 법원 또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의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상호인정 및 집행	54
B. 법에 따른 설립	55
1. 원칙.....	55

2. 원칙 적용.....	56
C. 독립성과 공평성.....	57
1. 일반 고려사항	57
2. 독립적 법원	59
a.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	60
b. 의회에 대한 독립성	60
c. 당사자에 대한 독립성	60
d. 최고사법위원회에 대한 판사의 독립성에 관한 구체적 사례.....	60
e. 독립성 심사기준	61
i. 기관 구성원의 임명 방법	61
ii. 기관 구성원의 임기	61
iii. 외압에 대한 보장	61
iv. 외관상의 독립성	62
3. 공평한 법원	62
a. 공평성 심사기준	62
i. 주관적 접근법.....	63
ii. 객관적 접근법.....	64
b. 사법적 공평성 결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	65
i. 기능적 성격의 상황	65
α. 같은 사건에서 자문 기능과 사법 기능의 동시 행사.....	65
β. 같은 사건에서 사법 기능과 비사법 기능의 동시 행사.....	65
χ. 각기 다른 사법 기능의 행사	66
ii. 개인적 성격의 상황	68
IV. 절차적 요건.....	69
A. 공정성.....	69
1. 일반 원칙.....	69
2. 범위.....	71
a. 원칙	71
b. 예시	74
3. 제4심.....	79
a. 일반 원칙.....	79
b. 재판소의 감독 범위와 한계	80
c. 국내 판례법의 일관성	82
4. 당사자주의 절차.....	84
5. 무기대등의 원칙.....	85
6. 증거 채택 및 사용.....	87
a. 증인의 증거	88
b. 전문가 의견	89
c. 증거 비공개	90
7. 사법적 결정의 논증	90
B. 공개 심리.....	93
1. 심리.....	93
2. 선고.....	98
C. 절차의 기간.....	99
1. 절차의 기간에 대한 판단	100
2. 합리적인 기간 요건에 대한 심사.....	101

a. 원칙	101
b. 기준	102
i. 사건의 복잡성	102
ii. 청구인의 행위	102
iii. 관할 기관의 행위	103
iv. 분쟁의 쟁점	104
인용 판례 목록	106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6조의 민사 규정(civil limb)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이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해설서와 함께 [제6조에 대한 해설서, 형사 규정\(Guide on Article 6, criminal limb\)](#)을 참고할 것을 권합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들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 154, 1978, Series A no. 25,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2016, § 109).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89).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2005, no. 45036/98, § 156, ECHR 2005 VI,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루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6조제1항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 또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추의 결정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며, 다만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정의의 이익(interests of justice)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하여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

HUDOC 키워드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 (6-1) - 결정 (6-1) - 분쟁 (6-1) - 형사소추 (6-1) - 결정 (6-1) - 재판청구권 (6-1) - 공정한 심리 (6-1) - 대립당사자적 재판 (6-1) - 무기대등의 원칙 (6-1) - 법적 조력 (6-1) - 공개 심리 (6-1) - 구두 심리 (6-1) - 언론 보도로부터 제외 (6-1) - 대중 공개로부터 제외 (6-1) -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6-1) - 도덕의 보호 (6-1) - 공공질서의 보호 (6-1) - 국가안보 (6-1) - 청소년 보호 (6-1) -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6-1) -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6-1) - 정의의 이익을 해하다 (6-1) - 합리적인 기간 (6-1) - 독립적 법원 (6-1) - 공정한 법원 (6-1) -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 (6-1) - 공개판결 (6-1)

I. 범위: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개념

협약 제6조제1항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을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제6조제1항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일반 요건

1.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라는 개념은 피청구국의 국내법만을 참고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는 협약에서 파생된 “독자적인” 개념이다.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지위, “분쟁”을 규율하는 법의 성격(민법, 상법, 행정법 등) 및 해당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한 국가기관의 성격(일반법원, 행정기관 등)과 무관하게 적용된다(*Bochan v. Ukraine (no. 2)* [GC], 2015, § 43; *Nait-Liman v. Switzerland* [GC], 2018, § 106; *Georgiadis v. Greece*, 1997, § 34).
2. 하지만, 협약에 포함된 독자적 개념이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민사상의(civil)”라는 형용사가(이 형용사가 제6조가 적용되는 범주의 “권리와 의무”에 필연적으로 부과하는 제한 포함) 조항 본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제6조제1항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Ferrazzini v. Italy* [GC], 2001, § 30).
3. 민사 사안에서 제6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장 먼저 “분쟁(dispute)”(프랑스어로 “*contestation*”)의 유무에 달려 있다. 둘째, 분쟁은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근거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분쟁은 진실하고 진지한 것이어야 한다. 분쟁은 권리의 실제 존재뿐만 아니라 권리의 범위와 행사 방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절차의 결과는 쟁점이 된 “민사상의” 권리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연관성이 약하거나 결과와 너무 동떨어진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적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Károly Nagy v. Hungary* [GC], 2017, § 60; *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99; *Nait-Liman v. Switzerland* [GC], 2018, § 106; *Denisov v. Ukraine* [GC], 2018, § 44).

4. 협약 제6조의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이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므로, 제6조제1항의 민사 영역에 따라 제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재판소는 제6조제1항의 형사 영역에 따라서도 동 조항이 적용되는지 평가할 수 있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21).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제6조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사건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가 직권으로 이 문제를 검토할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Selmani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7, § 27).

1.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진실하고 진지한” “분쟁”

5. “분쟁”이라는 단어에는 형식적인 의미가 아닌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Le Compte, Van Leuven and De Meyere v. Belgium*, 1981, § 45; *Moreira de Azevedo v. Portugal*, 1990, § 66; *Miessen v. Belgium*, 2016, § 43). 외관상의 의미와 사용된 문구를 넘어 각 사건의 실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Gorou v. Greece (no. 2)* [GC], 2009, § 29; *Boulois v. Luxembourg* [GC], 2012, § 92). 따라서, 논쟁적 측면과 비논쟁적 측면이 혼합된 절차는 제6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속할 수 있다(*Omdahl v. Norway*, 2021, § 47, 상속인들 간 피상속인의 재산 분할에 관한 사건). 그러나 제6조는 반대 당사자가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일방적 비송사건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Alaverdyan v. Armenia* (dec.), 2010, § 35). 제6조는 마찬가지로 다른 권한 있는 국가기관(검찰, 규제기관, 징계기관 또는 입법기관까지도 포함할 수 있음)의 조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 확인 및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보고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보고서가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일지라도 적용되지 않음)(*Fayed v. the United Kingdom*, 1994, § 61).

6. “분쟁”은 진실하고 진지한 성격이어야 한다(*Sporrong and Lönnroth v. Sweden*, 1982, § 81; *Cipolletta v. Italy*, 2018, § 31; *Yankov v. Bulgaria* (dec.), 2019, §§ 26-27). 예를 들어, 에이즈(HIV)에 감염된 재소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재소자가 해당 교정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절차의 경우, 이 조건에 따라 “분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Skorobogatykh v. Russia* (dec.), 2006). 재판소는 또한 검찰이 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제기한 항소에 관한 사건에서, 해당 항소가 청구인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 당사자로 참여한 전체 절차에서 필수 요소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쟁”이 존재한다고 판결했다(*Gorou v. Greece (no. 2)* [GC], 2009, § 35).

7. 심리 적격성에 대한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관한 절차인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Nicholas v. Cyprus* (dec.), 2000; *Neshev v. Bulgaria* (dec.), 2003, 및 언급된 추가 참고 판례 참조; 판사의 검토가 완전히 형식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로 제한되지 않았던 사건인 *Xero Flor w Polsce sp. z o.o. v. Poland*, 2021, §§ 206-209 비교).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절차상의 이유(사전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소했기 때문에)로 각하된 여러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분쟁”이 “진정한” 분쟁도 아니었고 “진지한” 분쟁도 아니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제6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재판소는 이러한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이 각하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청구인들이 소송 대상 상황을 되돌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Astikos Oikodomikos Synetairismos Nea Konstantinoupolis v. Greece* (dec.), 2005; *Arvanitakis and Others v. Greece* (dec.), 2014; *Stavroulakis v. Greece* (dec.), 2014). (관할권이 없음을 이유로 심리를 거부한) 국내 법원이 제기된 법적 문제를 처음으로 판단하도록 요청받은 것은 앞서 설명한 상황과는 다르다(*Markovic and Others v. Italy* [GC], 2006, §§ 100-01). 소송이 접수된 국내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판결은 관련 법령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도 내려질 수 있다(*Károly Nagy v. Hungary* [GC], 2017, §§ 60, 72 및 75).

8. 분쟁은 권리의 실제 존재뿐만 아니라 권리의 범위나 행사 방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Bentham v. the Netherlands*, 1985, § 32; *Cipolletta v. Italy*, 2018, § 31). 예를 들어, 피청구국이 실제로 고문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유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해당 권리의 역외적용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사실은 협약의 목적상 해당 권리에 대한 “분쟁”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Nait-Liman v. Switzerland* [GC], 2018, § 107). 분쟁은 또한 사실문제에 관한 것일 수 있다.

9. *Cipolletta v. Italy*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기업의 행정적 청산절차에서 진실하고 진지한 “분쟁”의 존재에 관한 판례를 발전시켰다. 재판소는 파산절차나 특별행정 청산절차의 맥락에서 담보 채권자에 대한 보증에 관한 판례법을 일원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33-37). 은행 청산과 관련하여 *Capital Bank AD v. Bulgaria*, 2005, §§ 86-88을 참조한다.

10. 절차의 결과는 문제된 권리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예를 들어, *Ulyanov v. Ukraine* (dec.), 2010 및 *Alminovich v. Russia* (dec.), 2019, §§ 31-32 참조). 따라서 연관성이 약하거나 결과와 너무 동떨어진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적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Boulois v. Luxembourg* [GC], 2012, § 90). 예를 들어, 재판소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 허가 연장 결정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절차의 경우 운영 허가 연장 결정과 생명, 신체적 온전성 및 재산의 보호에 대한 권리 사이의 연관성이 “너무 약하고 동떨어져” 있으며 청구인들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임박한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해당 절차가 제6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Athanassoglou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00, §§ 46-55; *Balmer-Schafroth and Others v. Switzerland*, 1997, § 40;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Sdružení Jihočeské Matky v. the Czech Republic* (dec.), 2006 참조; 공장의 제한적인 소음공해에 관해서는 *Zapletal v. the Czech Republic* (dec.), 2010 참조, 또는 이론적으로 가정한 광산 폐기물 처리 공장의 환경 영향에 관해서는 *Ivan Atanasov v. Bulgaria*, 2010, §§ 90-95 참조; *Bursa Barosu Başkanlığı and Others v. Turkey*, 2018, §§ 127-128 비교).

11. 직업 활동을 계속할 권리를 직접 제한하지 않는 징계 절차 역시 제6조의 목적상 “결정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결정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 내려져야 하기 때문이다(*Marušić v. Croatia* (dec.), 2017, §§ 74-75; 다른 맥락에서, *Morawska v. Poland* (dec.), 2020, § 72 참조). 또한, 표절을 주장하며 저자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제6조의 관점에서 볼 때 저자가 좋은 평판을 얻을 민사상의 권리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2 및 73). 그러나 재판소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직책에 다른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한 분쟁의 결과가 합법적이고 공정한 승진 절차에 대한 권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Bara and Kola v. Albania*, 2021, § 58,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12. 이와 대조적으로, 재판소는 제6조제1항이 청구인의 마을이 침수되었을 댐 건설에 관한 사건(*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2004, § 46) 및 청구인의 마을 근처에서 청산가리 침출 공정을 이용한 금광의 운영 허가에 관한 사건(*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33; *Zander v. Sweden*, §§ 24-25)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13. 지역 환경보호협회가 계획허가에 대한 사법심사를 위해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해당 환경보호협회와 그 설립자의 자격을 고려하고 이 협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공간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분쟁과 이 법인이 주장하는 권리 사이에 충분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L'Érablière A.S.B.L. v. Belgium*, 2009, §§ 28-30). 그 밖에도, 개인의 법적 능력의 회복을 위한 절차는 그 사람의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tanev v. Bulgaria* [GC], 2012, § 233).

14. In *Denisov v. Ukraine* [GC] (2018) 사건에서 청구인은 행정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항소행정법원장 직위에서 면직되었다. 청구인은 같은 법원에서 계속 판사직을 수행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5년 임기로 임명된 행정직을 맡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관한 분쟁이 국내법에서 법원장에게 부여한 역할과 직접적인 금전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진지한 분쟁이라고 판결했다(§§ 47-49).

2. 국내법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권리 또는 의무의 존재

15. 협약에서 파생된 “독자적인” 개념인 “권리”의 존재와 관련하여, “분쟁”은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근거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Boulois v. Luxembourg* [GC], 2012, § 90; *Denisov v. Ukraine* [GC], 2018, § 44; *Bilgen v. Turkey*, 2021, §§ 56 및 63).

16. 따라서, 국내 법원에서 청구인이 의존하는 실체적 권리 또는 “의무”(Evers v. Germany, 2020, §§ 67-68)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Roche v. the United Kingdom* [GC], 2005, § 119; *Boulois v. Luxembourg* [GC], 2012, § 91; *Károly Nagy v. Hungary* [GC], 2017, §§ 60-61). 문제의 “권리” 또는 “의무”가 실제로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관련 국내법 조항과 해당 조항에 대한 국내 법원의 해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고(*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2016, § 97; *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100; *Denisov v. Ukraine* [GC], 2018, § 45; *Evers v. Germany*, 2020, § 66), 재판소는 “권리”의 유무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국제법의 연원이나 유럽평의회 공통 가치를 참고할 수 있다(*Enea v. Italy* [GC], 2009, § 101; *Boulois v. Luxembourg* [GC], 2012, §§ 101-102; *Nait-Liman v. Switzerland* [GC], 2018, §§ 106 및 108;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Bilgen v. Turkey*, 2021, §§ 53, §§ 62-64).

17. 국내법의 해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내기관, 특히 법원이 해야 할 역할이다. 재판소의 역할은 이러한 해석의 효과가 협약과 양립하는지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명백히 자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소는 국내 법원의 국내법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Nait-Liman v. Switzerland* [GC], 2018, § 116). 따라서, 국내 상급법원이 문제가 된 제한의 정확한 성격을 관련 협약에 따른 판례법과 그로부터 도출된 원칙에 기초하여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게 분석한 경우, 재판소가 국내법 해석에 관한 문제에서 해당 법원의 견해를 대체하고 해당 법원의 견해와 반대로 국내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국내 상급법원이 내린 것과 다른 결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유가 필요할 것이다(*Károly Nagy v. Hungary* [GC], 2017, §§ 60 and 62; *X and Others v. Russia*, 2020, § 48).

18. *Nait-Liman v. Switzerland* [GC]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제법의 특별한 측면 또한 고려한 후, 청구인이 스위스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소는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릴 때 특히 스위스 정부가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 체계에 필수 요소로 통합되어 국가기관에 이행 의무가 발생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참고했다(§ 108; 또한 *Enea v. Italy* [GC], 2009, § 101 참조; *Boulois v. Luxembourg* [GC], 2012, § 102 비교).

19. 제6조제1항 적용가능성을 판단할 때 국내절차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권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Stichting Mothers of Srebrenica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dec.), 2013, § 120).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진실하고 진지한 분쟁이 있었던 경우, 국내 법원이 해당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88- 89; 또한, 국내 법원이 문제의 쟁점에 대해 처음으로 결정할 것을 요청받은 *Markovic and Others v. Italy* [GC], 2006, §§ 100-02 참조; *Károly Nagy v. Hungary* [GC], 2017, §§ 75-77 및 *X and Others v. Russia*, 2020, § 47 비교 및 대조). 국내법이 변경될 경우, 국내법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관해서는, *Baka v. Hungary* [GC], 2016, § 110을 참조한다.

20. 국내법에서 인정되는 실체적 권리가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동반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권리”가 존재한다(*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99). 청구인이 요청한 조치를 허가할 것인지 결정할 때 국가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일 수도 있다(*Boulois v. Luxembourg* [GC], 2012, § 93; *Fodor v. Germany* (dec.), 2006). 그렇지만, 법 조항 문구에서 재량 요소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Pudas v. Sweden*, 1987, § 34; *Miessen v. Belgium*, 2016, § 48). 실제로, 사법절차가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재량적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6조가 적용된다(*Obermeier v. Austria*, 1990, § 69 ; *Mats Jacobsson v. Sweden*, 1990, § 32).

21. 국내법에 따라 개인이 주관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국내법에서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월권 행위였는지 또는 절차적 부정이 있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Van Marle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1986, § 35). 국가기관이 이익이나 특권을 부여하거나 거부할 완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가 법에 따라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법원이 국가기관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이전에 부여된 이익 또는 특권이 민사상의 권리를 발생시킴을 전제로, 제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105). 인용된 사건에서, 청구인은 국가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권리는 없었지만, 국방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단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에는 비밀취급 인가 취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었다.

22. *Mirovni Inštitut v. Slovenia*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연구비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의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이들 원칙을 적용했다(§ 29). 청구인 연구기관이 연구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없었고 다양한 연구 제안의 장점에 대한 심사는 국가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이었지만, 재판소는 청구인 연구기관이 연구 제안에 대해 합법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받을 절차적 권리를 분명히 누렸다고 지적했다. 연구 제안이 선정되었다면, 청구인 연구기관은 이에 대해 민사상의 권리를 갖게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제6조가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28-30). 더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입찰 절차에 대한 제6조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판례법을 재검토했다.

23. 그러나 국내법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채 법원에서 인정될 수 없는 일정한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Boulois v. Luxembourg* [GC], 2012, §§ 96 및 101). 국내법에 따른 개인의 권리가 단지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제한되고, 이러한 권리의 실제로 부여되는지 여부가 전적으로 재량적이고 불합리한 국가기관의 결정에 좌우되는 경우 또한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Roche v. the United Kingdom* [GC], 2005, §§ 122-125; *Masson and Van Zon v. the Netherlands*, 1995, §§ 49-51; *Ankarcrona v. Sweden* (dec.), 2000). 국가기관이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할 “권리”를 국내법이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De Bruin v. the Netherlands* (dec.), 2013, § 58).

24. 재판소는 개인이 국내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국내법에 규정된 관련 민사상의 권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절차적 금지 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Fayed v. the United Kingdom*, 1994, § 65). 이 경우, 어떤 이유로든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은 개인이 실체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제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Al-Adsani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47; *McElhinney v. Ireland* [GC], 2001, § 25). 하지만, 위원회와 재판소는 제6조제1항의 해석을 통해 해당 국가에 법적 근거가 없는 실체적인 민사상의 권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Károly Nagy v. Hungary* [GC], 2017, §§ 60-61; *Roche v. the United Kingdom*, 2005, § 117). *Károly Nagy v. Hungary* [GC], (2017, § 60-61) 사건에서, 재판소는 절차적 요소와 실체적 요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요소와 실체적

요소의 구별이 특정 국내법 조항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구별은 적용가능성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적절한 경우 제6조의 보장 범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판소의 판례법에 따르면, 국내법상 존재하는 권리에 대한 실제적인 제한에는 제6조가 적용될 수 없다(*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100; *Roche v. the United Kingdom*, 2005; *Boulois v. Luxembourg*, 2012).

25.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적인 제한과 절차적 금지 요건을 구별한 재판소는 예컨대 경찰의 과실에 대한 민사소송(*Osman v. the United Kingdom*, 1998)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에 대한 민사소송(*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등에 대해 제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인정했으며, 특정 제한(소추 면제 또는 책임 면제)이 제6조제1항의 관점에서 비례하는지 고려했다. 이 경우 책임 면제는 실제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법원이 해당 권리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권한에 대한 절차적 금지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Al-Adsani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48; *Cudak v. Lithuania* [GC], 2010, § 57). 반면, 재판소는 영국 정부가 군인에 대해 민사책임을 면제한 조치가 실제적인 제한에서 도출된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 국내법이 제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Roche v. the United Kingdom* [GC], 2005, § 124; *Hotter v. Austria* (dec.), 2010; *Andronikashvili v. Georgia* (dec.), 2010). *Károly Nagy v. Hungary* [GC], (2017, § 60)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 사법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한 법원이 청구인의 배상 청구를 결정할 관할권이 없다며 해당 청구를 거부한 결정을 검토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때 적용되는 국내법을 참고한 후, 관할권이 없다는 국내 법원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근거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 75-77). *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2007, § 41) 사건에서, 재판소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보상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26. 재판소는 단체가 그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와 이익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나(*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2004, § 45) 법인 자격으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특정 권리(예를 들어, “대중”의 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환경 관련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까지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dec.), 2006), 또는 단체의 소송이 민중소송(*actio popularis*)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L'Érablière A.S.B.L. v. Belgium*, 2009) 또한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사건에서 재판소가 강조한 바와 같이, 단체는 특히 환경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기관이나 국내 법원에 제기된 청구사유를 방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단체가 제6조제1항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를 제기할 경우 위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 53 이하.)¹.

27. 원칙적으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을 맡을 협약상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러한 권리가 국내 수준에서 존재할 수 있다. *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법에서 인정되는 실제적 권리가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동반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 조항 문구에서 재량 요소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법절차가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재량적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6조가 적용된다(§ 102). 재판소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공직에 참여할 권리가 제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Frezadou v. Greece*, 2018, § 30). 따라서 공무원이 대학 총장으로 임명된 것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재판소가 판결한 사건의 예와 같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채용이나 승진 절차에 대한 권리가 국내법에서 인정될 수 있다(*Bara and Kola v. Albania*, 2021, §§ 55-56).

28. 법령이 어떤 업종이나 직업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1. [환경에 대한 해설서](#) 참조.

후보자는 해당 업종이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De Moor v. Belgium*, 1994, § 43). 예를 들어, 청구인이 의사 등록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6조가 적용된다(*Chevrol v. France*, 2003, § 55; 반대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해서는, *Bouilloc v. France* (dec.), 2006 참조). 어느 경우이든, 청구인이 사법적 구제를 통해 민사상의 권리에 관한 절차의 적법성을 다룰 수 있었던 경우, 청구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상의 권리”에 관한 “분쟁”이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청구인이 외국에서 배운 진료과목 분야에서 계속 진료를 수행할 권리: *Kök v. Turkey*, 2006, § 37, 또는 법원 전문가 직함을 받기 위한 신청: *Cimperšek v. Slovenia*, 2020, §§ 35-36).

29. 고용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채용은 원칙적으로 관련기관의 재량에 따라 부여될 수 있고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없는 특권에 해당한다. 제6조의 목적상, 이 문제는 고용관계의 지속 또는 그 행사 조건과 구별되어야 한다. 고용과 직무에 대한 접근은 원칙적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없는 특권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고용 관계의 지속 또는 고용 관계를 향유할 조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117). 예컨대 *Baka v. Hungary* [GC]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헝가리법에 따라 헝가리 대법원장의 6년 임기를 모두 마칠 권리를 인정했다(§§ 107-111). 또한, 일반적으로 노동법은 부당해고를 당했거나 고용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생각하는 민간부문의 근로자에게 이러한 해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2007) 사건에서 규정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117; 및 *Kövesi v. Romania*, 2020, § 115, 검사와 관련된 사건).

30. *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사건에서, 국방부 관리는 비밀취급 인가가 취소되어 국방부 제1차관 대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물론, 비밀취급 인가가 하나의 독자적인 권리를 구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밀취급 인가는 청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었다. 비밀취급 인가 취소는 청구인의 개인적, 직업적 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청구인은 국방부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국가기관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을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여러 요소는 청구인이 비밀취급 인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청구에서 제6조의 목적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19; 또한 *Ternovskis v. Latvia*, 2014, §§ 9-10에 대해 언급한 § 109의 참고 판례 및 *Miryana Petrova v. Bulgaria*, 2016, §§ 30-35에 대해 언급한 § 112의 참고 판례 참조).

3. 권리 또는 의무의 “민사적” 성격

31. 권리이든 의무이든(*Evers v. Germany*, 2020, § 65) 협약의 관점에서 민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법적 분류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과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감독 기능을 행사할 때, 재판소는 협약의 목적과 다른 체약국의 국내법 체계도 고려해야 한다(*König v. Germany*, 1978, § 89).

32. 원칙적으로 국내법에서 민사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사인(私人) 간 분쟁에 제6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재판소 판례법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법적 별거 사건에 관해서는 *Airey v. Ireland*, 1979, § 21 참조).

33. 재판소는 또한 국내법상 “공법”에 해당하며, 그 결과가 사적 권리와 의무 또는 “금전적 권리”의 보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를 제6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다(*Bilgen v. Turkey*, 2021, § 65의 최신 요약 내용 참조). 이러한 절차는 토지 매각 허가(*Ringeisen v. Austria*, 1971, § 94), 개인병원 운영(*König v. Germany*, 1978, §§ 94-95), 건축허가(여러 사건 중, *Sporrong and Lönnroth v. Sweden*, 1982, § 79 참조), 예매 장소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 소유권 설정(*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71-73), 직업 수행 요건과 관련된 행정 허가(*Benthem v. the Netherlands*, 1985, §

36), 주류 판매업 면허(*Tre Traktörer Aktiebolag v. Sweden*, 1989, § 43) 또는 업무 관련 질병 또는 사고에 대한 보상 지급에 관한 분쟁(*Chaudet v. France*, 2009, § 30)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인접 구역의 건설 및 동종 사업체 운영에 관해 경쟁업체에 발급된 면허의 합법성 심사 신청은 경쟁업체의 사업 활동으로 고객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6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금전적 이익”에 관한 신청이다(*Sine Tsaggarakis A.E.E. v. Greece*, 2019, §§ 38-43).

34. 특히 환경을 이유로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한 최종 결정을 행정기관이 따르지 않았던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옹호하는 이익의 일반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제6조가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인근 주민인 청구인들은 공장 운영이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내 법원에 제소했고, 국내 법원은 청구인들이 민사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소는 이 절차의 결정적인 쟁점, 제소 대상 조치의 성격, 국내법상 청구인의 지위 등을 고려했다(*Bursa Barosu Başkanlığı and Others v. Turkey*, 2018, §§ 127-128; 또한 *Stichting Landgoed Steenberg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2021, § 30 참조).

35. 제6조는 국가배상청구(*X v. France*, 1992), 청구인의 권리를 해하는 행정 결정의 취소소송(*De Geouffre de la Pradelle v. France*, 1992), 청구인 구역에서의 어업 금지에 관한 행정절차(*Alatulkkila and Others v. Finland*, 2005, § 49) 및 공공사업 계약을 입찰할 때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민사상의 권리가 문제되는 입찰 선정 절차(*Tinnelly & Sons Ltd and Others and McElduff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98, § 61; *I.T.C. Ltd v. Malta* (dec.), 2007 대조) 등에 적용된다. 제6조는 또한 청구인이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특정인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상황에서 진행된 총기 면허 취소에 관한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Pocius v. Lithuania*, 2010, §§ 38-46; *Užukauskas v. Lithuania*, 2010, §§ 34-39). 청구인들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제기했으며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이름을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기로 한 국가기관의 조치가 이들의 평판, 사생활, 취업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제6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36. 제6조제1항은 국가 공무원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Aksoy v. Turkey*, 1996, § 92), 비금전적 손해와 비용에 대해 공권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Rotaru v. Romania* [GC], 2000, § 78) 또는 국방부 차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발급된 비밀취급 인가 취소(*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113-127) 에도 적용된다.

B. 다른 분쟁 유형으로의 확대

37. 제6조의 “민사적” 개념의 범위는 분쟁의 직접적인 주제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 대신 재판소는 더 폭넓은 접근법을 발전시켰고, 이 접근법에 따라 처음에는 민사상의 권리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개인이 보유한 사적인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권리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제6조의 “민사” 규정의 적용 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국내법에서 공법상의 분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제6조의 민사 규정이 적용되었다(*Denisov v. Ukraine* [GC], 2018, § 51).

38. 제6조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전문직단체의 징계 절차에 적용된다(*Reczkowicz v. Poland*, 2021, §§ 183-185 및 판사와 변호사와 관련하여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Le Compte, Van Leuven and De Meyere v. Belgium*; *Philis v. Greece (no. 2)*, 1981, § 45 및 *Peleki v. Greece*, 2020, § 39에서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Ali Rıza and Others v. Turkey*, 2020, § 155 및 §§ 159-160 비교 및 대조). 징계 절차에 대한 제6조의 적용 여부는 주장된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이 받게 될 *위험이 있는* 제재에 기초하여 결정된다(*Marušić v. Croatia* (dec.), 2017, §§ 72- 73 – 제6조 적용 불가). 절차의 구체적인 결과는 제6조제1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조치가 직업 활동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직업에 종사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만 해도 제6조제1항을 적용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Peleki v. Greece*, 2020, § 39). 공무원 징계 절차에 대한 제6조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판례법에서는 *Vilho Eskelinen* 심사기준이 적용되었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20 및 인용된 참고 판례와 § 196 참조; *Eminağaoğlu v. Turkey*, 2021, § 66,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한 사건; *Grace Gatt v. Malta*, 2019, §§ 60-63,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한 사건). 제6조제1항은 또한 스포츠 분야의 징계처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Sedat Doğan v. Turkey*, 2021, §§ 20-21 및 *Naki and AMED Sportif Faaliyetler Kulübü Derneği v. Turkey*, 2021, § 20).

39. 재판소는 제6조제1항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쟁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러한 사건의 예로는 민간기업의 직원 해고에 대해 제기된 절차(*Buchholz v. Germany*, 1981),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절차(*Feldbrugge v. the Netherlands*, 1986), 비기여적 방식의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절차(*Salesi v. Italy*, 1993), 복지 지원 및 거주 지원(*Fazia Ali v. the United Kingdom*, 2015 §§ 58-59) 및 의무적 사회보장 기여금에 관한 절차(*Schouten and Meldrum v. the Netherlands*, 1994) 등이 있다. (직원의 질병이 직업 관련 질병이라는 결정에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관해서는 *Eternit v. France* (dec.), 2012, § 32 참조). 이러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민법적 측면이 공법적 측면보다 우세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소는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민법상 재단법인으로부터 나치 박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사이에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Woś v. Poland*, 2006, § 76).

40. 공무원 관련 분쟁은 원칙적으로 제6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 *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2007, (§§ 50-62)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소는 “민사상의”라는 개념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공무원 관련 고용 분쟁에 제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정립했다(또한 *Baka v. Hungary* [GC], 2016, § 103; *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107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정 공무원과 문제의 국가 간 고용관계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급여, 수당 또는 유사한 재정적 혜택에 대한 분쟁을 비롯한 일반적인 노동 분쟁을 제6조의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노동법 규정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특정 구체적인 규칙이 모두 적용되는 복합적 제도에 관한 특정 사건은 공공기관의 직원 해고에 관한 사건인 *Pişkin v. Turkey*, 2020, § 98 참조). 현재 확립된 원칙에 따라, 공무원 관련 분쟁에 제6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며, 피청구국은 첫째, 공무원 청구인이 국내법에 따라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둘째,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제6조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2007, § 62).

41. 따라서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국가는 청구인의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제6조의 보호 대상에서 청구인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 첫째, 국내법은 문제의 직책이나 특정 범주에 속하는 직원의 재판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둘째로, 재판청구권 배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2007, § 62). 제6조제1항의 보호 대상에서 정당하게 제외하기 위해서는 *Vilho Eskelinen* 심사기준의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Baka v. Hungary* [GC], 2016, § 118 – 또한 *Kövesi v. Romania*, 2020, § 124 참조).

42. 청구인이 국내법에 따라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6조가 적용된다(현역 육군 장교와 군사법원에 제기된 청구에 대해서도 제6조가 적용됨: *Pridatchenko and Others v. Russia*, 2007, § 47). *Vilho Eskelinen* (2007) 심사기준 적용 목적상, 재판소는 특정 국내기관을 사법부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때 완전한 재량을 행사한다(*Xhoxhaj v. Albania*, 2021, §§ 284-288).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과조치로서 법에 따라 설립된 행정기관이나 의회기관(*ibid.*, § 288)은 “법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결정을 내린 공무원 관련 분쟁에 대해 제6조를 적용할 수 있다(*Oleksandr Volkov v. Ukraine*, 2013, § 88; *Grace Gatt v. Malta*, 2019, §§ 61-62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43. 재판소는 제6조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가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6조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특정 개인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규정한 법제도에 기초해야 한다(*Baka v. Hungary* [GC], 2016, § 117).

44. 두 번째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가 문제의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에 관여한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해당 공무원과 고용주로서의 국가 사이에 신뢰와 충성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는 또한 분쟁의 주체가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거나 해당 공무원과 국가 사이의 신뢰와 충성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2007, § 62).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정 공무원과 문제의 국가 간 고용관계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급여, 수당 또는 유사한 혜택에 대한 분쟁을 비롯한 일반적인 노동 분쟁을 제6조의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예를 들어, 경찰관의 특별수당 자격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2007 참조 - 또한 *Zalli v. Albania* (dec.), 2011; *Ohneberg v. Austria*, 2012 참조).

45. 재판소가 제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결정한 사건의 예로는, 대사관 직원(비서 및 전화 교환원: *Cudak v. Lithuania* [GC], 2010, §§ 44- 47; 수석 회계사: *Sabeh El Leil v. France* [GC], 2011, § 39; 문화 및 정보 담당관: *Naku v. Lithuania and Sweden*, 2016, § 95), 내무부 공무원(*Fazliyski v. Bulgaria*, 2013, § 55), 경찰 간부(*Šikić v. Croatia*, 2010, §§ 18-20) 또는 군사법원 소속 육군 장교(*Vasilchenko v. Russia*, 2010, §§ 34-36) 등이 제기한 부당해고 관련 절차, 의회 보좌관 직책을 맡을 권리에 관한 절차(*Savino and Others v. Italy*, 2009),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Olujić v. Croatia*, 2009 ; *Harabin v. Slovakia*, 2012) 및 정규 군인에 대한 징계 절차(*R.S. v. Germany* (dec.), 2017, § 34), 인사이동을 명령한 대통령령에 대한 검사의 항소(*Zalli v. Albania* (dec.), 2011 및 이 사건에서 인용된 다른 참고 판례), 임기를 마치기 전 조기 해임된 검사의 불복(*Kövesi v. Romania*, 2020, §§ 115 및 121), 세관 공무원의 전문 경력에 관한 절차(내부 승진심사를 신청할 권리: *Fiume v. Italy*, 2009, §§ 33-36) 및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기 전 조기 해임된 판사의 불복 절차(*Baka v. Hungary* [GC], 2016, § 118 - 또한 법원장 직위에서 면직되었음에도 같은 법원에서 계속 판사직을 수행한 판사에 관한 사건인 *Denisov v. Ukraine* [GC], 참조) 및 공무원과 판사에 관한 기타 분쟁 등이 있다(*Baka v. Hungary* [GC], 2016, §§ 104- 105; *Kamenos v. Cyprus*, 2017, §§ 75 이하에서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및 *Denisov v. Ukraine* [GC] (2018) 사건의 52항에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판사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20 참조 및 다른 근무지로의 전근과 관련하여 *Eminağaoğlu v. Turkey*, 2021, §§ 65-68 참조; 징계 심사 후 해임된 판사의 항소심 진행 중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Camelia Camelia Bogdan v. Romania*, 2020, § 70 참조 및 검사의 강등과 관련하여, *Čivinskaitė v. Lithuania*, 2020, § 95 참조).

46. 비록 재판소가 *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판결에서 이 사건의 논증이 공무원 관련 상황에 국한되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사법부*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통상적인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Baka v. Hungary* [GC], 2016, § 104). 따라서, 판사 신분을 유일한 이유로 제6조의 보호 대상에서 판사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Denisov v. Ukraine* [GC] 판결에는 판사가 포함된 일반적인 노동 분쟁에 제6조를 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원칙과 판례법이 자세히 요약되어 있다(§§ 46-49 및 관련 판례와 §§ 52-55 참조 - 또한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20 및 *Eminağaoğlu v. Turkey*, 2021, §§ 62-63 참조). 징계 절차 또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Eminağaoğlu v. Turkey*, 2021, § 65 이하 참조 및 상기 사건 참조). *Bilgen v. Turkey* (2021) 판결은 금전적 조건이나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판사의 직업생활과 경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분쟁에 제6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Bilgen v. Turkey*, 2021, §§ 68- 69). *Dolińska-Ficek and Ozimek v. Poland* 사건은 고등법원의 다른 직책에 지원한 판사 2명에 관한 사건이다 (§ 231 및 §§ 227-228의 판사에 관한 판례법을 요약한 내용 참조).

47. *Bilgen v. Turkey*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판사들이 자신의 직업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Eskelinen* 심사 기준의 첫 번째 조건 참조) 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었다며 제기한 청구에 대해 제6조(민사 규정)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밝혔다. 재판소는 법치주의 보장을 위해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심사할 때 국가 사법제도에 따라 판사가 자신의 경력이나 직업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의적 결정에 대한 보호를 보장받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이 사건의 경우 하급법원으로 전근 - §§ 57-59, §§ 61-63 참조). 따라서 해당 분쟁은 (국제적 출처의 영향을 받은) 협약에서 의미하는 자의적인 발령이나 임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판사의 “권리”에 관한 분쟁이었다(§ 64).

48. 법무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검사장직 해임을 결정한 경우, 사법 감독을 통해 이러한 결정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두 번째 *Eskelinen* 심사기준의 목적상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의 고위직 공무원 또한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자의적인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아야 하며, 독립적인 사법기구에서 이러한 결정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가 보장될 것이다(*Kövesi v. Romania*, 2020, § 124; 및 *Eminağaoğlu v. Turkey*, 2021, § 76의 요약 참조).

49. *Vilho Eskelinen* 심사기준은 채용 또는 임용(*Juričić v. Croatia*, 2011, §§ 54-58), 경력 또는 승진(*Dzhidzheva-Trendafilova v. Bulgaria* (dec.), 2012, § 50; *Bara and Kola v. Albania*, 2021, § 57), 전근(*Ohneberg v. Austria*, 2012, § 24), 고용 종료(*Olujic v. Croatia*, 2009; *Nazsız v. Turkey* (dec.), 2009) 징계 절차(*Kamenos v. Cyprus*, 2017, §§ 73-81) 등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해 공무원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 적용되었다.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 재판소는 *Bayer v. Germany* (2009, § 38) 사건에서 “임금, 수당 또는 유사한 혜택”에 관한 분쟁은 *Vilho Eskelinen* 심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6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노동 분쟁”의 예시적인 사례일 뿐이라고 판결했다. *Olujic v. Croatia* (2009, § 34)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6조 적용에 관한 *Vilho Eskelinen* 판결의 추정이 해임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Baka v. Hungary* [GC], 2016, § 105).

50. 재판소는 법원장 임명에 대한 사법심사를 다른 사건에서도 제6조가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Tsanova-Gecheva v. Bulgaria*, 2015, §§ 84-85). 재판소는 제6조가 공무원의 승진이나 공직을 맡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채용 또는 승진 절차에 대한 권리 또는 고용과 공직에 있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는 국내 법원이 해당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가 제출한 근거를 검토하는 한 국내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Majski v. Croatia (no. 2)*, 2011, § 50; *Fiume v. Italy*, 2009, § 35 참조).

51. 마지막으로, 제6조제1항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Vilho Eskelinen* 심사기준은 재판청구권에 관한 사건(예를 들어, *Nedelcho Popov v. Bulgaria*, 2007; *Suküt v. Turkey* (dec.), 2007 참조)과 제6조에 명시된 다른 보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동등하게 적용된다(*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2007,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심리를 받을 권리와 사법적 결정을 받을 권리에 관한 사건).

52. 제6조제1항은 형사절차에서 민사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에도 적용된다(*Perez v. France* [GC], 2004, §§ 70-71). 단, 오로지 개인적인 복수나 징벌적 목적을 위해 제기된 민사소송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Sigalas v. Greece*, 2005, § 29; *Mihova v. Italy* (dec.), 2010). 실제로, 협약은 형사 범죄에 대해 제3자가 기소되도록 하거나 형을 선고받도록 할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또한 *Mustafa Tunç and Fecire Tunç v. Turkey* [GC], 2015, § 218 참조). 이러한 권리가 협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려면, 피해자가 국내법에 따라 민사절차를 제기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하며(*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188 및 194), 이는 상징적 배상을 요구하거나 “좋은 평판”에 대한 권리와 같은 민사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Perez v. France* [GC], 2004, § 70; 또한 상징적 배상에 관한, *Gorou v. Greece (no. 2)* [GC], 2009, § 24 참조). 따라서 해당 민사 당사자가 배상받을 권리를 분명히 포기하지 않은 경우(*Arnoldi v. Italy*, 2017,

§ 43) 및 형사절차가 민사 당사자가 주장하는 보상에 대한 민사상의 권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 한(*Alexandrescu and Others v. Romania*, 2015, § 22, 피해자들이 대규모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와 관련된 사건), 제6조는 직권으로 수행된 예비조사 단계를 비롯해 고소인이 민사 당사자로 재판에 참가하는 순간부터 민사 당사자의 청구와 관련된 절차에 적용된다(*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207). 그러므로 국내법 체계에 따라 고소인이 형사절차에서 주장 가능한 민사적 성격의 이익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별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Arnoldi v. Italy*, 2017, §§ 36-40). 고소인이 민사상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으며, 해당 권리의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에 대해 이익이 있다는 점이 후반 단계에서라도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된 절차의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Arnoldi v. Italy*, 2017, §§ 25-40). 재판소는 제6조제1항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국내법에서 공식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국내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었거나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6조가 적용된다고 재판소가 판단했기 때문에, 제6조 적용에 있어 손해배상청구서의 제출일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Gracia Gonzalez v. Spain*, §§ 50-55).

53. 재판소는 수감과 관련된 상황에서 피구금자의 권리에 대한 일부 제한조치와 해당 조치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민사상의 권리”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De Tommaso v. Italy* [GC], 2017, §§ 147-50, 이 논점에 대한 판례법 요약 참조). 따라서, 제6조는 재소자 구금제도에 적용된다(예를 들어, 재소자를 특히 삼엄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수용동이나(*Enea v. Italy* [GC], 2009, §§ 97-107) 특히 삼엄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감방(*Stegarescu and Bahrin v. Portugal*, 2010)에 감금하는 조치나 가족 면회를 제한하는 징계 절차(*Gülmez v. Turkey*, 2008, § 30), 또는 재소자의 권리에 대한 기타 유형의 제한과 관련된 분쟁(*Ganci v. Italy*, 2003, § 25). 재소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 교도관 참석을 의무화하기 위해 교정당국이 취한 절차에 관한 사건에서, 해당 조치의 주된 목적이 교도소 내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소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협약 제8조에서 의미하는 “사생활” 개념에 속한다고 확인한 후 해당 분쟁이 주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성격을 가진 분쟁이라고 결론지었다(*Altay v. Turkey (no. 2)*, 2019, §§ 61, 67-69). 이와 반대로, 제6조는 사면법 적용 조건에 관한 절차에 적용되지 않으며(*Montcornet de Caumont v. France* (dec.), 2003), 특정 형태의 형 집행이나 조건부 석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Ballıktaş Bingöllü v. Turkey*, 2021, § 48).

54. 제6조는 특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의무적 거주 명령과 관련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특별감독 조치에도 적용된다(*De Tommaso v. Italy* [GC], 2017, §§ 151-55). 재판소는 인용된 사건에서 야간 외출, 거주지 이탈, 공개회의 참석, 휴대전화나 무선통신기기 사용 금지와 같은 일부 제한사항이 인격권의 범위에 속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민사적”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55. 제6조는 또한 좋은 평판을 얻을 권리(*Helmers v. Sweden*, 1991, § 27 및 이러한 이유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 - *Tolstoy Miloslavsky v. the United Kingdom*, 1995, § 58), 행정문서(*Loiseau v. France* (dec.), 2003) 또는 수사 기록에 포함된 증거를 열람할 권리(*Savitsky v. Ukraine*, 2012, §§ 143-145), 범죄기록에서 특정 유죄판결 항목을 제외하는 것에 관한 분쟁(*Alexandre v. Portugal*, 2012, §§ 54-55) 또는 범죄기록의 특정 항목 말소에 관한 분쟁(*Ballıktaş Bingöllü v. Turkey*, 2021, § 50), 평판에 대한 권리, 재산 보호에 대한 권리,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과 따라서 생계 수단을 얻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 기록의 항목 기입에 대한 불복(*Pocius v. Lithuania*, 2010, §§ 38-46; *Užukauskas v. Lithuania*, 2010, §§ 32-40), 비구금 방식의 예방적 조치 적용에 관한 절차(*De Tommaso v. Italy* [GC], 2017, § 151), 형사 유죄판결 후 특정 권리(특정 유형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 회복을 위한 절차(*Ballıktaş Bingöllü v. Turkey*, 2021, § 50), 단체의 회원이 될 권리(*Sakellaropoulos v. Greece* (dec.), 2011; *Lovrić v. Croatia*, 2017, §§ 55-56, - 마찬가지로, 협회의 합법성에 관한 법적 절차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공법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도 해당 협회의 민사상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APEH Üldözötteinek Szövetsége and Others v. Hungary*, 2000, §§ 34-35 참조) 및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을 계속 받을 권리(*Emine Araç v. Turkey*, 2008, §§ 18-25)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 104) 등을 포함한다.

56. 또한 제6조는 생명권, 건강권 또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문제(*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자녀 양육에 대한 권리(*McMichael v. the United Kingdom*, 1995), 자녀의 학업을 결정할 권리(*Ellès and Others v. Switzerland*, 2010, §§ 21-23), 친권을 확정받을 권리(*Alaverdyan v. Armenia* (dec.), 2010, § 33), 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Aerts v. Belgium*, 1998, § 59; *Laidin v. France (no. 2)*, 2003) 및 과거청산 절차(예를 들어, *Polyakh and Others v. Ukraine*, § 153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등과 같은 다른 사안에도 적용된다.

57.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Kenedi v. Hungary*, 2009, § 33; 및 징계 관련 상황에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Sedat Doğan v. Turkey*, 2021, §§ 20), 언론인이 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Shapovalov v. Ukraine*, 2012, § 49; *Selmani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7, § 47) 또한 본질적으로 “민사상의” 권리로 간주되었다.

58. 따라서 처음에는 민사상의 권리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개인이 보유한 사적 권리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제6조의 민사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판례법이 두드러지게 변화하고 있다(*De Tommaso v. Italy* [GC], 2017, § 151; *Alexandre v. Portugal*, 2012, §§ 51 및 54). 직업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으며(*Pocius v. Lithuania*, 2010, § 43; *Selmani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7, § 47; *Mirovni Inštitut v. Slovenia*, 2018, § 29),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 또한 마찬가지이다(예를 들어, *Denisov v. Ukraine* [GC], 2018, §§ 52-53 53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C. 주 절차가 아닌 다른 절차에 대한 제6조의 적용가능성

59. 금지명령과 같은 임시 조치 허가에 관한 절차 등의 *예비 절차*는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재판소는 이전의 판례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했다. *Micallef v. Malta* [GC], (2009, § 80-86) 사건에서, 재판소는 임시 조치에 제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특정 조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는 기준을 확립했다. 첫째, 주 절차와 금지명령 절차 모두에서 쟁점이 된 권리가 협약에서 의미하는 “민사상의” 권리여야 한다. 둘째, 임시 조치의 성격, 대상, 목적과 쟁점이 된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민사상의 권리나 의무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 조치가 효과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모든 경우, 해당 임시 조치가 발효되는 기간과 관계없이 제6조가 적용될 것이다(또한, 징계 절차의 맥락에서 판사의 일시 직무 정지에 관해서는, *Camelia Bogdan v. Romania*, 2020, § 70 참조 및 진행 중인 형사절차에서 예방적 행정 조치에 따른 판사의 일시 직무 정지에 관해서는, *Loquifer v. Belgium*, 2021, §§ 34-35 참조).

60. 중간판결은 임시 또는 잠정 조치 및 절차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제6조제1항의 민사 영역에 따라 제6조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Mercieca and Others v. Malta*, 2011, § 35).
61. *Micallef v. Malta* [GC] (2009)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을 고려할 때, 집행 절차의 정지에 대한 문제에도 전술한 기준에 따라 제6조가 적용될 수 있다(*Central Mediterranean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 v. Malta (no. 2)*, 2011, §§ 21-23).
62. 임시 금지명령이 즉시 집행되고 동일한 권리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진행 중인 주 절차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임시 절차*에 제6조가 적용될 수 있다(*RTBF v. Belgium*, 2011, §§ 64-65).
63. *상고 허가 절차*: *Hansen v. Norway* (2014, § 55)에 따르면, 재판소의 주된 접근법은 상고 허가 절차에 제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Martinie v. France* [GC], 2006, §§ 11; *Monnel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1987, § 54 및 53-55 인용; 또한 *Pasquini v. San Marino*, 2019, § 89 참조). 제6조의 적용 방식은 국내 법질서에서 진행되는 전체 절차와 해당 절차에서 항소법원이나 파기원이 담당하는 역할이 반영된 관련 절차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진다(*ibid.*; 또한 *Monnel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1987, § 56 참조).
64. *연속적인 형사 및 민사 절차*: 한 국가의 국내법이 두 단계로 구성된 절차를 규정한 경우, 즉 첫 번째 단계로 법원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목적상,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민사상의 권리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권리의 결정은 해당 권리의 실제 존재뿐만 아니라 권리의 범위나 행사 방식에 대한 판결을 수반하며, 이러한 판결은 손해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포함한다(*Torri v. Italy*, 1997, § 19).
65. *헌법적 분쟁* 또한 그 결과가 민사상의 권리 또는 의무에 결정적일 경우 제6조의 적용 범위에 속할 수 있다(*Süßmann v. Germany*, 1996, § 41; *Xero Flor w Polsce sp. z o.o. v. Poland*, 2021, §§ 203 이하, 특히 § 206 참조; *Ruiz-Mateos v. Spain*, 1993). 그러나 제6조는 예외적인 조치로 개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에 관한 분쟁이나 대통령이 헌법에 대한 선서를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aksas v. Lithuania* [GC], 2011, §§ 65-66). 헌법재판소 절차가 하급법원에서 선결적 판결을 요청한 문제를 다루는지 아니면 사법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인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Xero Flor w Polsce sp. z o.o. v. Poland*, 2021, §§ 188-191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법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명시된 국내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사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6조가 적용된다(*Voggenreiter v. Germany*, 2004, §§ 31-33, 36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Xero Flor w Polsce sp. z o.o. v. Poland* 판결에는 재판소가 국가 헌법 모델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피청구국의 주장에 대응하여 이 문제에 대해 취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협약 제35조제1항의 목적상 헌법소원의 유효성에 관한 논증에 관해서는, §§ 192 이하 참조 및 제6조제1항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논증에 관해서는, § 201 참조). 또한, 임시 조치에 대한 제6조제1항의 적용을 규율하는 기준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Kübler v. Germany*, 2011, §§ 47-48).
66. *법원 판결의 집행*: 제6조제1항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을 위한 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며, 본안 판결에 따른 후속 단계를 제외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내린 판결의 집행은 제6조의 목적상 “재판”의 필수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Hornsby v. Greece*, 1997, § 40; *Romańczyk v. France*, 2010, § 53, 유지관리 채무의 회수를 허가한 판결의 집행에 관한 사건). 제6조가 원래의 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민사상의 권리를 결정하는 집행권원이 꼭 제6조가 적용될 수 있는 절차에서 도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Buj v. Croatia*, 2006, § 19).

67. 제6조제1항은 종국적인 외국 판결의 집행에도 적용된다(집행판결 - *Avotiņš v. Latvia* [GC], 2016, § 96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외국법원의 몰수 명령에 대한 집행판결은 제6조의 민사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만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Saccoccia v. Austria* (dec.), 2007).

68. **재심 절차/비상상고 절차 신청:** *Bochan v. Ukraine (no. 2)* [GC] (2015) 판결은 민사사법절차에서 제기된 비상상고에 대해 제6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재판소의 판례법이 명확히 설명한다. 협약은 원칙적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결정이 내려져 종결된 민사절차의 재심 신청에 관한 절차에는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Sablon v. Belgium*, 2001, § 86). 이 논리는 또한 재판소에서 협약 위반 판결이 내려진 후 제기되는 재심 신청에도 적용된다(*Verein gegen Tierfabriken Schweiz (VgT) v. Switzerland (no. 2)*, 2007, § 24). 따라서 제6조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신청에 관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국내 절차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내려진 최종 판결에 기판력 원칙이 적용되는 한, 원칙적으로 볼 때, 해당 판결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후속 특별 신청이나 비상상고가 국내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존재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를 제기한다고 주장하거나, 동일한 사건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의 결과가 "...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Bochan v. Ukraine (no. 2)* [GC], 2015, §§ 44-45).

69. 하지만, 비상상고 절차가 자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재심 절차를 포함하거나 실제 관행상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 제6조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재심" 절차에 적용된다(*ibid.*, § 46). 또한 국내법에서 "특별" 또는 "예외적" 절차로 표현되어 있는 절차이지만, 해당 절차가 통상적인 항소절차와 유사한 성격과 범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일부 경우에도 제6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결되었다(*San Leonard Band Club v. Malta*, 2004, §§ 41-48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제6조제1항이 종결된 사법절차의 재심을 요청하는 비상상고 신청에 관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관련 법체계 내에서의 이러한 절차의 성격, 범위,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상황에서는 해당 절차가 제6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속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이 소송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보호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문제가 된 비상상고의 성격, 범위, 특수성을 검토해야 한다(*Bochan v. Ukraine (no. 2)* [GC], 2015, § 50). 인용된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제6조 위반을 확인한 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자국 대법원에 국내 법원의 결정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한 "예외적 항소" 절차에 대해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제6조제1항이 문제의 절차 유형에 적용된다고 판결했지만(§§ 51-58), *Munteanu v. Romania* (dec.) (2020, §§ 38-44) 사건에서는 제6조제1항이 문제의 절차 유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70. 제6조는 청구인의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3자 항소(*Kakamoukas and Others v. Greece* [GC], 2008, § 32) 및 실질적인 "민사상의" 절차와 별도로 수행되는 비용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Robins v. the United Kingdom*, 1997, § 29).

D. 제외되는 사항

71. 분쟁이 본질적으로 "금전적" 성격의 분쟁임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민사상 제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다(*Ferrazzini v. Italy* [GC], 2001, § 25).

72. 제6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에는 조세/절차가 포함된다. 세금문제는 여전히 공권력이 가진 특권 중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권한이며, 납세자와 지역사회 간 관계의 공공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이다(*ibid.*, § 29). 마찬가지로 관세 또는 부과금과 관련된 약식 이행명령 절차도 제6조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Emesa Sugar N.V. v. the Netherlands* (dec.), 2005).

73. 외국인의 입국, 거주, 퇴거와 같은 *이민* 분야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생활이나 가족생활, 고용 전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망명이나 강제퇴거에 관한 절차는 제6조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하는 명령에 대한 신청: see *Maaouia v. France* [GC], 2000, § 38 참조; 범죄인 인도: *Peñafiel Salgado v. Spain* (dec.), 2002; *Mamatkulov and Askarov v. Turkey* [GC], 2005, §§ 81-83 참조 및 망명 허가 거부에 대한 망명 신청자의 손해배상 소송: *Panjeheighalehei v. Denmark* (dec.), 2009 참조). 쟁쟁 정보 시스템에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절차 또한 제6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Dalea v. France* (dec.), 2010). 여권을 보유할 권리와 국적에 대한 권리는 제6조의 목적상 민사상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Smirnov v. Russia* (dec.), 2006). 하지만, 국내법상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 사항이 권리의 실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차적 금지에 관한 문제일 경우, 근로허가 신청에 대한 외국인의 권리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측면 모두에서 제6조의 적용 범위에 속할 수 있다(*Jurisc and Collegium Mehrerau v. Austria*, 2006, §§ 54-62).

74. *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2007) 사건에 따르면, *공무원과 관련된 분쟁*은 다음 두 심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6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Eminağaoğlu v. Turkey*, 2021, §§ 71 및 80). 첫째, 국가는 국내법에서 문제의 직책이나 특정 범주에 속하는 직원의 재판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둘째로, 재판청구권 배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62; 또한 *Baka v. Hungary* [GC], 2016, § 103; *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107 참조). 그뿐만 아니라, 제6조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는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특정 개인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규정한 법제도에 기초해야 한다(*Baka v. Hungary* [GC], 2016, § 117). *Vilho Eskelinen* 심사기준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거의 없었다.

75. 재판소가 *Vilho Eskelinen* 심사기준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한 소수의 사건에서는(판사와 관련된 요약 설명은 *Bilgen v. Turkey*, 2021, §§ 70 및 75 참조), 문제의 직책에 대한 재판청구권이 명확하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예를 들어, *Suküt v. Turkey* (dec.), 2007; *Nedelcho Popov v. Bulgaria*, 2007, § 38; *Apay v. Turkey* (dec.), 2007 및 *Nazsiz v. Turkey* (dec.), 2009 참조(재판소가 이후 *Eminağaoğlu v. Turkey* (2021, § 74-76) 사건에서 내린 판결에 비추어 살펴볼 것) 및 *Kövesi v. Romania*, 2020, §§ 119-121 비교). 첫 번째 조건의 목적상, 이의가 제기된 결정이 검토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자체만으로 재판청구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Kamenos v. Cyprus*, 2017, §§ 75 및 84; 또한 *Kövesi v. Romania*, 2020, §§ 122-123 참조). *Kamenos v. Cyprus* (2017) 사건에서, 청구인은 단독 기구인 최고사법평의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결정은 최종적이었다(§ 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사법평의회는 제6조에서 의미하는 “법원”에 해당했으며, 해고된 공무원은 *Vilho Eskelinen* 기준 중 첫 번째 조건의 목적상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76. 재판소는 *Vilho Eskelinen* (2007) 심사기준 적용 목적상, 국내 사법부에 속하지 않은 특정 국내 기관이 “법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문제에서 완전한 재량을 행사한다(원칙에 관해서는, *Bilgen v. Turkey*, 2021, § 71 참조). 따라서 행정기관이나 의회기관도 “법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 공무원 관련 분쟁에 대해 내린 결정에도 제6조를 적용할 수 있다(*Oleksandr Volkov v. Ukraine*, 2013, § 88). 징계 기관의 경우에는 제6조가 적용될 수도 있고(*Kamenos v. Cyprus*, 2017, §§ 82-88),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Bilgen v. Turkey*, 2021, §§ 74-75). 특정 상황에서는 재판소가 청구인을 상대로 문제의 조치가 채택된 시점이 아니라 채택되기 이전 시점에 국내법상 재판청구권이 배제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 있다(*Baka v. Hungary* [GC], 2016, §§ 115-16).

77. 두 번째 조건의 경우, 재판청구권 배제를 정당화하려면, 국가가 문제의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에 관여한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Pellegrin v. France* [GC] (1999) 판례에서 재판소가 사용한 표현대로, 해당 공무원과 고용주로서의 국가 사이에 “신뢰와 충성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는 또한 분쟁의 주제가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거나 해당 공무원과 국가 사이의 신뢰와 충성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특정 공무원과 문제의 국가 간 고용관계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급여, 수당 또는 유사한 혜택에 대한 분쟁을 비롯한 일반적인 노동 분쟁을 제6조의 보장에서 제외한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2007, § 62). 재판소는 군을 위반으로 육군에서 파면된 군인이 해당 파면 결정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었고 국가와의 “신뢰와 충성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한 유대관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서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Suküt v. Turkey* (dec.), 2007).² 재판소는 민감한 분야를 담당하는 특정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Spūlis and Vaškevičs v. Latvia* (dec.), 2014). 그러나 *Bilgen v. Turkey* (2021, §§ 79-81) 사건 및 판사와 관련된 *Eminağaoğlu v. Turkey* (2021, §§ 76-80)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고려할 때, 사법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정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78. 선거에 출마하여 의석을 유지할 권리(선거 분쟁: *Pierre-Bloch v. France*, 1997, § 50 참조), 전직 의회 의원 자격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Papon v. France* (dec.), 2005) 또는 정치 활동을 수행할 정당의 권리(정당 해산에 관해서는, *Refah P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dec.), 2000 참조) 등의 *정치적 권리*는 제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민사상의 권리로 볼 수 없다. 정당 당원이나 단체 회원 자격 및 출당이나 회원 자격 박탈 또한 제6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Lovrić v. Croatia*, 2017, § 55). 마찬가지로, 의회 선거를 참관하는 비정부기구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문서 열람을 허가받지 못한 절차 또한 제6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Geraguyn Khorhurd Patgamavorakan Akumb v. Armenia* (dec.), 2009). 재판소는 정무직 공무원의 행위와 관련된 사안,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민사적인 성격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에 관한 사안임을 확인했다(*Cătănicu v. Romania* (dec.), 2018, § 35).

79. 또한, 협약은 예컨대 형사 범죄에 대해 제3자가 기소되도록 하거나 형을 선고받도록 할 권리나(*Perez v. France* [GC], 2004, § 70; *Mustafa Tunç and Fecire Tunç v. Turkey* [GC], 2015, § 218, 다른 사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소), 민사상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Golyshev v. Russia* (dec.), 2019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제6조는 사면법 적용 조건에 관한 절차에 적용되지 않으며(*Montcornet de Caumont v. France* (dec.), 2003), 특정 형태의 형 집행이나 조건부 석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Ballıktaş Bingöllü v. Turkey*, 2021, § 48). 제6조1항은 또한 현행법을 무효로 하거나 무시할 권한을 가진 국내 법원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Jam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81).

80. 공개 법원에서 진술된 사항을 보도할 권리도 협약에서 의미하는 “민사상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Mackay and BBC Scotland v. the United Kingdom*, 2010, §§ 20-22).

81. 결론: 앞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하는 정의에 따라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은 관련 당사자가 자신의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청구를 법원이나 재판소에 제기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6조제1항은 재판청구권, 즉 법원에 민사 문제를 제소하여 민사절차를 시작할 권리의 한 측면을 구성하는 “법원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6조제1항에 명시된 보장이 적용된다. 요컨대, 제6조 전체가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구성한다(*Golder v. the United Kingdom*, 1975, § 36).

2. “다른 유형의 분쟁으로의 확대 적용” 절 참조.

E. 다른 협약 조항과의 관련성³

82. 협약은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여러 조항 간 내적 일관성과 조화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이 원칙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Mihalache v. Romania* [GC], 2019, § 92 참조).

1. 제2조(생명권)

83. *Fernandes de Oliveira v. Portugal* [GC] (2019) 사건에서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청구인의 아들이 정신병원을 탈출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구인은 제2조에 근거하여 관련기관이 아들의 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 또한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절차가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다며 청구를 제기했다. 대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오직 협약 제2조에 따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80- 81).

84. 제6조는 독립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협약 제2조에서 생명권의 절차적 보호가 포함된 것은 조사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Mustafa Tunç and Fecire Tunç v. Turkey* [GC] (2015) 사건에서, 대재판부는 특히 조사기관이 제6조에 따른 기준과 마찬가지로 제2조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 217 이하).

85.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사건에서, 대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권리와 협약 제2조에 따른 효과적인 조사에 대한 권리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193).

2. 제5조(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⁴

86. 제5조제4항은 제6조(민사 규정)에 대한 특별법(*lex specialis*) 역할을 하며, 두 협약 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절차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대해 제6조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항상 동일한 보증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Manzano Diaz v. Belgium*, § 38).

3. 제6조제1항(공정한 형사재판)⁵

87. 재판소는 형사 범죄로 기소되거나 소추된 자의 권리가 민사절차 당사자의 권리보다 더 강력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은 특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Moreira Ferreira v. Portugal (no. 2)* [GC], 2017, § 67). “공정한 심리”의 개념에 내재하는 요건이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에 관한 사건의 요건과 항상 똑같지는 않다. “체약국은 형사 사건을 다룰 때보다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민사 사건을 다룰 때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진다”(*Dombo Beheer B.V. v. the Netherlands*, 1993, § 32; *Levages Prestations Services v. France*, 1996, § 46 및 아래 참조). 민사 당사자는 형사절차의 다른 당사자와 같은 입장이 아니다. 형사절차의 경우 대립하는 당사자 중 하나는 공소사실의 근거가 없음을 증명하려는 피고인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는 검찰을 대표하는 검사이다. 검찰 편에 서서 민사 당사자로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절차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 당사자는 형사적 측면이 아니라 민사적 측면에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대등 원칙과 당사자주의 절차 원칙에 대한 민사 당사자의 권리는 검찰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와 같지 않다(*Gorou v. Greece (no. 4)*, 2007, §§ 26-27, 휴정 요청 거부에 관한 부분 및 § 22, 법률상의 쟁점에 대한 항소 관련 부분; 민사절차 당사자에 대한 검사/검찰의 역할과 관련하여,

3. 또한 제2조(생명권), 제6조(형사 부분)(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제13조(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및 제1의정서 제1조(재산권 보호)에 대한 판례법 해설서 참조.

4. 제5조(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한 해설서 참조

5. 제6조(형사 부분)에 대한 해설서 참조

Andrejeva v. Latvia [GC], 2009, §§ 101 및 100 비교).

88. 재판소 판례법에 따르면, 재판소는 제6조의 민사 영역에 속하는 소송을 심리할 때 형법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영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Mihail Mihăilescu v. Romania*, 2021, § 75 및 아래의 공정성: 일반 원칙에 따른 사항과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해서는,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09 및 250; 또한 *Peleki v. Greece*, 2020, §§ 55-56 참조).

89. 형사절차가 “민사” 분쟁에 대한 결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특히 범죄 수사절차와 관련된 민사 당사자 또는 민사상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Mihail Mihăilescu v. Romania*, 2021, §§ 74-89, 기판력(*res judicata*) 문제 포함; *Victor Laurențiu Marin v. Romania*, 2021, §§ 144-150 및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192-201 참조)

90.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협약의 기본 원칙과 같은 제6조제1항의 제도적 요건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이 분야의 판례법을 “민사” 판례와 “형사” 판례를 모두 참고하여 발전시킨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11 이하; *Morice v. France* [GC], 2015 참조).

91. 마지막으로, 제6조제1항의 민사 측면에 따른 제6조제1항의 적용가능성은 재판소가 제6조제1항의 형사 측면에 따라 제6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21). 재판소의 오랜 입장에 따르면, 징계 절차는 본질적으로 “형사”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Peleki v. Greece*, 2020, §§ 35-36).

4. 제6조제2항(무죄추정 원칙)

92. 무죄판결 또는 형사절차 중단에 따른 배상을 위한 민사절차에 관한 사건은 보통 협약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사한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미성년자 아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형사절차에 근거하여 성립된 것에 대해 제기한 청구를 검토했다. 해당 형사절차에는 청구인의 미성년자 아들이 증인으로 참여했을 뿐 청구인은 아무런 절차적 지위를 얻지 못했다. 형사절차나 민사절차에서는 청구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제6조제2항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에 대한 권리와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재판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례법에서 발전된 원칙이 해당 사건에서 제6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Kožemiakina v. Lithuania*, 2018, § 51).

5. 제8조(사생활)

93. 제6조제1항의 민사 영역에 따라 제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고려할 때 분쟁의 금전적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측면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Denisov v. Ukraine* [GC], 2018, §§ 54 및 122; 또한 제6조 및 제8조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린 *Ballıktaş Bingöllü v. Turkey*, 2021, §§ 60-61 참조). 협약 제8조제1항의 의미에 따른 “사생활” 개념은 제6조제1항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Altay v. Turkey (no. 2)*, 2019, § 68 참조).

94. *López Ribalda and Others v. Spain* [GC]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비밀리에 이루어진 비디오 감시를 통해 얻은 영상을 민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한 것이 (제8조) 절차의 전반적인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검토했다(§§ 154-158). *Evers v. Germany*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취약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이 제8조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존중되었는지 검토했다(§§ 82-84). *M.L. v. Slovak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8조에 내재한 절차적 보호와 제6조제1항의 명시적 보호 사이에 유사점을 도출했다(§ 57).

6. 제10조(표현의 자유)

95.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법정에서 또는 판사에 대해 발언한 내용 때문에 법정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심사했다. 재판소는 처음에 협약 제6조와 제10조에 따라 제기된 청구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수행했다. 재판소는 법정모욕죄에 관한 약식 절차가 불공정했음을 확인했으나, 이러한 절차적 불공정성은 비례성 결여 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Kyprianou v. Cyprus* [GC], 2005, § 181). 최근의 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6조제1항 위반 판결에 따른) 해당 절차의 흠결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했던 조치가 남용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조치”와 함께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Słomka v. Poland*, 2018, §§ 69-70).

7. 기타 협약 조항

96. 제6조제1항은 제13조에 대한 특별법 역할을 한다. 사법절차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한 제6조제1항의 요건은 제13조의 요건보다 엄격하며 제13조의 요건을 모두 포함한다(*Kudła v. Poland* [GC], 2000, § 146).

97. *Černius and Rinkevičius v. Lithuania* (2020, § 49)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승소했음에도 국내 법원이 다른 당사자에게 자신들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지 않았으며 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협약 제13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의정서 제1조에 따라 청구를 제기했으나, 재판소는 이 청구를 제6조1항에 따라 검토했다(*Taratukhin v. Russia* (dec.), 2020, § 27 과 비교 및 지급 기한이 만료된 대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Gogić v. Croatia*, 2020, § 45 참조).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수료가 포함된 소송비용 지급 문제에 관한 *Cindrić and Bešlić v. Croatia* (2016, §§ 119-123)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6조1항과 제1의정서 제1조에 따라 청구를 심사했다(§§ 110 및 119-123). 또한 판례법에 대한 요약은 *Zustović v. Croatia*, 2021, §§ 98-100 및 *Čolić v. Croatia*, 2021, §§ 39-48을 참조한다.

98. 또한 제35조제1항의 목적상 헌법적 구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해당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대한 제6조제1항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Xero Flor w Polsce sp. z o.o. v. Poland*, 2021, §§ 201-209).

II. 법원에 대한 권리

협약 제6조제1항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A. 법원에 대한 권리 및 재판청구권

99. 제6조의 목적에 따른 법원에 대한 권리 및 재판청구권은 *Golder v. the United Kingdom*, 1975, §§ 28-36) 판례에 정의되어 있다. 재판소는 협약의 기초가 되는 법치주의 원칙과 자의적 권한 행사 방지 원칙을 언급하며 재판청구권은 제6조에 포함된 보호조치의 고유한 측면이라고 판결했다(*Zubac v. Croatia* [GC], 2018, §§ 76 이하).

100. 제6조제1항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소송 당사자가 민사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Nait-Liman v. Switzerland* [GC], 2018, § 112; *Běleš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2002, § 49).

101.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청구를 법원이나 재판소에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6조제1항은 재판청구권, 즉 법원에 민사 문제를 제소하여 민사절차를 시작할 권리의 한 측면을 구성하는 "법원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Nait-Liman v. Switzerland* [GC], 2018, § 113; *Golder v. the United Kingdom*, 1975, § 36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따라서 자신의 민사상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가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불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제소할 수 있다. 주장된 민사상의 권리의 존재나 범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제한의 합법성에 대해 진지하고 진실한 분쟁이 있는 경우, 제6조제1항은 관련 당사자에게 "이러한 국내법의 문제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92; *Markovic and Others v. Italy* [GC], 2006, § 98). 특정 절차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절차적 보호조치와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법원의 결정은 해당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2016, § 131).

102. "법원에 대한 권리"와 재판청구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이러한 권리는 제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식 또는 정도로 개인이 재판을 청구할 방법을 제한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Stanev v. Bulgaria* [GC], 2012, § 229; *Baka v. Hungary* [GC], 2016, § 120; *Nait-Liman v. Switzerland* [GC], 2018, § 113; *Philis v. Greece (no. 1)*, 1991, § 59; *De Geouffre de la Pradelle v. France*, 1992, § 28).⁶ 또한,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며, 채택한 수단과 달성하려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제한은 제6조제1항과 양립할 수 없다(*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89; *Nait-Liman v. Switzerland* [GC], 2018, § 115).

103. 제6조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로 하거나 무시할 권한을 가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법에 근거해 내려진 명령), 결정 또는 기타 조치가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특정하여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연인이나 법인의 특정한 속성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 구별하도록 만드는 사실적 상황 때문이든 해당 자연인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단체의 "민사상의 권리" 또는 "의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6조제1항은 이러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원"에서 문제의 결정이나 조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Posti and Rahko v. Finland*, 2002, §§ 53-54). 특정한 사건에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조치일 경우 이 요건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Project-Trade d.o.o. v. Croatia*, 2020, §§ 67-68).

104. 법원에 민사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로 평가되지만, 재판소는 이러한 보장이 현행 국제법 체계에서 강행규범에 속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2016, § 136).

105. *Baka v. Hungary* [GC]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제법 문서, 유럽평의회 문서, 국제재판소 판례법 및 기타 국제기구의 관행을 살펴볼 때, 법관의 면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관련하여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의 개입을 비롯한 법관의 해임이나 파면에 관한 사건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부여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121). *Kövesi v. Romania*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검찰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했다(§ 156). 또한 징계 사안과 관련하여,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76-186 및 *Eminağaoğlu v. Turkey*, 2021, §§ 99-104를 참조한다.

6. 또한 "공정성"에 관한 절 참조.

106. 단체의 회원 제명 조치에 관한 *Lovrić v. Croatia* (2017) 사건의 판결에서, 재판소는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재판청구권에 가해진 제한이 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다고 언급했다(협약 제11조 참고). 이러한 조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법심사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지만, 관련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할 정도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71-73).

1.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리

107.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닌 중요성을 고려할 때(*Prince Hans-Adam II of Liechtenstein v. Germany* [GC], 2001, § 45), 재판청구권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Zubac v. Croatia* [GC], 2018, §§ 76-79; *Bellet v. France*, 1995, § 38), 재판청구권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명확하고 실질적인 기회”를 가지거나(*Bellet v. France*, 1995, § 36; 심리 참석 통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Nunes Dias v. Portugal* (dec.), 2003; 국가안보와 관련된 고용 분쟁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전문가 평가에 대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것과 관련하여, *Fazliyski v. Bulgaria*, 2013 및 징계 심사 후 해임된 판사가 항소권을 행사할 경우의 자동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Camelia Bogdan v. Romania*, 2020, §§ 75-77 참조) 또는 보상을 청구할 명확하고 실질적인 기회를 가져야 한다(*Georgel and Georgeta Stoicescu v. Romania*, 2011, § 74). 이 권리는 협약 제13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구별되어야 한다(*X and Others v. Russia*, 2020, § 50).

108. 항소나 사법심사 청구를 제기할 때 준수해야 하는 형식적인 단계와 기한을 규율하는 규칙은 적절한 사법 집행과 특히 법적 확실성 원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Cañete de Goñi v. Spain*, 2020, § 36). 그렇지만, 문제의 규칙이나 그 적용이 소송당사자가 가능한 구제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Miragall Escolano and Others v. Spain*, 2000, § 36; *Zvolský and Zvolská v. the Czech Republic*, 2002, § 51). 특히, 각 사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Kurşun v. Turkey*, 2018, §§ 103-104). 절차 규칙을 적용할 때, 법원은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융통성 있게 해석한 나머지 법령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Hasan Tunç and Others v. Turkey*, 2017, §§ 32-33).

109. 간단히 말해, 분쟁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들이 공식화된 민사소송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가치 있고 중요한 문제이다.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고, 무기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며, 자의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분쟁에 대한 결정과 판결이 내려지도록 보장하며, 법적 확실성과 법원에 대한 존중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규칙이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Zubac v. Croatia* [GC], 2018, § 96). 그러나 민사소송규칙이 “법적 확실성”과 “적절한 사법 집행”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소송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의해 사건에 대한 본안 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종의 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재판청구권이 훼손될 것이다(*Zubac v. Croatia* [GC], 2018, § 98). 관련기관이 소송 관련 기한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고지한 경우, 국내 법원은 사건의 특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관련 규칙과 판례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해서는 안 된다(*Gajtani v. Switzerland*, 2014 및 *Clavien v. Switzerland* (dec.), 2017 비교).

110. 제소하거나 항소할 권리는 당사자들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법적 결정을 실질적으로 인지하는 순간부터 발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판결 송달을 지연시켜 항소 신청 기간을 상당히 단축하거나 심지어 항소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사법기관과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방법인 송달은 법원의 결정과 그 이유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들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Miragall Escolano and Others v. Spain*, 2000, § 37)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Cañete de Goñi v. Spain*, 2002, § 40,

7. 또한 [협약 제13조 -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에 대한 해설서](#) 참조.

청구인의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친 절차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소환되지 않은 문제를 다룬 사건).

111. 더 일반적으로 말해, 국내기관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통지를 전달받고 절차에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 소송절차에 대한 통지는 전적으로 반대 당사자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판례법에 대한 요약은 *Schmidt v Latvia*, 2017, §§ 86-90, 92 및 94-95 참조, 이 사건의 청구인은 이혼 절차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재판소는 해당 절차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고려할 때 관련기관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고 강조함).

112. 행정 결정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모든 잠재적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관된 통지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Stichting Landgoed Steenberg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2021, § 47, 오직 온라인 통지/통신만이 가능한 제도에 관한 내용, §§ 50-53). 특히 행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명확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기관과 관련 당사자의 이익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행정 결정 공표 제도는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Geffre v. France* (dec.), 2003).

Zavodnik v. Slovenia, (2015) 사건은 파산절차의 통지와 관련된 사건이다. 재판소는 법원 공고 게시판과 관보에 고시하는 등의 심리 일정 통지 방법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재산 분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Zavodnik v. Slovenia*, 2015, §§ 78-81).

113. 재판청구권에 대한 보장은 사적 분쟁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절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지만, 이러한 요소는 이의가 제기된 조치의 비례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Čolić v. Croatia*, 2021, § 53).

114.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청구권의 실질성과 효과성이 훼손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 재정 능력에 비해 과도한 소송비용에 따른 재판청구권 침해:
 - 민사 당사자로 형사절차에 참여하고자 신청할 때 요구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금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Ait-Mouhoub v. France*, 1998, §§ 57-58; *García Manibardo v. Spain*, 2000, §§ 38-45)
 - 과도한 재판비용(*Kreuz v. Poland*, 2001, §§ 60-67; *Podbielski and PPU Polpure v. Poland*, 2005, §§ 65-66; *Weissman and Others v. Romania*, 2006, § 42; *Georgel and Georgeta Stoicescu v. Romania*, 2011, §§ 69-70 및 이와 반대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Reuther v. Germany* (dec.), 2003 참조). 이들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민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부과된 재판비용을 납부할 수 없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제1심 단계 또는 절차의 후속 단계에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의 효과를 유발한 재판비용 문제를 심사했다(항소를 제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사건인 *Tolstoy Miloslavsky v. the United Kingdom*, 1995, §§ 62-67 대조). 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법원 신청서에 대한 인지액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기관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며(*Laçi v. Albania*, 2021, §§ 53-60), 청구인 또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Elcomp sp. z o.o. v. Poland*, 2021, § 41).

Stankov v. Bulgaria (2007, § 53) 사건에서, 재판소는 절차 종료 시 부과되는 상당한 재판비용 또한 법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구체적으로, 무죄 선고 또는 부당한 미결구금 결정이 내려진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었던 사건에 관해서는 § 59 및 62 참조, 그리고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Čolić v. Croatia*, 2021, §§ 58-59 참조); 또한 소송비용 상환 거부에 관해서는, *Černius and Rinkevičius v. Lithuania*, 2020, §§ 68-69 및 § 74 참조; 사법절차 종료 후 납부해야 하는 비용에 이의를 제기한

절차에 관한 사건인, *Taratukhin v. Russia* (dec.), 2020, §§ 36 이하 비교. 재판비용에 관한 사건에서는, 소송 당사자의 행위(*Zubac v. Croatia* [GC], 2018, § 120) 또는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음이 분명한 상황 또한 고려해야 한다(*Marić v. Croatia* (dec.), 2020, 국가 소송대리인 비용의 전액 부담 의무를 다룬 부분인 §§ 58 및 60과 소송비용 지급 의무를 다룬 부분인 § 52 참조(“패소자 부담” 원칙)); 또한 *Stankiewicz v. Poland*, 2006, §§ 62 이하; *Klauz v. Croatia*, 2013, §§ 77 이하 및 *Cindrić and Bešlić v. Croatia*, 2016, §§ 119-123 참조).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은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Karahasanoğlu v. Turkey*, 2021, §§ 136-137 참조). 재판소는 사법절차에서 귀책 당사자로 확인된 공공기관에 대해 소송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조항이 없는 규칙이 협약에 위배된다고 보았다(*Zustović v. Croatia*, 2021, §§ 102-106, 또한 이 맥락에서 국가기관이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에 관한 부분인 §§ 99-100 참조).

-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적절한 사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한 조치가 그 자체로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벌금의 액수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Sace Elektrik Ticaret ve Sanayi A.Ş. v. Turkey*, 2013, §§ 26 이하, 공개 경매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요청한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입찰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 벌금에 관한 사건).
- 기한 관련 문제에 따른 재판청구권 침해:
 -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걸린 기간(*Miragall Escolano and Others v. Spain*, 2000, § 38; *Melnyk v. Ukraine*, 2006, §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는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Kamenova v. Bulgaria*, 2018, §§ 52-55).
 - *Ivanova and Ivashova v. Russia*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국내법을 융통성 없게 해석함으로써 소송당사자가 도저히 준수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상소인이 실제로 법원의 결정을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사무국이 법원 결정의 정식 사본을 작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도록 한 요건은 상소인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따른 관련 기한 만료를 허용한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법원 결정 전문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부터 상소권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피해에 관해서는, *Howald Moor and Others v. Switzerland*, 2014, §§ 79-80; *Yagtzilar and Others v. Greece*, 2001, § 27을 포함한 *Sanofi Pasteur v. France*, 2020, 53-55항에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예를 들어,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형사절차가 중단되었고 그 결과 민사소송의 심리를 수행할 수 없었던 여러 사건에서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결했다(*Atanasova v. Bulgaria*, 2008, §§ 35-47). 청구에 대한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된 경우에도 재판청구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Kristiansen and Tyvik AS v. Norway*, 2013).
 - 상소 기간을 넘긴 상소를 허가함으로써 특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이유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제기된 일반 상소를 허가한 조치는 법적 확실성 원칙에 위배될 것이고 법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Magomedov and Others v. Russia*, 2017, §§ 87-89, 타당한 이유 없이 상소 기한이 연장되어 관할기관에 유리한 상소가 기한 만료 이후 받아들여진 사건).

Nikolyan v. Armenia, 2019 및 *R.P.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2 비교).

- 받을 수 있는 사법심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판청구권 침해: 예를 들어, 대통령령에 대해 행정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는 해당 대통령령이 외적 형식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만이 심사되는 반면, 청구인의 제소에서는 대통령령에 대한 본안 심사와 내적 적법성에 대한 심사가 요청되는 상황(*Kövesi v. Romania*, 2020, §§ 153-154, 임기를 마치기 전 해임된 검사에 관한 사건) 및 재판청구권이 한층 더 강력히 침해되는 경우인 사법심사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해임 결정에 판사가 항소심을 제기한 경우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자동 직무 정지와 관련하여, *Camelia Bogdan v. Romania*, 2020, §§ 76-77 참조).

115. 그러나 형식주의에 관한 주제를 다시 살펴보면, 법적문제에 대한 상소에 대해 일반적인 상소보다 더 엄격한 심리적격성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요건으로 여겨질 수 있다(*Tourisme d'affaires v. France*, 2012, § 27 요약 부분 참조). 파기원이 담당하는 특수한 역할을 고려할 때, 파기원의 절차에는 더 엄격한 형식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제1심 법원과 항소법원이 각각 완전한 관할권을 행사하여 심리한 사건이 파기원에 제기된 경우 특히 엄격한 형식적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Levages Prestations Services v. France*, 1996, §§ 44-48; *Brualla Gómez de la Torre v. Spain*, 1997, §§ 34-39). 그러나 해당 국내 기관이 이 사안에서 무제한의 재량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Zubac v. Croatia* [GC], 2018, §§ 108-109).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보충성의 원칙과 대법원에 신청한 구제에 적용되는 여과 제도에 관한 판례법을 참고했다(*Succi and Others v. Italy*, 2021, § 85).

재판소는 최고행정법원의 구체적인 역할 또한 고려했으며, 최고행정법원의 절차에 더 엄격한 심리적격성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Papaioannou v. Greece*, 2016, §§ 42-49). 청구인이 국내 법원에 대한 상소에 적용되는 새로운 적격성 요건에 불만을 품고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의 판례법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나 입법정책 선택의 적절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판소의 임무는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단지 협약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판결했다(*ibid.*, § 43; 또한 *Ronald Vermeulen v. Belgium*, 2018, § 53 참조). 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수행하는 특별한 역할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요건이 더 형식적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정될 수 있다(*Arribas Antón v. Spain*, 2015, § 50 및 이하).

116. 더 일반적으로 말해, *Zubac v. Croatia* [GC] (2018) 판결은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상소에 관한 일반 원칙(§§ 80-82 및 § 84) 및 형식주의에 대한 판례법을 거듭 밝히고 있다(§§ 96-99). 특히, “법적 확실성”과 “적절한 사법 집행”의 문제는 과도한 형식주의와 허용 가능한 형식적 절차 요건 적용을 구분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요소이다(§ 98). 두 원칙은 헌법재판소 절차에도 적용된다(*Fraile Iturralde v. Spain* (dec.), 2019, §§ 36-37; *Dos Santos Calado and Others v. Portugal*, 2020, §§ 111-112).

117. 재판소의 역할은 재판 청구와 관련된 국내법 해석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해석의 효과가 협약과 양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Zubac v. Croatia* [GC], 2018, § 81). 이 점에 있어, 재판소는 소송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의 구제를 위해 지켜야 할 절차가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일관성 있는 국내 사법 관행과 그 일관적인 적용은 일반적으로 상급법원에 대한 접근 제한과 관련된 예측가능성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ibid.*, § 88; *C.N. v. Luxembourg*, 2021, § 44 및 파기원에서 처음으로 여러 법령 조항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정의 예측가능성과 관련하여 §§ 45 이하 참조). 국내 법원이 국내법 적용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법원이 제시한 이유를 검토하여 법적문제에 대한 상소 신청에서 절차적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려는 정당한 우려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Ghrenassia v. Luxembourg*, §§ 34-37).

118. *Zubac v. Croatia* [GC], (2018) 판결에 따르면, 상급법원 접근에 대한 법적 제한의 비례성을 판단할 때,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상소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는 소송당사자의 관점에서 예측 가능한 절차여야 한다(또한,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Arrozpide Sarasola and Others v. Spain*, 2018, § 106). 둘째, 청구인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절차적 오류를 확인한 후, 그러한 오류의 결과로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해졌는지 판단해야 한다. 문제의 절차적 오류가 청구인이나 관련기관, 특히 법원 중 어느 한 측면에서만 발생한 경우,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킨 측이 부담을 책임지도록 하는 경향을 보인다(*Zubac v. Croatia* [GC], 2018, § 90 및 인용된 사례 참조). 셋째, 문제의 제한이 “과도한 형식주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97; 또한,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Dos Santos Calado and Others v. Portugal*, 2020, §§ 116-117 및 인용된 사례 참조).

119. *Gil Sanjuan v. Spain* (2020)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한 후 대법원 상고에 대해 새로 도입된 심리적격성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 제6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45). 법적 확실성의 원칙을 참고한 후, 재판소는 청구인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고(§§ 38-39) 따라서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되돌릴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 40-43).

120. *Trevisanato v. Italy*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전문 변호사들이 파기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때 각 상고이유를 요약하고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법 원칙을 명시하도록 한 요건이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2-45). *Succi and Others v. Italy*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법적문제에 대한 상고장을 작성할 때 전문 변호사에게 기대되는 지식 수준을 강조했다(§ 113). 또한 *Ghrenassia v. Luxembourg*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파기원 절차를 위한 전문 변호사 제도의 흠결을 고려했다(§ 36).

재판소는 또한 파기원 사건 심사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위해 이루어진 고려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Miessen v. Belgium*, 2016, § 71).

121. 원칙적으로 대법원에 제소하기 위한 특정 기준(소송물 가액에 따른 심리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이 자신의 역할에 적합한 중요한 사안만 처리하도록 보장하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다(*Zubac v. Croatia* [GC], 2018, § 73, § 83 및 § 105). 하지만, 이러한 제한의 비례성은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한다(§§ 106-107).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판단재량을 과도하게 행사했는지 심사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을 수립했다(§§ 108-109).

122. 또한, 제6조제1항은 절차를 시작할 권리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을 권리 또한 보장한다(*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86; *Kutić v. Croatia*, 2002, §§ 25 및 32, 절차 중지에 관한 사건; *Áćimović v. Croatia*, 2003, § 41; *Beneficio Cappella Paolini v. San Marino*, 2004, § 29 사법 정의의 거부에 관한 사건; *Marini v. Albania*, 2007, §§ 118-123, 청구인이 가부 동수 투표 결과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거부한 사건 및 *Gogić v. Croatia*, 2020, §§ 40-41, 사법기관의 오류로 발생한 결과와 관련된 사건).

123. 형사절차 종결로 인해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심사가 중단된 경우, 재판소는 청구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민사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른 효과적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198). 더 일반적으로 말해, 민사당사자의 불안 청구를 심사하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재판청구권의 부당한 제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Petrella v. Italy*, 2021, §§ 49-53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124. 법원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내려진 일련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상소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Musumeci v. Italy*, 2005, §§ 41-43) 법정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Ganci v. Italy*, 2003, § 31). “법원에 대한 권리”는 또한 판결의 집행을 포함한다.⁸

125. 민사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의 비례성을 검토할 때, 재판소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절차적 오류를 고려하고, 청구인이 그러한 오류 때문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었는지 판단한다. 재판소는 오류의 결과를 부담해야 하는 측이 청구인인지 아니면 관할기관인지 심사하기 위한 참고 기준을 명시했다(*Zubac v. Croatia* [GC], 2018, §§ 90-95, § 119). 하급법원에서 오류를 범한 경우, 재판소는 이후 해당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대법원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고려했다(§§ 122-124).

126. 그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이 주장되는 경우, 협약에 따른 재판청구권이 협약에 의해 역시 보장된 법적 확실성에 대한 상대 당사자의 권리와 상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충하는 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며, 재판소는 국가에 폭넓은 판단재량을 부여한다(*Sanofi Pasteur v. France*, 2020, §§ 56-58).

2. 제한

127. 재판청구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관할권을 거부할 수 있으며(*Ali Riza v. Switzerland*, 2021, §§ 94-96) 일정 범위 내에서 묵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Stanev v. Bulgaria* [GC], 2012, § 230; *Zubac v. Croatia* [GC], 2018, § 78; *Golder v. the United Kingdom*, 1975, § 38). 이 규칙은 특히 상소에 대한 심리적격성 요건에 적용된다. 상소의 성격상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며, 국가는 이 점에 있어 일정한 판단재량을 누린다(*Zubac v. Croatia* [GC], 2018, §§ 107-109; *Luordo v. Italy*, 2003, § 85). 이 규칙은 또한 적절한 사법 집행과 국내 사법결정의 실효성과 관련된 사건에도 적용된다(*Ali Riza v. Switzerland*, 2021, § 97).

128. 그렇지만, 적용되는 제한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식 또는 정도로 개인이 재판을 청구할 방법을 제한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며(*Oorzhak v. Russia*, 2021, §§ 20-22), “채택한 수단과 달성하려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제한은 제6조제1항과 양립할 수 없다(*Markovic and Others v. Italy* [GC], 2006, § 99; *Nait-Liman v. Switzerland* [GC], 2018, §§ 114-115; *Ashingdane v. the United Kingdom*, 1985, § 57; *Fayed v. the United Kingdom*, 1994, § 65).

129.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재판청구권에 정당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정 제한 기간(*Sanofi Pasteur v. France*, 2020, §§ 50- 55, 피고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에 관한 사건; *Stubbing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96, §§ 51-52), 소송비용 부담 명령에 대한 담보 제공(*Tolstoy Miloslavsky v. the United Kingdom*, 1995, §§ 62-67), 법정 대리인에 대한 요건(*R.P.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2, §§ 63- 67),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요건(*Momčilović v. Croatia*, 2015, §§ 55-57) 또는 법적문제에 대한 상소 절차의 당사자들에 대한 답변서 송달 관련 규칙의 준수(*C.N. v. Luxembourg*, 2021, § 55) 등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파기원 절차에서 전문 변호사의 변호를 받도록 한 요건 역시 마찬가지이다(*Bąkowska v. Poland*, 2010, §§ 45-46, 48). 또한, 국선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상소를 거부한 것 자체가 제6조제1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47).

8. “판결 집행”에 관한 절 참조.

130. 그 밖에도, 소속 구성원의 행동규범 등 징계와 무관한 내부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 단체나 전문직 협회의 조직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사법심사 청구에 대한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Bilan v. Croatia* (dec.), 2020, §§ 27-31, 공증인에 대한 서면 경고에 관한 사건; *Lovrić v. Croatia*, 2017, § 73 비교). 대법원이 법령 위헌 선언의 효력을 적시에 제한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인해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공익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제6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실제로, 심각한 경제위기 기간에 한 국가의 경제정책 등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위헌을 선언할 때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Frantzeskaki v. Greece* (dec.), 2019, §§ 38-40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131. 재판청구권이 법에 의해 또는 관행상 제한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제한이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지 여부(피청구국 정부가 명시해야 함: *Oorzhak v. Russia*, 2021, §§ 20-22) 및 채택한 수단과 달성하려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Ashingdane v. the United Kingdom*, 1985, § 57). 제한의 비례성과 관련하여,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판단재량의 범위는 이 분야의 관련 국제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Nait-Liman v. Switzerland* [GC], 2018, §§ 173-174). 회원국 내에서 지속해서 발전하는 사안과 관련된 경우, 판단재량의 범위는 또한 “유럽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적어도 회원국들 사이에 일정한 동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ibid.*, § 175). 해당 제한이 재판소가 확립한 원칙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 제6조제1항 위반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

132. 개인이 국내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국내법에 규정된 관련 민사상의 권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확히 말해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절차적 금지 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 있다(*McElhinney v. Ireland* [GC], 2001, § 24). 제6조제1항은 체약국의 실체법이 민사상의 “권리”에 대한 특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보장하지 않는다. 재판소는 제6조제1항의 해석을 통해 해당 국가에 법적 근거가 없는 실체적인 민사상의 권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87 및 98). *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교회 건물 반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관련 실체법 조항 때문이며 재판청구권 제한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6조제1항이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99 및 106).

133.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가 적절히 검토된 경우, 정당한 이익이 없음을 근거로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재판청구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Obermeier v. Austria*, 1990, § 68 및 국제재판소에 관한 사건으로는, *Konkurrenten.no AS v. Norway* (dec.), 2019, §§ 46-48).

134. *해외에서 행해진 행위를 다룰 수 있는 국내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제한*. 이러한 제한은 적절한 사법 집행의 원칙과 국내 사법결정의 실효성 유지와 관련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Nait-Liman v. Switzerland* [GC], 2018, § 122; *Hussein and Others v. Belgium*, 2021, §§ 59-73).

135. 국제기구의 국가 관할권 면제(특히 *Stichting Mothers of Srebrenica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dec.), 2013, § 139 참조): 이 조약 기반 규칙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며(*Waite and Kennedy v. Germany* [GC], 1999, § 63), 제6조제1항의 관점에서 이 규칙으로부터 발생하는 제한이 균형을 잃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가 협약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제6조제1항과 양립할 수 있다(*ibid.*, §§ 68-74; *Prince Hans-Adam II of Liechtenstein v. Germany* [GC], 2001, § 48; *Chapman v. Belgium* (dec.), 2013, §§ 51-56 및 *Klausecker v. Germany* (dec.), 2015, §§ 69-77, 중재절차의 대안적 절차에 관한 사건). 그러나 대안적 구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관할권 면제가 인정될 경우, 해당 면제 그 자체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Stichting Mothers of Srebrenica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dec.), 2013, § 164).

136. *Stichting Mothers of Srebrenica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dec.) (2013) 결정은 UN에 부여된 국내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다뤘다. 재판소는 UN헌장 제VII장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행된 활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UN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UN이 그러한 취지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해 국내 관할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협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행된 활동에 국내 관할권을 적용하는 것은 모든 개별 국가가 자국 법원을 통해 이 분야에서 UN의 효과적인 활동 수행을 포함한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의 핵심 임무 수행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다(§ 154). 재판소는 민사 청구를 접수한 국내 법원이 해당 청구가 강행규범까지도 포함하는 국제법 규범을 특히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주장에 기초한다는 이유만으로 UN의 국가 관할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국제법 원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58).

137. 국가면제: 외국에 대한 국가면제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다(*Stichting Mothers of Srebrenica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2013, (dec.), § 158).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공법 규칙을 반영하여 취한 조치가 반드시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Fogarty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36; *McElhinney v. Ireland* [GC], 2001, § 37; *Sabeh El Leil v. France* [GC], 2011, § 49).

138. 외국의 관할권 면제: 면제 부여는 실제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권리를 결정할 국내 법원의 사법권에 대한 절차적 제한으로 간주된다(*J.C. and Others v. Belgium*, 2021, §§ 58-59). 외국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동의하여 타국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면제 특권을 포기할 수 있다(*Ndayegamiye-Mporamazina v. Switzerland*, 2019, §§ 57 및 59). 관할권에 대한 국가면제 원칙 적용으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 해당 사건의 상황이 이러한 제한을 정당화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예를 들어, *Prince Hans-Adam II of Liechtenstein v. Germany* [GC], 2001, §§ 51-70). 제한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해당 목적에 비례해야 한다(*Cudak v. Lithuania* [GC], 2010, § 59; *Sabeh El Leil v. France* [GC], 2011, §§ 51-54). 외국을 국내 민사절차에서 면제하는 주권면제 부여는 국가 간 선린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다(*Fogarty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34; *Al-Adsani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54; *Treska v. Albania and Italy* (dec.), 2006; *J.C. and Others v. Belgium**, 2021, § 60). 해당 조치가 비례적인지 여부에 따라(*J.C. and Others v. Belgium*, 2021, §§ 61 및 63에 요약되어 있는 원칙 참조), 이러한 조치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으며(*Cudak v. Lithuania* [GC], 2010, § 74; *Sabeh El Leil v. France* [GC], 2011, § 49; *Naku v. Lithuania and Sweden*, 2016, § 95),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Al-Adsani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67; *Fogarty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39; *McElhinney v. Ireland* [GC], 2001, § 38 및 최근의 사건으로 재판소가 국내 법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법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한, *J.C. and Others v. Belgium*, 2021, § 75참조). 대안적 구제 수단이 없다고 해서 국가면제가 그 자체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Stichting Mothers of Srebrenica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dec.), 2013), 재판소는 *J.C. and Others v. Belgium* (2021)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후 대안적 구제 수단이 있었다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외국 관할권에 대한 국가면제는 국제관습법이 발전됨에 따라 점차 제한되었다.

- 따라서, 재판소는 국제법 및 비교법의 최근 추세에 따르면 대사관 직원 채용에 관한 분쟁을 제외한 고용 관련 분쟁에서 국가면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Cudak v. Lithuania* [GC], 2010, §§ 63 이하; *Sabeh El Leil v. France* [GC], 2011, §§ 53-54 및 57-58; *Naku v. Lithuania and Sweden*, 2016, § 89, 대사관 직원 해고에 관한 사건; 또한 급여 체납에 대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절차에서의 소환장 송달에 관한 사건인 *Wallishauser v. Austria*, 2012, 참조). 대사관 또는 상설 대표부와 업무지원 직원 간에 체결된 고용 계약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언제나 법정지국(업무가 수행되는 국가)의 국민과 법정지국에 거주하는 비국민 모두를 보호했다(*Ndayegamiye-Mporamazina v. Switzerland*, 2019, §§ 49 및 61과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이러한 일관적인 접근법은 성문화된 국제관습법과 일치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은 법정지국 영토에서 체결된 고용 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관할권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특히 “직원이 법정지국에 영구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직원은 소송이 제기되는 시점에 고용주 국가의 국민”인 경우, 이 원칙에 대해 예외가 적용된다(*ibid.*, §§ 61-63). 인용된 사건에서, 이전 사건과는 달리, 청구인은 스위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고용주 국가(부룬디)의 국민이었으며, 주UN 부룬디 공화국 대표부에서 근무했던 법정지국(스위스)에 영구 거주지를 두지 않았다. 스위스가 청구인의 부당 해고 청구에 대해 부룬디 공화국의 관할권 면제를 준수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법 규칙에 부합하는 조치였다(§ 66).
- 국가와 외국인 간 상업 거래에 대해서도 국가면제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법이 채택될 수 있다(*Oleynikov v. Russia*, 2013, §§ 61 및 66).
- 반면, 2001년 재판소는 국제법 및 비교법의 최근 추세에 따르면 법정지국 내 작위나 부작위로 인한 개인 손해와 관련하여 국가면제를 제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관행이 결코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McElhinney v. Ireland* [GC], 2001, § 38).
- *J.C. and Others v. Belgium*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관련된 사건에서 외국 관할권에 대한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인권법, 국제인도법 또는 강행규범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반에 관한 판례의 요약이 포함된 §§ 64 이하 참조). 또한, 2014년 재판소는 고문을 당했다며 외국 관리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청구에 관한 사건에서 국제공법의 특별 규칙이나 예외에 찬성하는 일부 새로운 주장이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국가 공무원이나 대리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의 면제특권을 우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Jon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4, §§ 213-15, 문제의 국가와 해당 국가의 공무원이 주장한 국가면제를 이유로 고문 혐의에 대한 청구인이 요청한 민사 청구에 대한 심사가 거부되었던 사건).
- 집행에 대한 국가면제 자체가 제6조제1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005년 재판소는 국가면제를 규율하는 모든 국제법이 그 한도가 엄격히 규정된 특정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외국이 법정지국 영토에서 집행을 면제받는다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Manoilescu and Dobrescu v. Romania and Russia* (dec.), 2005, § 73). 2002년 재판소는 “그리스 법원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독일 정부에 명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리스 정부가 그리스에서 집행 절차를 통해 청구인에 대한 채무 상환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Kalogeropoulou and Others v. Greece and Germany* (dec.), 2002). 이러한 결정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시점에서의 국제법과 관련하여 타당한 결정이었으며, 해당 국제법 분야의 향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139.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민의 대표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당파적 고발에 의해 의회의 기능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각국이 국회의원에게 다양한 수준의 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다(*C.G.I.L. and Cofferati v. Italy (no. 2)*, 2010, § 44). 그러므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6조와 양립할 수 있다.

- 정당한 목적 추구: 의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간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한다(*A. v. the United Kingdom*, 2002, §§ 75-77 및 79);
-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례한다(관련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적 수단을 가진 경우(*ibid.*, § 86) 및 면책특권이 의회 기능의 행사에만 적용되는 경우(*ibid.*, § 84; *Zollmann v. the United Kingdom (dec.)*, 2010). 의회 활동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채택된 수단 사이의 비례성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Cordova v. Italy (no. 2)*, 2003, § 64; *Syngelidis v. Greece*, 2010, § 44). 국회의원이 문제되는 발언을 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개인의 재판청구권이 제6조제1항과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Cordova v. Italy (no. 1)*, 2003, § 63; *C.G.I.L. and Cofferati v. Italy (no. 2)*, 2010, §§ 46-50,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적 수단이 없었던 사건).

140. 법관의 재판관할권 면제 또한 정당한 목적, 즉 적절한 사법 집행을 추구하며(*Ernst and Others v. Belgium*, 2003, § 50), 청구인이 협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례성 원칙을 준수할 경우 제6조제1항과 양립할 수 있다(*Ernst and Others v. Belgium*, 2003, § 53-55).

141. 공무원이 누리는 면제: 공무원의 평판을 훼손하는 진술과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취할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Fayed v. the United Kingdom*, 1994, § 70). 그러나, 채택된 수단과 정당한 목적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ibid.*, §§ 75-82). *Jon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213-15) 사건에서는 문제의 국가와 해당 국가의 공무원이 주장한 국가면제를 이유로 고문 혐의에 대한 청구인이 요청한 민사 청구에 대한 심사가 거부되었다. 재판소는 이 특정 사건에서 국가 공무원에게 면제를 부여한 조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공법의 규칙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는 한편, 이 국제법 분야의 발전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142. 국가원수의 면책특권: 국가원수가 수행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재판소는 국가원수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 내에서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원수에 기능적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원수에 부여되는 면제의 범위는 적절히 규율되어야 한다. 절대로 해제되지 않는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면제는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것이다(*Urechean and Pavlicenco v. Republic of Moldova*, 2014, §§ 47-55).

143. 면제의 한계: 국가가 협약 집행기구의 제한이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법원의 관할권에서 모든 민사 청구를 제외하거나 대규모 집단 또는 특정 범주의 계층에 대한 민사책임을 전체로서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이는 민주사회의 법치주의 또는 제6조제1항의 근간이 되는 기본 원칙, 즉 민사 청구는 판사에게 제출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McElhinney v. Ireland* [GC], 2001, §§ 23-26; *Sabeh El Leil v. France* [GC], 2011, § 50).

144. *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2016) 판결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483호(2003)에 따른 자산 몰수에 관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UN 제재 체재에서 내려진 결정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에서 채택된 조치에 대해 국내 법원이 적절한 사법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원칙을 명시한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국내 법원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1483호(2003)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취한 조치를 검토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 원칙은 없다고 판결했다. 결의에서 사법 감독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국가는 상충하는 이익 간 공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의적인 결의 이행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심사를 수행할 권한을

항상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의적인 조치를 방지하는 사법 감독 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이행할 경우 국가는 협약 제6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B. 포기

1. 원칙

145. 개인이 권리의 존재 또는 관련 절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해당 개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Schmidt v. Latvia*, 2017, § 96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146. 계약국의 국내법 체계에서 법원이나 재판소에 의해 심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는 민사 문제, 특히 계약의 중재 조항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한다.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법 집행의 측면에서도 분명한 이점이 있는 권리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Deweere v. Belgium*, 1980, § 49; *Pastore v. Italy* (dec.), 1999). 따라서 제6조는 특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Transado - Transportes Fluviais Do Sado, S.A. v. Portugal* (dec.), 2003). 사건의 당사자들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분쟁을 반드시 일반 법원에 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조항을 수락함으로써 협약에 포함된 특정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Eiffage S.A. and Others v. Switzerland* (dec.), 2009; *Tabbane v. Switzerland* (dec.), 2016, § 27). 개인이 중재법원에 직접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Lithgow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197).

2. 조건

147. 해당 포기가 허용될 수 있고 자유롭게 명백히 포기하는 한, 중재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Suda v. the Czech Republic*, 2010, §§ 48-49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Tabbane v. Switzerland* (dec.), 2016, §§ 26-27 및 30). 민주사회에서 법원에 대한 권리가 지닌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소송절차의 보조 절차에서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법원에 대한 권리로부터 얻는 이익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Suda v. the Czech Republic*, 2010, § 48). 포기는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동반해야 한다(*Eiffage S.A. and Others v. Switzerland* (dec.), 2009; *Tabbane v. Switzerland* (dec.), 2016, § 31).

148. 판례법에서는 자발적 중재와 강제적 중재가 다르게 취급된다. 자발적 중재는 자유롭게 합의된 사항에 따라 진행되므로 원칙적으로 제6조에 따른 쟁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상사중재와 관련하여, *Beg S.p.a. v. Italy*, 2021, §§ 135 이하 참조). 하지만, 강제적 중재의 경우(즉, 법에 따라 중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법원의 관할권 밖으로 분쟁을 가져갈 수 없으며, 따라서 중재법원은 협약 제6조제1항에 명시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Tabbane v. Switzerland* (dec.), 2016, §§ 26-27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인용된 결정에서, 재판소는 포기 조항과 관련 법령 조항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유연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중재지로서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촉진하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다고 판결했다(§ 36).

149. 재판소는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중재가 사법절차에 비해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로축구 선수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가 제소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중재 분야의 관련 원칙을 거듭 설명한 후(*Mutu and Pechstein v. Switzerland*, 2018, §§ 94-96), 이러한 원칙이 프로 스포츠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청구인이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보호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했는지를 판단할 때, 근본적인 질문은 청구인에 대해 중재절차가 강제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103). 재판소는 국제빙상연맹(International Skating Union) 규정에 모든 분쟁이 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경기에 참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청구인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113-115). 반대로, 재판소는 관련 국제 규칙에 따라 축구선수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선택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첫 번째 청구인이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재판소는 첫 번째 청구인이 독립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스포츠중재재판소 재판부에 분쟁을 맡기기로 명확히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소가 중요하게 고려한 사실 하나는 첫 번째 청구인이 스포츠중재재판소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로 재판부 중재인 중 한 명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중재절차에서는 첫 번째 청구인과 두 번째 청구인 모두에 대해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보호조치가 제공되었어야 한다(§§ 121-123, 또한 축구 분쟁을 심리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강제관할권을 가진 중재위원회와 관련하여, *Ali Riza and Others v. Turkey*, 2020, §§ 175-181 및 *Ali Riza v. Switzerland*, 2021, § 82 참조).

C. 법적 조력

1. 법적 조력 제공

150. 제6조제1항은 국가가 “민사상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분쟁에서 무료 법적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Airey v. Ireland*, 1979, § 26).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절차에서 무료로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6조제3항제(c)호와 법적 조력을 언급하지 않는 제6조제1항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Essaadi v. France*, 2002, § 30).

151. 하지만, 협약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리, 특히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청구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제공해야 할 수 있다(*Airey v. Ireland*, 1979, § 26).

152. 제6조에 따라 개별 소송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ibid.*; 국가기관이 제기한 절차의 피고에 관한 사건인 *McVicar v. the United Kingdom*, 2002, § 48 및 § 50 참조; *Stee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2005, § 61 참조). 여기서 판단해야 할 문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적 조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가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이다(*ibid.*, § 51). 소송당사자가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반대 당사자에 비해 확연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등이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Timofeyev and Postupkin v. Russia*, 2021, §§ 107 및 101).

153. 6조가 법적 조력에 대한 요건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 요소 중에서도 특히 다음 요소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 쟁점이 된 청구인의 이익이 가진 중요성(*P., C. and S. v. the United Kingdom*, 2002, § 100; *Stee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2005, § 61): 여기에는 협약에서 보호하는 권리가 국내 절차에서 쟁점이 되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예: 협약 제8조 또는 제10조 또는 협약 제4의정서 제2조: *Timofeyev and Postupkin v. Russia*, 2021, § 102).

- 관련 법령이나 절차의 복잡성(*Airey v. Ireland*, 1979, § 24): 예를 들어, 당사자의 의견 진술(*Gnahoré v. France*, 2000, § 40) 또는 증거 제출(*McVicar v. the United Kingdom*, 2002, § 54)에 관한 특별 규칙의 복잡성이 고려될 수 있다.
- 청구인이 효과적으로 직접 변호할 능력(*McVicar v. the United Kingdom*, 2002, §§ 48-62; *Stee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2005, § 61): 이 문제는 상대 당사자가 절차 전반에 걸쳐 법적 조력을 받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Timofeyev and Postupkin v. Russia*, 2021, §§ 104-107).
- 법정 대리인 제공 요건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Airey v. Ireland*, 1979, § 26; *Gnahoré v. France*, 2000, § 41 요약 부분 참조).

154. 하지만, 문제의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Stee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2005, §§ 59-60), 따라서 전항에 언급한 사항 외에도 특히 다음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에 앞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소송당사자의 재정 상황(*Stee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2005, § 62);
- 소송당사자의 승소 가능성(*ibid*).

따라서, 특정 자격을 충족하는 소송당사자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파기원 절차에서 법적 조력을 위한 공적자금이 합리적인 수준의 승소 가능성을 가진 소송당사자에게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조력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Del Sol v. France*, 2002, § 23). 그러나 입법부가 수립한 제도는 자의적인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Gnahoré v. France*, 2002, § 41; *Essaadi v. France*, 2002, § 36; *Del Sol v. France*, 2002, § 26; *Bakan v. Turkey*, 2007, §§ 75-76 및 법원에 대한 권리의 본질이 훼손되었던 사건인 *Aerts v. Belgium* (1998) 판결에 대한 언급 참조). 따라서 국가에서 시행되는 법적 조력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하고(*Essaadi v. France*, 2002, § 35) 국가기관이 선택한 방법이 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Santambrogio v. Italy*, 2004, § 52; *Bakan v. Turkey*, 2007, §§ 74-78; *Pedro Ramos v. Switzerland*, 2010, §§ 41-45). 각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보다 상당한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가 있는 한, 국가는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당사자와 상대 당사자 모두에게 무기대등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다(*Stee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2005, § 62).

155. 법원이 법적 조력 요청을 거절한 이유를 제시하고 법적 조력 요청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Tabor v. Poland*, 2006, §§ 45-46; *Saoud v. France*, 2007, §§ 133-36).

156. 또한, 외국 법인의 법적 조력 요청을 거절한 결정은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Granos Organicos Nacionales S.A. v. Germany*, 2012, §§ 48-53).

2. 제공된 법적 조력의 실효성

157. 국가는 국선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호사가 법적 조력 제도에 따라 임명되었든 개인 비용으로 선임되었든 관계없이, 법조인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Staroszczyk v. Poland*, 2007, § 133), 변호는 본질적으로 피고와 그의 변호사 사이의 문제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는 이와 같이 수행된 변호에 대해 협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Tuziński v. Poland* (dec.), 1999).

158. 그러나 당사자의 변호를 지원하기 위해 국선 변호사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효과적인 조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Siałkowska v. Poland*, 2007, §§ 110 및 116).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선임된 변호사가 오랫동안 변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고 법적 조력 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지받은 경우, 관할 국가기관은 해당 변호사를 교체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소송당사자는 무료 법적 조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Bertuzzi v. France*, 2003, § 30).

159. 한편으로는 사법 정의 접근권의 효과적인 향유와 다른 한편으로는 법조인의 독립성 사이에서 필요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책임은 무엇보다도 국가에 있다. 재판소는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선임된 변호사가 변호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한 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법적 조력 제도의 결함 때문에,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법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Starosciuk v. Poland*, 2007, § 135; *Sialkowska v. Poland*, 2007, § 114 – 위반 판결).

160. 요컨대,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임명된 변호사의 모든 작위/부작위 또는 흠결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소송당사자 또한 이와 관련해 특정한 책임을 진다(*Bakowska v. Poland*, 2010, §§ 45-54 및 이를 준용한 사례에 관해(*mutatis mutandis*), *Feilazoo v. Malta*, 2021, §§ 125-126 및 131).

III. 제도적 요건

협약 제6조제1항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 의 결정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61. 제6조제1항의 여러 제도적 요건은 각각 고유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요건은 모두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이라는 기본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다른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할 필요성은 이러한 각 요건의 기저를 이룬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33).

A. “법원”의 개념

1. 독자적 개념⁹

162.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판결은 관련 판례법 원칙을 수정하여 명확히 확립했으며(특히, §§ 219-222 참조; 또한 *Eminağaoğlu v. Turkey*, 2021, §§ 90-91 및 94 참조), 이와 같이 확립된 판례법 원칙은 누적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다음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Dolińska-Ficek and Ozimek v. Poland*, §§ 272-280의 관련 요약 참조).

163. 첫째, “법원”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사법적 기능(관련 원칙에 대해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19 이하 참조), 즉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수행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한에 속한 문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Cyprus v. Turkey* [GC], 2001, § 233; *Xero Flor w Polsce sp. z o.o. v. Poland*, 2021, § 194,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사건).

164. 결정을 내릴 권한은 “법원”이라는 개념 자체에 내재해 있다. 절차에서는 제6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분쟁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Bentham v. the Netherlands*, 1985, § 40).

165.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권고적 의견을 따르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구속력 없는 권고적 의견만을 제시할 권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ibid.*).

166. 제6조제1항의 목적상 “법원”이 해당 국가의 표준 사법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Xhoxhaj v. Albania*, 2021, § 284, 판사와 검사의 직무수행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에 관한 사건; *Ali Riza and Others v. Turkey*, 2020, §§ 194-195 및 202-204 및 *Mutu and Pechstein v. Switzerland*, 2018, § 139, 중재에 관한 사건). 이러한 법원은 일반적인 법원 체계 밖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 특정 주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될 수 있다. 제6조제1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실제적 보장과 절차적 보장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Rolf Gustafson v. Sweden*, 1997, § 45). 따라서 제6조에 따른 절차적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으로 간주할 수 없다(*Eminağaoğlu v. Turkey*, 2021, §§ 99-105, 판사 징계 절차에 관한 사건).

167. 그러므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항상 제공한다면 소수의 특정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도 “법원”에 해당할 수 있다(*Lithgow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201, 중재판정부에 관한 사건). 그뿐만 아니라, 국가 법원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은 국가기관일지라도 제6조제1항의 목적상 실질적인 의미에 따른 “법원”의 개념에 포함될 수

9. 또한 “법에 따라 설립된”에 관한 절 참조.

있다(*Sramek v. Austria*, 1984, § 36).

168. 여러 기능(행정, 규제, 재판, 권고, 징계)을 수행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떤 기관이 “법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H. v. Belgium*, 1987, § 50).

169. 개별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비사법기관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바로 “법원”이라는 개념 자체에 내재해 있다(*Van de Hurk v. the Netherlands*, 1994, § 45).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법적 확실성의 원칙으로, 법적 확실성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법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을 때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 있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38, citing *Brumărescu v. Romania* [GC], 1999, § 61).¹⁰ 또한, 제6조제1항의 목적상 완전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만이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Mutu and Pechstein v. Switzerland*, 2018, § 139).

170. 둘째, “법원”은 또한 독립성, 특히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 공정성, 법관의 임기, 법원 절차에서 제공하는 보장을 비롯한 여러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 몇 가지 요건은 제6조제1항의 본문에 명시되어 있다(*Le Compte, Van Leuven and De Meyere v. Belgium*, 1981, § 55; *Cyprus v. Turkey* [GC], 2001, § 233). 실제로,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31 이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독립성과 공정성 모두 “법원” 개념의 핵심 요소이다.¹¹ 요컨대, 특히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요건과 공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법기관은 제6조제1항의 목적상 “법원”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232).

171. 마지막으로,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판결에 따르면, “법원”의 본질적인 개념에는 능력에 기초하여 선정된 판사들, 즉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에서 각자에게 요구되는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역량과 도덕적 완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판사들로 법원을 구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220-221).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법관에 임명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일반 법관을 임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법부 계층구조에서 상위 계층에 있는 “법원”일수록 더 엄격한 법관임용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게다가, 직업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에는 특히 필요한 기술적 역량과 관련하여 다른 임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능력에 기초한 판사 임용은 “법원”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사법기관의 전문역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결정적이며 개별 법관의 독립성을 추가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222).

172.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판결에서, 재판소는 특정 법관임용절차의 불규칙성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것인지 여부와 사건의 특정 상황에서 관련 국가기관이 상충하는 원칙 사이의 균형을 공정하고 비례적으로 유지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재판소와 국내 법원이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3단계 절차를 명시했다(§§ 243-252)(및 아래 B절 참조). *Xero Flor w Polsce sp. z o.o. v. Poland* (2021) 사건에서, 이 접근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에 적용되었다(§§ 255 이하).

173. 협약 제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법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지역 부동산 거래 규제기관(*Sramek v. Austria*, 1984, § 36)
- 범죄피해자 보상위원회(*Rolf Gustafson v. Sweden*, 1997, § 48)
- 산림 분쟁 해결위원회(*Argyrou and Others v. Greece*, 2009, § 27)

10. “판결 집행”에 관한 절 참조.

11.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한 절 참조.

- 스포츠 중재재판소(*Mutu and Pechstein v. Switzerland*, 2018, § 149) 와 축구 중재위원회(*Ali Riza and Others v. Turkey*, 2020, §§ 202-204) 및 상업중재위원회(*Beg S.p.a. v. Italy*, 2021 참조)
- 해당 국가의 판사 및 검사의 직무수행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Xhoxhaj v. Albania*, 2021, §§ 283 이하 - 또한 *Loquifer v. Belgium*, 2021, § 55 참조)

2. 관할권의 심급 단계

174. 제6조제1항이 계약국이 항소법원이나 파기원을 설치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법원을 설치한 국가는 그 이용자들이 이들 법원에서 제6조제1항에 포함된 기본적인 보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Zubac v. Croatia* [GC], 2018, § 80; *Platakou v. Greece*, 2001, § 38):

- 구체적 심사: 그러나 제6조제1항이 항소법원이나 파기원에 적용되는 방식은 관련 절차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법적문제에 대한 상소의 심리적격성 요건은 일반 상소의 심리적격성 요건보다 엄격할 수 있다. (*Zubac v. Croatia* [GC], 2018, § 82; *Levages Prestations Services v. France*, 1996, § 45).
- 포괄적 심사: 국내법 질서에서 수행되는 전체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Zubac v. Croatia* [GC], 2018, § 82; *Levages Prestations Services v. France*, 1996, § 45). 따라서, 일부 상황에서 고등법원 또는 최고법원은 협약 조항 중 하나에 대한 제1심 단계의 위반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 있다(*De Haan v. the Netherlands*, 1997, § 54; 이를 준용한 사례에 관해, *Zubac v. Croatia* [GC], 2018, § 123).

175. 인권 보호와 완전히 양립할 수 있는 유연성과 효율성에 대한 요구는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의 사전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법기관의 사전 개입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다(*Le Compte, Van Leuven and De Meyere v. Belgium*, 1981, § 51). 이러한 기관에 제기된 절차가 “완전한 관할권을 가진 사법기관의 사후 통제를 받고” 제6조의 보장을 제공한다면, 협약 위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Denisov v. Ukraine* [GC], 2018, § 65; *Zumtobel v. Austria*, 1993, §§ 29-32; *Bryan v. the United Kingdom*, 1995, § 40).

176. 마찬가지로, 전문직업 징계 기관이 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협약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협약은 전문직업 징계 기관이 해당 조항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전문직업 징계 기관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는 않더라도 “완전한 관할권을 가진 사법기관”의 사후 통제를 받으며 제6조제1항의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Albert and Le Compte v. Belgium*, 1983, § 29; *Gautrin and Others v. France*, 1998, § 57; *Fazia Ali v. the United Kingdom*, 2015, § 75).

177.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결정 자체가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제6조제1항에 따라 “완전한 관할권을 가진 사법기관”의 후속 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소의 일관적인 입장이다(*Ortenberg v. Austria*, 1994, § 31).¹²

3. 완전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심사

178. 완전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만이 제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Beaumartin v. France*, 1994, § 38). 제6조제1항은 법원이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Obermeier v. Austria*, 1990, § 70). “완전한 관할권” 개념이 반드시 국내법에서 정한 법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심사 범위에 관한 판례법 원칙은 특히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76-186) 판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판례는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의 구체적인 맥락”을 강조한다(해임 관련 사건에 대한 이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Pişkin v. Turkey*, 2020, §§ 131-136 참조).

12. 또한 “공정성”에 관한 절 참조.

179. 협약 제6조제1항의 목적상, “법원”은 “제기된 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심사할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76-177). 문제의 기관은 제기된 절차에서 “충분한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충분한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Sigma Radio Television Ltd v. Cyprus*, 2011, § 152,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법원이 완전한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은 사법적 기능의 어떤 요소도 누락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Chevol v. France*, 2003, § 63). 국내법원이 이론상 분쟁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완전한 관할권을 가진 경우, 해당 국내법원이 제기된 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제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Pişkin v. Turkey*, 2020, §§ 137-151).

180.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쟁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이 제6조제1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행정기관에 제기된 절차가 “완전한 관할권을 가진 사법기관의 사후 통제를 받고 제6조의 보장을 제공할 경우”, 즉 행정기관에 제기된 절차에서 확인된 구조적 또는 절차적 흠결이 완전한 관할권을 가진 사법기관의 사후 심사 과정에서 시정되는 경우, 협약 위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32; *Peleki v. Greece*, 2020, §§ 58-60).

181. 제6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재판소가 자신에게 제기된 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사전에 심사할 관할권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Terra Woningen B.V. v. the Netherlands*, 1996, § 52; *Sigma Radio Television Ltd v. Cyprus*, 2011, §§ 151-57). 이는 특히 해당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본안에 대한 근거를 하나씩 심사할 권한을 가져야 하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심사를 거부하지 않아야 하며, 명확한 기각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문제의 경우, 해당 법원은 소송당사자의 주장에서 핵심을 이루는 사실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Bryan v. the United Kingdom*, 1995, §§ 44-45). 일부 사건에서는, 해당 법원이 국내법에서 의미하는 완전한 관할권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의 항소 이유에 답하거나 사실문제나 법률문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결정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을 이유로 심사를 거부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항소 이유를 하나씩 심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토를 수행할 때 행정기관이 행사한 재량에 대한 법원 심사의 강도를 고려해야 한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83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182. 그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이 처벌과 해당 위법행위가 비례적인지 평가할 권한이 없다면 완전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Diennet v. France*, 1995, § 34, *Mérigaud v. France*, 2009, § 69).

183. 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면, 많은 사건에서 완전한 관할권 원칙이 충족되었다. 이는 재판소가 대체로 완전한 관할권 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분쟁 주제의 전문적인 성격 때문에 항소법원의 관할권이 제한되었던 행정법 사건에서는 이 원칙을 한층 더 유연하게 해석했다(*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2016, § 130; *Chaudet v. France*, 2009, § 37).

184. 실제로, 여러 회원국의 법체계에는 법원이 사실문제에 대해 제한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지만, 행정기관의 결정이 잘못되거나 비합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되었을 경우 해당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전문적 법률 분야(예: 도시 및 국가 계획 분야)가 존재한다. 협약 제6조는 행정기관의 의견을 해당 법원의 자체 의견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관할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예를 들어, 전원 계획에 관해, *Zumtobel v. Austria*, 1993, §§ 31-32 및 도시 계획에 관해, *Bryan v. the United Kingdom*, 1995, §§ 44-47 참조; 환경 보호에 관해, *Alatulkkila and Others v. Finland*, 2005, § 52 참조; 도박 규제에 관해, *Kingsley v. the United Kingdom* [GC], 2002, § 32 참조; 도박 규제에 관해,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78 및 *Fazia Ali v. the United Kingdom*, 2015, §§ 75-78 참조).

185. 위에서 언급한 상황은 *전문적 법률 분야*(도시계획, 사회보장 등)에서 행정재량을 행사하여 내린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와 관련이 있으며, 재판소는 이를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196 및 203) 사건의 *경계 분쟁*과 구별했다. 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행정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가 분쟁의 주제에 적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196).

186. 행정기관이 *특정 직업 경력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전문적 법률 분야*에서 일반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는 상황과 관련하여(*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95 대조), 재판소는 판례법을 통해 해당 심사가 협약의 목적상 “완전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을 확립했다(*Sigma Radio Television Ltd v. Cyprus*, 2011, §§ 151-57). 따라서 해당 사법기관이 충분한 심사를 수행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또한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79-181 참조):

- 항소가 제기된 행정 결정의 주제:
 - 행정 결정이 단순한 사실문제에 관한 것일 경우, 법원의 심사는 특정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전문분야와 관한 결정일 때보다 더 엄격히 수행되어야 한다.
 - 유럽의 기존 제도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사실문제에 대한 검토 권한을 제한하지만, 법원이 다양한 이유로 결정을 뒤집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판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해당 행정 결정이 내려진 방식: 관련 행정기관은 어떤 절차적 보호조치는 시행했는가?
 - 청구인이 이전의 행정절차에서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적 보호를 제공받은 경우, 이는 더 간단한 형태의 사후 사법통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Bryan v. the United Kingdom*, 1995, §§ 46-47; *Holding and Barnes PLC v. the United Kingdom* (dec.), 2002).
- 바람직한 항소 이유와 실제 항소 이유를 포함한 분쟁의 내용(*Bryan v. the United Kingdom*, 1995, § 45):
 - 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본안에 대한 주장을 하나씩 심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심사를 거부하지 않아야 하며, 명확한 기각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문제의 경우, 해당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서 핵심을 이루는 사실문제를 재검토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절차적 측면에 대한 주장만을 제시한 경우, 나중에 사실문제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을 비판할 수 없다(*Potocka and Others v. Poland*, 2001, § 57).

187. 예를 들어, 법원이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특정 사실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거부할 경우, 이는 제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Terra Woningen B.V. v. the Netherlands*, 1996, §§ 53-55). 법원이 분쟁의 핵심 쟁점 결정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Tsfayo v. the United Kingdom*, 2006, § 48). 이러한 경우,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법심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관련 판례에 대한 요약은,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81-183 참조).

188. 요컨대, 행정기관과 관련된 분쟁에서 행정기관이 법원에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내려 해당 분쟁을 이미 해결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분쟁의 결과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심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제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Tinnelly & Sons Ltd and Others and McElduff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98, §§ 76-79, 고용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사건; *Aleksandar Sabev v. Bulgaria*, 2018, §§ 55-58, 해고와 관련된 사건).

189. 항소 이유에 동의할 경우, 심사를 수행한 법원은 문제의 결정을 파기하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거나 결정을 위해 사건을 원래의 결정을 내린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환송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Kingsley v. the United Kingdom* [GC], 2002, §§ 32 및 34, 그리고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84). 모든 경우, 국내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심층적이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Pişkin v. Turkey*, 2020, §§ 146-151).

190. 사실관계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여러 요건 중 다수를 충족하는 준사법적 절차를 통해 이미 행정기관에 의해 성립된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사실관계에서 도출한 추론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경우, 그리고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다른 항소 이유를 하나씩 심사한 경우, 항소법원이 수행한 심사의 범위가 제6조제1항을 준수하기에 충분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Bryan v. the United Kingdom*, 1995, §§ 44-47).

191. 사법심사의 범위로 다시 돌아가자면,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85). 청구인이 제기한 모든 주장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사법절차의 당사자로서는 해당 절차의 결과에 결정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답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ibid.*).

192.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73-186) 사건에서 거듭 확인된 상기 기준과 원칙은 대재판부가 판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적절하다고 여긴 사항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대재판부는 수행된 사법심사가 분쟁의 주제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대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 점과 관련하여 징벌적 측면을 고려했다. 징계처분을 내리는 결정에 대한 심사는 이러한 징벌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행정적 결정과 차이가 있다(§ 196).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관련 기준은 제1심 징계 절차와 항소심 사법절차에 관한 기준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징계 기관의 절차에 절차적 보호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197) 청구인이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적절히 입증할 수 있는 조치 또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198항 참조) 다음으로, 사법기관의 항소 절차와 관련하여 대재판부는 다음 사항들을 심사했다(판결문 §§ 199 이하).

- 사법심사에 제기된 쟁점(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실과 징계양정 모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직업적 의무 위반 판결(§§ 201-03 참조). 징계 절차의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사실문제는 분쟁의 결과와 관련된 법적문제만큼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포함해 처벌이 부과되는 절차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확립이 특별히 중요하다. 사법부의 기능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존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03).
- 사법심사 방법,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의사결정 권한 및 해당 기관이 내린 결정의 논증(§§ 204-213).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공개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예외적인 조치여야 하며, 협약국의 판례법에 따라 명확히 정당화되어야 한다(§ 210).

193. “완전한 관할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법기관의 예:

- 오로지 행정기관의 재량이 해당 법령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었는지만을 판단할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법원(*Obermeier v. Austria*, 1990, § 70)

- 해당 처벌이 위법행위에 비례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직 협회의 징계처분 결정 중 법률문제에 대해 제기된 항소를 심리한 법원(*Diennet v. France*, 1995, § 34, 의사협회와 관련된 사건; *Mérigaud v. France*, 2009, § 69, 감정인협회와 관련된 사건)
- 헌법합치 여부 관점에서만 이의가 제기된 절차를 심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Zumtobel v. Austria*, 1993, §§ 29-30)
-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 자체 판례법에 따라, 프랑스 국사원은 조약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다룰 때 외부적 기관이자 행정부의 대표인 장관의 의견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장관 의견에 대해 당사자들의 반박이나 의견을 받지 않는다. 장관의 개입은 법적 절차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Chevrol v. France*, 2003, §§ 81-82).
-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의 특수한 맥락에서의 대법원(*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214)

194. 반면, 다음 사건에서는 제6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 *Fazia Ali v. the United Kingdom*, 2015: 이 사건에서, 사회보장 분야의 국가기관은 노숙자 가족의 주거와 관련된 행정 결정을 내렸고, 이후 이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제한적인 사법심사가 수행되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제도는 노숙자에게 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이 제도는 다수의 소규모 사례에 대해 시행되었으며, 빈곤계층에 경제적이면서 공정한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재판소의 관점에 따르면, 행정기관 차원에서 이미 사실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수행된 경우, 국내 법원의 심사가 증인에 대한 재심리를 포함하는 사건의 전면적인 재심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제6조 1항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 *Chaudet v. France*, 2009: 프랑스 국사원은 사법심사 청구를 제1심과 최종심에서 다뤘다. 이 사건에서, 국사원은 민간항공 의료위원회의 결정을 대체할 효력이 있는 “완전한 관할권”이 없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국사원은 완전한 관할권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들이 논의한 모든 의료보고서의 결론을 참작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모든 주장을 사실적, 법적 근거에 따라 검토하고 의료 기록의 모든 증거를 평가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사건이 제6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심사되었다고 판결했다(§§ 37-38).
- *Zumtobel v. Austria*, 1993: 재판소는 오스트리아 행정재판소가 행정기관의 배타적 재량에 속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하여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본안에 대한 주장에 답하거나 다양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관할권을 거부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본안에 대한 주장을 하나씩 심사했다고 판결했다(§§ 31-32 - 또한 *Ortenberg v. Austria*, 1994, §§ 33-34; *Fischer v. Austria*, 1995, § 34 참조).
- *McMichael v. the United Kingdom*, 1995: 이 사건에서, 스코틀랜드 주 법원(Sheriff Court)이 입양 허가 명령을 내렸으나, 청구인은 해당 명령에 대해 최고민사법원(Court of Session)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고민사법원은 이 문제에 관해 완전한 관할권을 보유했다. 최고민사법원은 일반적으로 주 법원의 확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재판을 수행했지만, 그렇게 할 의무는 없었다. 최고민사법원은 적절한 경우 증거를 직접 검토하거나 어떻게 사건을 재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과 함께 사건을 주 법원에 환송할 수 있었다(§ 66). 그뿐만 아니라, 주 법원은 아동의 청문회 관련 결정에 대해 제기된 항소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완전한 관할권을 가졌으며, 본안과 절차상의 위법행위를 모두 검토할 권한이 있었다(§ 82).

- *Potocka and Others v. Poland*, 2001: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의 관할권 행사 범위는 이의가 제기된 행정 결정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최고행정법원은 행정 결정이 내려진 절차에서 공정성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입증될 경우 해당 행정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최고행정법원의 논증은 최고행정법원이 이 사건에서 사실상 절차적 편의 측면을 검토했음을 보여주었다. 최고행정법원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청구의 절차적 흠결과 실체적 흠결을 고려하여 문제의 결정을 인용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심사를 제한할 수 있었음에도, 본안에 대한 주장에 답하거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관할권을 거부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본안에 대한 주장을 하나씩 심사했다. 최고행정법원은 신중하게 이유를 제시한 판결을 내렸고,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청구인들의 주장을 철저히 검토했다. 따라서 최고행정재판소의 심사 범위는 제6조제1항을 준수하기에 충분했다(§§ 56-59).

4. 판결 집행

a.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사법적 결정의 신속한 이행에 대한 권리

195. 제6조제1항은 구속력 있는 최종 사법 결정의 이행을 보호한다(상급법원의 심사가 수행될 수 있는 결정의 이행과 구별됨)(*Ouzounis and Others v. Greece*, 2002, § 21).
196. 법원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가진 집행권은 “법원에 대한 권리”의 필수 요소이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96; *Hornsby v. Greece*, 1997, § 40). 법원이 집행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Burdov v. Russia*, 2002, §§ 34 and 37). 따라서 구속력 있는 판결의 이행이 불합리하게 오랫동안 지연될 경우 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Burdov v. Russia (no. 2)*, 2009, § 66).
197. “법원에 대한 권리”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취해진 임시 조치의 이행 또한 보호한다(*Sharxhi and Others v. Albania*, 2018, § 92). 그러므로 국내 법원의 임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주거용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제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94-97).
198. 사법적 결정의 집행에 대한 권리는 행정절차와 관련된 상황에서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harxhi and Others v. Albania*, 2018, § 92). 국가의 최고행정법원에 사법심사 청구를 제기한 소송당사자는 문제의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해당 결정에 따른 영향을 없애기를 바란다(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Bursa Barosu Başkanlığı and Others v. Turkey*, 2018, § 144 참조).
199. 따라서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적법성 회복은 행정기관이 법원의 판결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Hornsby v. Greece*, 1997, § 41; *Kyrtatos v. Greece*, 2003, §§ 31-32;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하여 이를 준용한 사례에 관해, *Xero Flor w Polsce sp. z o.o. v. Poland*, 2021, §§ 282-283 참조).
200. 그러므로 특정 상황에서 판결 집행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판결 집행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훼손할 정도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Burdov v. Russia*, 2002, §§ 35-37).
201. 이 점을 고려할 때, 판결 집행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철저해야 하며(*Sabin Popescu v. Romania*, 2004, §§ 68-76; *Matheus v. France*, 2005, § 58), 금지되거나, 무효로 되거나 과도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Immobiliare Saffi v. Italy* [GC], 1999, § 74).
202. 국가기관이 상급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즉 동일한 맥락의 절차에서 일련의 판단을 내리며 상급법원의 결정을 반복해서 무시할 경우, 이 또한 제6조제1항에 위배된다(*Turczanik v. Poland*, 2005, §§ 49-51; *Miracle Europe Kft v. Hungary*, 2016, § 65).

203. 구속력 있는 판결의 이행이 불합리하게 오래 지연될 경우 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연의 합리성은 특히 집행 절차의 복잡성, 청구인 자신의 행동과 관할기관의 행동, 법원 판정의 금액과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Raylyan v. Russia*, 2007, § 31).
204. 예를 들어,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최종적이고 집행 가능한 사법적 결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5년 넘게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제6조제1항이 제공하는 모든 유용한 효과가 상실되었다고 판결했다(*Hornsby v. Greece*, 1997, § 45).
205. 또 다른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판결을 집행할 때까지 소요된 9개월의 전체 기간이 사건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되었다(*Moroko v. Russia*, 2008, §§ 43-45).
206.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임차인에 대한 점유 회복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경찰 지원을 약 4년 동안 거부한 점(*Lunari v. Italy*, 2001, §§ 38-42) 및 임차인 퇴거에 관한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입법부의 개입으로 인해 판결 집행이 6년 넘게 정지된 점 등으로 인해 문제의 입법 규정에 의해 모든 유용한 효과가 상실되었으므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법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결했다(*Immobiliare Saffi v. Italy* [GC], 1999, §§ 70 및 74).
207. 공공기관이 법원의 금전지급결정을 이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1년 미만의 지연은 원칙적으로 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 반면, 1년 이상의 지연은 일응상 불합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해당 상황 및 구체적 기준에 따라 반복될 수 있다(*Gerasimov and Others v. Russia*, 2014, §§ 167-174 및 급여 체납과 관련하여 1년 10개월에 걸친 복잡한 청산절차에 관한 사건인, *Kuzhelev and Others v. Russia*, 2019, §§ 110 및 137 참조, 또는 약 13개월 기간이 소요된 사례에 관한 사건인, *Titan Total Group S.R.L. v. the Republic of Moldova*, 2021, §§ 81-84 참조; 또한 *Cocchiarella v. Italy* [GC], 2006, § 89 참조: 지나치게 오래 지연된 절차의 영향을 시정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제공된 보상적 구제와 관련하여,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보상금 수여 결정을 집행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8. 재판소는 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국내법에 명시된 법정 기한을 적절히 참작하지만, 해당 기한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상황에서 판결 집행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제6조제1항에서 보호하는 권리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소는 *Burdov v. Russia (no. 2)* (2009) 사건에서, 6개월 동안 판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Moroko v. Russia* (2008) 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의 판결 집행이 9개월 동안 지연되긴 했지만 해당 지연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일응 불합리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했다(§ 43). 하지만, 이러한 정상참작이 위에서 언급한 기준과 기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절차 전반에 대해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Burdov v. Russia (no. 2)*, 2009, § 67).
209. 특히, *Gerasimov and Others v. Russia* (2014, §§ 168-74) 사건에서, 재판소는 집행될 판결이 청구인에게 중요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경우(예를 들어, 청구인의 일상적인 생활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을 초과하는 집행 지연은 협약에 따른 특별한 성실성 요건에 반할 것이다(§ 170). 주택 배정 기간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특별한 성실성이 요구되지 않는 한 집행 조치는 2년 미만으로 지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171).
210. 법적 절차 종료 시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당사자는 별도의 집행 절차를 제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Burdov v. Russia (no. 2)*, 2009, § 68; *Sharxhi and Others v. Albania*, 2018, § 93). 국가기관은 국가에 대해 내려진 판결이 이행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Yavorivskaya v. Russia*, 2005, § 25), 이러한 책임은 판결이 구속력을 갖게 되고 집행할 수 있게 된 날부터 발생한다(*Burdov v. Russia (no. 2)*, 2009, § 69). 그러므로, 청구인이 집행 절차를 시작하여 지연되었던 보상금을 받은 것은 국가기관이 오랫동안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흠결을 치유할 수 없으며, 적절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98).

211. 승소 당사자는 판결을 집행하거나 더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특정한 절차적 단계를 밟아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협력 요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국가기관의 의무를 면제해서도 안 된다(*Burdov v. Russia (no. 2)*, 2009, § 69).
212.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정 상황을 무시하는 한편 승소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해당 결정에 대한 집행 절차를 시작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국가기관의 입장이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겼으며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훼손할 만큼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Apostol v. Georgia*, 2006, § 65).
213. 소송당사자는 국내 집행 절차나 국가예산제도의 복잡성과 관계없이, 손실보상금(*Burdov v. Russia*, 2002, § 35) 또는 주거(*Teteriny v. Russia*, 2005, §§ 41-42)에 대한 최종 결정의 혜택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기관은 자금 또는 기타 자원의 부족을 판결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99; *Burdov v. Russia*, 2002, § 35; *Amat-G Ltd and Mebaghishvili v. Georgia*, 2005, § 47). 국가기관은 또한 대체 숙소 부족을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Prodan v. Moldova*, 2004, § 53; *Tchokontio Happi v. France*, 2015, § 50; *Burdov v. Russia (no. 2)*, 2009, § 70).
214. 국가기관이 보상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을 이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 가능한 날부터 보상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법원이 판정한 보상금 지급이 2년 1개월 동안 지연된 것은 해당 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한 협약의 요건과 양립할 수 없다(*Burdov v. Russia (no. 2)*, 2009, §§ 73-76 및 83).
215.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은 협약에 따른 국가의 국제적 책임 원칙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Société de gestion du port de Campoloro and Société fermière de Campoloro v. France*, 2006, § 62).
216. 물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행정 조치의 불법성과 무효를 선언한 법원 판결을 원래의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극복할 수 없는 사실적 또는 법적 장애 때문에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판청구권에 대한 요건에 따라, 회원국은 선의로 자체 재량을 행사하여 보상금 지급과 같이 불법적인 행정 조치로 인한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을 검토해야 한다(*Cingilli Holding A.Ş. and Cingillioğlu v. Turkey*, 2015, § 41, 및 개인 간 분쟁과 관련된 상황에서 제기된 청구에 관한, *Nikoloudakis v. Greece*, 2020, § 50).
217. 협약에 따른 국가 의무의 범위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채무(*Burdov v. Russia (no. 2)*, 2009, §§ 68-69, 72 이하)와 개인의 채무를 구별해야 한다.
218. 공권력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집행 절차를 제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재판소는 법적 절차에서 국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후속 판결 이행을 위해 별도로 집행 절차를 제기하도록 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Metaxas v. Greece*, 2004, § 19; *Kukalo v. Russia*, 2005, § 49). 승소 당사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국가기관에 통지하거나(*Akashev v. Russia*, 2008, § 21) 공식적인 성격의 특정 절차적 단계를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Kosmidis and Kosmidou v. Greece*, 2007, § 24).

219. 채무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민간” 채무자의 파산으로 집행 가능한 채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Sanglier v. France*, 2003, § 39; *Ciprová v. the Czech Republic* (dec.), 2005; *Cubanit v. Romania* (dec.),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사인 간 분쟁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을 법과 실제 관행 측면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집행 제도를 수립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Fuklev v. Ukraine*, 2005, § 84; *Fomenko and Others v. Russia* (dec.), 2019, §§ 171-181). 따라서 집행 절차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성실성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집행을 방해할 경우 국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Fuklev v. Ukraine*, 2005, § 67). 국가기관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는 해당 목적을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Ruianu v. Romania*, 2003, § 66),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판결 집행 의무가 있음을 유념하여 시행한 것이어야 한다(*ibid.*, §§ 72-73; *Sekul v. Croatia* (dec.), 2015, §§ 54-55).

220. 예컨대 재판소는 최종적이고 집행 가능한 결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협조하지 않은 (민간) 제3자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국가기관이 제6조제1항의 모든 유용한 효과를 상실시켰다고 판결했다(*Pini and Others v. Romania*, 2004, §§ 186-88, 아동 2명이 살고 있던 사립기관의 이행 거부로 아동 입양 명령에 대한 집행이 3년 넘게 지연된 사건).

221. 그렇지만, 국가가 해당인이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Fociac v. Romania*, 2005, §§ 74 및 78), 국가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Fomenko and Others v. Russia* (dec.), 2019, § 195).

222. 마지막으로, 법원에 대한 권리는 집행 절차에 대한 접근권, 즉 집행 절차를 개시할 권리도 보호한다(*Apostol v. Georgia*, 2006, § 56).

b. 최종 사법 결정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권리

223. 또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는 법치주의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법적 확실성의 원칙으로(*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38; *Okyay and Others v. Turkey*, 2005, § 73), 법적 확실성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법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을 때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 있다(*Brumărescu v. Romania* [GC], 1999, § 61; *Agrokompleks v. Ukraine*, 2011, § 148). 이는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 임시 조치를 명령하는 결정과도 관련이 있다(*Sharxhi and Others v. Albania*, 2018, §§ 92-96).

224. 최종 판결이 무기한 검토될 가능성이 있고 반복해서 취소될 위험이 있는 특징을 가진 사법제도는 제6조제1항에 위배된다(*Sovtransavto Holding v. Ukraine*, 2002, §§ 74, 77 및 82, 최고중재법원장, 검찰총장 및 각 대리는 감독심의 절차에 따라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최종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사건).

225. 판사가 제기하든 행정부 공무원이 제기하든(*Tregubenko v. Ukraine*, 2004, § 36) 혹은 비사법기관(*Agrokompleks v. Ukraine*, 2011, §§ 150-51)이 제기하든 관계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26. 최종 결정은 법적 오류와 같이 중대하고 설득력 있는 성격의 상황에 따라 필수적인 경우에만 문제 삼을 수 있다(*Ryabykh v. Russia*, 2003, § 52; 또한 *Vardanyan and Nanushyan v. Armenia*, 2016, § 70 참조 및 당사자의 요청으로 시작된 감독심의 절차가 법적 확실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았던 사건인 *Trapeznikov and Others v. Russia*, 2016, , §§ 39-40 비교; 또한 원칙에 관해서는,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38 참조). *Tığrak v. Turkey* 사건에서, 재판소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고 집행할 수 있게 된 후에 제출된 신청은 원칙적으로 기판력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해당 원칙에 대한 요약은 §§ 48-49 참조).

227. 요컨대, 법적 확실성은 기판력 원칙, 즉 판결 최종성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38 이하). 이 원칙에 따르면, 어떤 당사자도 단지 사건의 재심리를 수행하고 새로운 결정을 받기 위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상급법원은 사건을 새로 검토하고자 재심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재심이 위장 항소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주제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을 가능성만으로는 사건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원칙에서 벗어난 재심 결정은 근본적인 흠결의 시정이나 오심과 같이 중대하고 설득력 있는 상황에 따라 필수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된(*Ryabykh v. Russia*, 2003, § 52; *Şamat v. Turkey*, 2020, § 62 및 *OOO Link Oil SPB v. Russia* (dec.), 2009). 이는 제6조제1항의 기본적인 측면을 이루며, 이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판례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특히, *Gražulevičiūtė v. Lithuania*, 2021, §§ 72-74 참조).

228. 기판력 원칙에 관한 재판소의 판례법은 특히 예외적인 구제 수단을 이용하거나 새로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재심을 요청하는 상황(예를 들어, *Pravednaya v. Russia*, 2004, §§ 30-33, *Tregubenko v. Ukraine*, 2004, §§ 34-38) 및 일반적인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상황(*Magomedov and Others v. Russia*, 2017, §§ 87-89)과 같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 상황은 새로운 사실이 새로 발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감독기관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사실상 위장 항소, 즉 공권력이 앞선 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사건 재심을 받고자 하는 것에 해당한다. 두 번째 상황의 경우, 법원이 항소 기한이 지났음에도 패소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경우, 기판력을 가진 판결이 즉시 파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진 효력이 중단된다. 따라서 이 두 상황은 모두 판결 최종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29. 또한 최종 판결이 파기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인해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Gražulevičiūtė v. Lithuania*, 2021, §§ 79-81).

230.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특히 다른 사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법절차나 다른 절차에서 공권력에 의해 오류가 발생할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오류가 관련 개인의 희생으로 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심을 바로잡을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위해 자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어떤 경우에도 국가기관은 가능한 한 개인의 이익과 적절한 사법 집행을 보장할 필요성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Magomedov and Others v. Russia*, 2017, §§ 94-95, 항소 기한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 기한을 연장한 후 국가기관에 유리한 방식으로 항소를 받아들인 사건).

c. 외국 법원 또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의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상호인정 및 집행

231. 재판소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내려진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민간 당사자 간 국제관계에서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밝혔다(*Ateş Mimarlık Mühendislik A.Ş. v. Turkey*, 2012, § 46). 외국 판결을 인정하는 것에 법적 이익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위해 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Selin Aslı Öztürk v. Turkey*, 2009, §§ 39-41, 외국에서 내려진 이혼 판결의 인정에 관한 사건).

232. 외국 판결을 집행하는 결정(집행판결)은 해당 판결이 내려진 절차의 불공정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판결국이나 집행 승인국에서 제6조제1항의 요건과 양립할 수 없다. 재판소는 공정한 심리에 대한 보장을 고려할 때 외국 판결의 인정 및 집행 요청을 심사하는 법원이 우선 외국 판결에 대한 특정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채 집행 요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했다. 해당 검토를 얼마나 엄격히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Pellegrini v. Italy*,

2001, § 40).

233. *Avotiņš v. Latvia* [GC] (2016) 사건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려진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건이다. 유럽연합 내 기본권의 동등한 보호를 가정하는 재판소의 판례법(“보스포루스 가정”)이 유럽연합 회원국 간 상호신뢰 원칙에 기초한 상호인정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이 사건은 라트비아는 다른 국가(키프로스)에서 채무자가 결석한 가운데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고자 했다. 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한 일반 원칙을 설명하고 보스포루스 가정이 반박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했다(특히 §§ 115-17 참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 후, 재판소는 기본권의 보호가 동등한 보호의 가정을 반박할 만큼 명백히 부족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B. 법에 따른 설립

1. 원칙

234. 협약 체계에 내재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언제나 “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11), 더 정확히 말해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원”이어야 한다(§§ 229-230). 이 개념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외부 영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226 및 246). 판례법의 논증에 따르면(§§ 211-217 및 인용된 민간 참고문헌 참조), 이 판결은 판례법 원칙을 개선하고 이 개념의 의미(§§ 223-230),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성과 공평성 등 다른 “제도적 요건”과 이 개념의 관계(§§ 218 이하, §§ 231-234)¹³, 법치주의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명확히 설명했다(§§ 237 이하; *Xero Flor w Polsce sp. z o.o. v. Poland*, 2021, §§ 245-251의 관련 요약 참조 및 입법의도 명확화의 원칙에 관해, § 282 참조).

235. “법원”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요구되는 “법”은 특히 법원 구성원의 독립성에 관한 조항을 비롯한 모든 국내법 조항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해당 조항 위반 시 한 명 이상의 판사가 사건 심사에 참여하는 것을 “법률상 무효”로 만드는 조항도 포함된다(§ 232).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 요건에 대한 심사에서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위법행위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이라는 기본 원칙을 약화하고 문제가 된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했는지 체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34 및 237).

236. 그러므로 재판소는 국내법이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국내법 조항 해석에 대한 일차적 권한을 가진다는 일반 원칙을 존중하여(§ 209), “명백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내 법원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심리 일정 수립 및 심리 당일 부판사로의 법관 교체와 관련하여 *Kontalexis v. Greece*, 2011, §§ 39 이하 참조; *Pasquini v. San Marino*, 2019, §§ 104 및 109). 재판소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 요건 준수 여부에 관한 국내 법원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에 관해서는, *Miracle Europe Kft v. Hungary*, 2016, §§ 65-66을 참조한다. 이후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사건에서, 대재판부는 국내법의 “명백한 위반”의 개념과 “판사 임용에 대한 국내 규칙의 명백한 위반”의 개념을 구별했다(특히, § 242, §§ 244 이하, § 254 참조). 이 사건에서, 국내 법원은 국가 임용권자가 신임 판사 임용 단계에서 이미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208-210, 242, 254), 재판소의 역할은 확인된 국내법 위반에 대한 결과를 제6조제1항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13. “법에 따라 설립된”에 관한 절 참조.

237. “법에 따라 설립된”이라는 문구는 법원의 존립에 대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법원에 적용되는 특정 규칙의 준수 또한 포함한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23; *Sokurenko and Strygun v. Ukraine*, 2006, § 24). 법원이나 재판소의 합법성은 정의상 각 사건의 재판부 구성과 신임 판사 임용을 위한 절차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24-228). 신임 판사 임용 절차에 관한 문제는 대재판부가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사건에서 심사한 바 있다.

238. 피임명자가 재판관 역할을 수행할 때 영향이나 압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행정부나 입법부도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ibid.*, § 207). 국내 임용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든, 판사 임용에 관한 국내법을 최대한 명확히 규정하여 임용 절차에서 행정부를 포함한 외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ibid.*, § 230).

239. 신임 판사 임용 절차에 관한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판결에는 모든 위법행위가 제6조제1항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에 대한 권리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을 채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236 이하 참조). 재판소는 “최소기준 심사”를 고안했으며 해당 법관 임용 절차의 위법행위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와 사건의 특정 상황에서 관련 국가기관이 상충하는 원칙 사이에 공정하고 비례적인 균형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3단계 심사기준”을 정의했다(§§ 235 이하, 심사기준의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 243-252 참조, 심사기준 적용은 §§ 254-290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Xero Flor w Polsce sp. z o.o. v. Poland*, 2021, 특히 §§ 285-289 참조). *Reczkowicz v. Poland*, 2021 (§§ 216-282)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접근법을 적용한 후,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제도 개편 맥락에서 추진된 판사 임명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전체 임용 절차에 악영향을 미치고 적절한 대법원 구성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근본적인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276-280). 재판소는 사법부의 독립성 요건과 권력분립 요건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Dolińska-Ficek and Ozimek v. Poland* (2021) 사건에서도 근본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349).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행정부가 판사 임용 문제에 대해 진행 중인 사법심사의 효력을 약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사법적 결정을 고의로 무시하고 재판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338 및 348-350).

240. 예외적이고 과도기적인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일지라도 협약에서 의미하는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에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Xhoxhaj v. Albania*, 2021, §§ 284-288).

2. 원칙 적용

241. 법원은 적절한 사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이 수행하는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법원은 특정 판사나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문제에 대해 판단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제6조제1항과 양립하려면, 독립성과 공평성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Pasquini v. San Marino*, 2019, §§ 103 및 107). 사건에 배정된 판사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사법기관이 판사를 사건에 배당하는 문제에 대해 전적인 재량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ibid.*, § 110). 판례법은 사건 배당과 사건 재배당을 구분하여 다룬다(*ibid.*, § 107).

242. 법정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용될 때까지 판사의 임기를 무기한으로 암암리에 연장하는 관행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Oleksandr Volkov v. Ukraine*, 2013, § 151). 판사 임용 절차가 내부 관행의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ibid.*, §§ 154-56). 판사의 교체 또한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Pasquini v. San Marino*, 2019, § 112), 사건 재배당 역시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Miracle Europe Kft v. Hungary*, 2016, §§ 59- 67; *Biagioli v. San Marino* (dec.), 2014, §§ 77-78 및 80, 제한적인 관할권 범위와 소규모 법원과 관련된 특수한 사건).

243. 재판소는 예컨대 심리 당일 부판사로 법관을 교체한 조치(*Kontalexis v. Greece*, 2011, §§ 42-44), 법령에 규정된 수보다 적은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사례(*Momčilović v. Serbia*, 2013, § 32 및 *Jeniša Mocanu v. Romania*, 2013, § 41), 관련 국내법에 따라 해당 역할을 수행할 권한이 없는 법원 행정담당자의 법원 절차 수행(*Ezgeta v. Croatia*, 2017, § 44) 또는 고의로 법을 위반하면서 어떠한 설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관할권을 초과한 권한을 행사한 법원(*Sokurenko and Strygun v. Ukraine*, 2006, §§ 27-28) 등의 상황에서 위반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사건은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11 이하, 특히 § 218 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또한, 결정을 파기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하도록 사건을 환송하거나 해당 절차를 무효로 선언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대법원 관할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대신, 권한 있는 기관을 대신하여 본안에 관한 사건을 판단한 대법원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Aviakompaniya A.T.I., ZAT v. Ukraine*, 2017, § 44).

244. 신임 판사 임명 절차에 관한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판결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하지 않는 상황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다(§§ 246-247 이하).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항소법원에 판사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의 기본 규칙을 “심각히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심각한 위반”은 대법원이 수행한 검토에서 효과적으로 시정되지 않았다. 재판소는 대법원이 제시한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286), 따라서 제6조제1항이 위반되었다고 판결했다(§§ 288-289). *Xero Flor w Polsce sp. z o.o. v. Poland*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84-291; 또한 *Dolińska-Ficek and Ozimek v. Poland*, 2021, § 353 및 *Reczkowicz v. Poland*, 2021 참조).

C. 독립성과 공평성

1. 일반 고려사항

245.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도록 요구한다. “독립성” 개념과 “공평성” 개념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두 개념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50 및 152; 또한 두 개념의 밀접한 상호 연관성에 관해서는, §§ 153-156; *Denisov v. Ukraine* [GC], 2018, §§ 61-64 참조). 이 두 개념은 또한 제6조제1항의 의미에 따른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 개념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18 이하, §§ 231 이하¹⁴ 및 § 295). 그러므로, 제6조제1항의 형사 규정과 민사 규정에 따라 제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법원의 독립성 여부를 심사할 때, 법원 구성원의 임명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예를 들어,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44 참조), 이 문제는 “법원”의 설립과 관련된 영역의 문제이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32). 또한, “독립성”은 공평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인적, 제도적 독립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공평성의 전제조건이다(*Dolińska-Ficek and Ozimek v. Poland*, 2021, § 316: 이 판례는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의 개념과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의 개념 사이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예다, § 357).

14. “법에 따라 설립된”에 관한 절 참조.

246. 공평성은 판사가 도덕적 청렴성의 문제로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마음 상태와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능력에 기초한 임용 기준에 따라 판사를 임명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포함하며, 최초 판사 임용 단계와 직무 행사 단계에서 다른 국가권력의 부당한 영향이나 무제한의 재량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하는 일련의 제도적, 운영적 장치를 의미한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34).

247. 재판소의 판례법에서 정부의 정치적 기관과 사법부 간 권력분립 개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Svilengacánin and Others v. Serbia*, 2021, §§ 64 및 72). 이에 따라, 재판소는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c. Portugal* [GC] (2018) 판결에서 권력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할 필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196; 또한 *Dolińska-Ficek and Ozimek v. Poland*, 2021, §§ 349-353 참조).

248. 참심원의 사건 참여 등은 제6조제1항에 반하지 않는다. 판사, 공무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재판부의 혼합적 구성 자체가 편향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Le Compte, Van Leuven and De Meyere v. Belgium*, 1981, §§ 57-58), 법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위원 또한 그 자체로 제6조제1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Pabla Ky v. Finland*, 2004, § 32).

249. 판례법에서 확립된 공평성에 관한 원칙은 직업법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참심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Cooper v. the United Kingdom* [GC], 2003, § 123; *Langborger v. Sweden*, 1989, §§ 34-35). 재판소는 상사중재나 스포츠 중재 방안이 자유롭고 합법적이며 명백하게 수락된 경우, 분쟁 당사자들이 의사결정기구 또는 적어도 그 일부를 임명하는 것이 중재제도의 본질이라고 판단하며 독립성과 공평성의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Mutu and Pechstein v. Switzerland*, 2018, § 146; 배타적이고 강제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중재위원회에 관한 사건인, *Ali Rıza and Others v. Turkey*, 2020, §§ 207-222 비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의 공평성은 여전히 중요하며, 여기에는 외관상의 공평성이 담당하는 역할도 포함된다(*Beg S.p.a. v. Italy*, 2021, §§ 144-153). 공평한 중재인에 대한 보장이 명백히 포기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138-143을 참조한다.

250.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완전한 관할권”을 가진 사법기관의 사후 통제를 받았고 문제의 흠결을 시정하여 관련 절차적 보장을 이행한 경우, 결정을 내린 법원의 독립성이나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유로 또는 해당 법원이 필수적인 절차적 보장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제6조제1항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Denisov v. Ukraine* [GC], 2018, §§ 65, 67 and 72, 징계 상황과 관련된 사건; *De Haan v. the Netherlands*, 1997, §§ 52-55; *Helle v. Finland*, 1997, § 46; *Crompton v. the United Kingdom*, 2009, § 79).¹⁵

251. 재판소는 협약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보장해야 할 국가 의무의 범위가 사법부에 국한되지 않음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이 의무는 또한 행정부, 입법부와 기타 모든 수준의 국가기관이 법원의 판단과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하고 따라야 할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법원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더 넓게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헌법에 의해 마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위 보호조치들은 일상적인 행정 실무자의 태도와 관행에 효과적으로 체화되어야 한다(*Agrokompleks v. Ukraine*, 2011, § 136; 또한 *Dolińska-Ficek and Ozimek v. Poland*, 2021, §§ 328-330 참조).

252. 공무원과 정치인의 발언은 전술한 제6조의 보장에 반할 수도 있고(*Sovtransavto Holding v. Ukraine*, 2000, § 80; *Kinský v. the Czech Republic*, 2012, § 94)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Čivinskaitė v. Lithuania*, 2020, § 144 및 판례에 대한 요약은, §§ 119- 120 참조).

15. 또한 “완전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한 검토” 및 “공정성”에 관한 절 참조.

2. 독립적 법원

253. “독립성”이란 용어는 *다른 권력*(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독립(*Beaumartin v. France*, 1994, § 38) 및 *당사자*에 대한 독립(*Sramek v. Austria*, 1984, § 42)을 의미한다. 이 요건의 준수 여부는 특히 법원 구성원의 임명 방법 및 임기 또는 외압 위협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와 같은 법정 기준에 기초하여 평가한다(예를 들어,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53-156참조). 해당 기관이 외관상 독립적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도 관련이 있다(*ibid.*, § 144; *Oleksandr Volkov v. Ukraine*, 2013, § 103; *Grace Gatt v. Malta*, 2019, § 85). 존재하는 결함이 절차의 후속 단계에서 시정되었을 수도 있고 시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Denisov v. Ukraine* [GC], 2018, §§ 65, 67 및 72).

254. 정부의 정치적 기관과 사법부 간 권력분립 개념이 재판소의 판례법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협약 제6조나 다른 조항은 국가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한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헌법이론적 개념의 준수도 요구하지 않는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당 사건에서 협약 요건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이다(*Kley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2003, § 193;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GC], 2018, § 144). 실제로, 법원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사법부를 다른 권력과 분리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점을 포함한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15). 또한, 제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법원의 독립성 여부를 심사할 때, 법원 구성원의 임명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232, “독립성” 요건, “공평성” 요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 요건 사이의 상호 연관성이 강조됨).¹⁶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할 필요성에 관하여, 재판소는 제6조제1항의 적용가능성 및 법원 접근성 측면과 관련된 사항(*Bilgen v. Turkey*, 2021, § 58 요약 부분 참조) 및 징계 절차에서의 심리와 관련된 사항(*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96) 등 사법부 구성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로부터 사법부 구성원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255. *Mustafa Tunç and Fecire Tunç v. Turkey* [GC] (2015) 판결은 독립성 기준이 협약 제6조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제2조 및/또는 제3조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독립성 기준에 대한 심사를 구별하고 독립성 기준의 미묘한 차이를 정의했다(§§ 217-21). 제6조의 의미에 따른 독립성 요건 검증을 위한 법정 기준을 제2조의 절차적 의무의 관점에서 조사의 독립성 문제를 검토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219-25).

256. *군사법원*(예를 들어, *Mikhno v. Ukraine*, 2016, §§ 162-64 및 166-70 참조). 인용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제인권법의 경향에 주목하여 국가가 군사법원을 운영할 때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비사법적 처형, 강제실종 및 고문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혐의에 대한 결정을 군사법원의 관할권에서 제외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 재판소의 관점에 따르면, 중대하고 의도적인 인권침해와 관련된 이러한 접근법이 관련 군 장교의 과실로 인하여 매우 심각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ibid.*, § 165).

16. ““법원”의 개념”에 관한 절 참조

a.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

257. 행정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다(*Sovtransavto Holding v. Ukraine*, 2002, § 80; *Mosteanu and Others v. Romania*, 2002, § 42).

258. 판사가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해임된다는 사실 자체가 제6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Clarke v. the United Kingdom* (dec.), 2005). 피임명자가 재판관 역할을 수행할 때 영향이나 압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행정부 또한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특히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07 이하 및 *Flux v. Moldova (no. 2)*, 2007, § 27).

259. 일단 임명된 후에는 어떠한 압력이나 지시도 받지 않으며 완전히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한, 파기원장이 행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실 자체는 파기원장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Zolotas v. Greece*, 2005, § 24).

260. 마찬가지로, 일단 임명되고 나면 어떠한 외압도 받지 않고 어떠한 지시도 따르지 않으며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법 활동을 수행하는 한, 행정법 심의회 판사가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임명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판사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Majorana v. Italy* (dec.), 2005).

261. 판사의 승진전보에 제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대통령)이 청구인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정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이를 준용한 사례에 관해, *Thiam v. France*, 2018, § 85 참조, 위반 없음).

b. 의회에 대한 독립성

262. 일단 임명된 후에는 판사가 법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압력이나 지시도 받지 않는 한, 법관이 의회에 의해 임명된다는 사실만으로 판사가 의회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Sacilor Lormines v. France*, 2006, § 67). 또한, 주로 직업법관으로 구성된 항소법원의 전문위원 중 한 명이 의회 의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었다(*Pabla Ky v. Finland*, 2004, §§ 31-35).

c. 당사자에 대한 독립성

263. 법원의 구성원이 직무 및 근무 형태 측면에서 당사자 일방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해당인의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사회의 법원이 국민에게 주어야 하는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Sramek v. Austria*, 1984, § 42).

d. 최고사법위원회에 대한 판사의 독립성에 관한 구체적 사례¹⁷

264. 최고사법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판사들이 경력과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최고사법위원회의 권한에 종속된다는 점은 *Denisov v. Ukraine* [GC] (2018, § 79) 및 *Oleksandr Volkov v. Ukraine* (2013, § 130) 사건(위반 판결)과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57-165) 사건(위반 없음)에서 쟁점이 되었다. 재판소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 또는 “사법부에 대한 징계기관 내에 외관상의 편향”이 있었는지(*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57-160), 독립성 요건이 준수되었는지(*ibid.*, §§ 161-163)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사법부에 대한 징계 제도를 평가하고 비교했다.

17. “공정한 법원”에 관한 절 참조.

e. 독립성 심사기준

265. 재판소는 어떤 기관이 “독립적” 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특히 다음 기준을 고려했다(*Kley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2003, § 190; *Langborger v. Sweden*, 1989, § 32).

- i. 구성원의 임명 방법
- ii. 임기
- iii. 외압 방지를 위한 보장
- iv. 해당 기관의 외관상의 독립성

i. 기관 구성원의 임명 방법

266. 법무부 장관이 의사결정기관 위원의 임명 및 해임에 개입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Sramek v. Austria*, 1984, § 38; *Brudnicka and Others v. Poland*, 2005, § 41; *Clarke v. the United Kingdom* (dec.), 2005).

267. 특정 판사나 법원에 사건을 배당하는 조치의 경우 국내 기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판단 재량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제6조제1항, 특히 독립성과 공정성 요건과 양립한다는 점에 대해 재판소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Bochan v. Ukraine*, 2007, § 71).

ii. 기관 구성원의 임기

268. 재판소가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구체적인 임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임기 중 판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로 간주해야 한다(특히, 판사 해임 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39-240 참조). 그러나 판사 해임 금지 원칙이 실제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 밖의 필수적인 사항이 보장되는 경우, 법령에서 이러한 해임 불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법관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Sacilor Lormines v. France*, 2006, § 67; *Luka v. Romania*, 2009, § 44).

iii. 외압에 대한 보장

269.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려면 개별 판사가 사법부 내외에서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사법부의 내적 독립은 법원장이나 부장판사와 같이 동료 판사나 법원행정을 책임지는 이들의 지시나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사법부 내에서 특히 사법부의 고위 법관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충분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재판소는 청구인의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객관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Parlov-Tkalčić v. Croatia*, 2009, § 86; *Agrokompleks v. Ukraine*, 2011, § 137).

270. 지방법원장이 사법기능과 철저히 구분된 행정(관리 및 조직) 기능만을 수행했으므로 그 소속판사는 해당 법원장에 대한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판결되었다. 관련 법체계에는 법원장이 판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는 직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규정되어 있었다(*ibid.*, §§ 88-95).

iv. 외관상의 독립성

271. 제6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어떤 법원이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상의 독립성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Sramek v. Austria*, 1984, § 42). 외관상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입장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당사자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Sacilor Lormines v. France*, 2006, § 63; *Grace Gatt v. Malta*, 2019, § 85). 그러므로 재판소가 당해 사건의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독립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Clarke v. the United Kingdom* (dec.), 2005).

3. 공평한 법원¹⁸

272. 협약 제6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법원은 이 조항에 규정된 공평성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Denisov v. Ukraine* [GC], 2018, §§ 60-65, *Morice v. France* [GC], 2015 판례를 참고함 - 파기 절차에 관해 §§ 87-88 참조). 공평성은 통상적으로 예단이나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공평성 요건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여러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Micallef v. Malta* [GC], 2009, § 93; *Wettstein v. Switzerland*, 2000, § 43; *Nicholas v. Cyprus*, 2018, § 49). 독립성 개념과 공평성 개념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두 개념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50 및 152 - 또한 두 개념의 밀접한 상호 연관성에 관해서는, §§ 153- 156; *Sacilor Lormines v. France*, 2006, § 62 참조). 이 두 개념은 또한 제6조제1항의 의미에 따른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 개념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31 이하)¹⁹. 존재하는 결함이 절차의 후속 단계에서 시정되었을 수도 있고 시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Denisov v. Ukraine* [GC], 2018, §§ 65, 67 and 72; *Helle v. Finland*, 1997, § 46).

273.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음을 근거로 국내 절차에서 공평성 문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 경우, 국내 법원은 이러한 우려가 정당한지 검토하여 제6조제1항에 반할 수 있는 상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Cosmos Maritime Trading and Shipping Agency v. Ukraine*, 2019, §§ 78-82).

274.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법원에 대량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나중에 이들 사건이 대법원에 도달하게 되면 청구인의 상대 당사자로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관련 정부부처 대표자와 제도적 요건에 따른 논의를 수행하게 될지라도, 대법원은 분쟁의 절차적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Svilengacánin and Others v. Serbia*, 2021, §§ 67-68). 단, 대법원이 관련 정부부처 대표자와 논의할 당시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이 없어야 한다(§§ 71-72).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의 비슷한 미결사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선정하여 먼저 해결하는 것은 공평한 사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72). 대법원은 관련 절차를 다루는 하급법원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73). “외관상의” 공평성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소송당사자가 이 점을 단순히 우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74).

a. 공평성 심사기준

275. 공평성 유무는 다음 사항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한다(*Micallef v. Malta* [GC], 2009, §§ 93-101; *Morice v. France* [GC], 2015, §§ 73-78; 및 *Denisov v. Ukraine* [GC], 2018, §§ 61-65):

- i. **주관적 심사:** 특정 판사의 개인적 신념이나 행위, 즉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개인적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한다

18. “최고사법위원회에 대한 법관의 독립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 절 참조.

19. ““법원”의 개념”에 관한 절 참조

- ii. **객관적 심사:** 즉, 법원 자체와 그 구성 등이 공평성에 대한 모든 정당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지 판단한다.

276. 그러나 판사의 행위는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공평성에 대한 객관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객관적 심사) 개인적 신념의 문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주관적 심사) 주관적 공평성과 객관적 공평성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45).

277. 따라서, 일부 사건에서는 판사의 주관적 공평성에 대한 추정을 반박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객관적 공평성 요건이 중요한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Micallef v. Malta* [GC], 2009, §§ 95 및 101). 공평성 문제가 제기된 거의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가 객관적 심사에 초점을 맞춘 점에 유의해야 한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46).

278. 재판소는 겉으로 드러난 공평성 또한 어느 정도 중요할 것이며, 달리 말해 “정의는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점은 민주사회의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평하지 않다고 우려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Micallef v. Malta* [GC], 2009, § 98; *Stoimenovikj and Miloshevikj v. North Macedonia*, 2021, § 40). 법관 기피 신청이 제출된 법원은 기피 사유로 제기된 주장을 검토해야 하고(*Harabin v. Slovakia*, 2012, § 136),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하지만,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한 당사자 또한 이러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Mikhail Mironov v. Russia*, 2020, §§ 34-40).

279. 법원의 공평성에 관한 재판소의 판례법에서 확립된 원칙은 직업법관과 참심원에 적용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배심원뿐만 아니라 참심제 시민 판사, 법원 서기, 법률비서와 같이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공무원에도 적용된다(*Bellizzi v. Malta*, 2011, § 51). 재판소는 국가 최고 심급의 사법부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장 자격으로 받는 법관 징계 절차에서 제6조에 따른 보장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Harabin v. Slovakia*, 2012, § 133).

i. 주관적 접근법

280. 주관적 심사기준을 적용할 때, 재판소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판사가 개인적으로 공평할 것이라고 추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했다(*Micallef v. Malta* [GC], 2009, § 94; *Le Compte, Van Leuven and De Meyere v. Belgium*, 1981, § 58 요약 부분 참조). 예를 들어, 판사의 공평성에 대해 요구되는 증거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판사가 적대심을 보였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Buscemi v. Italy*, 1999, §§ 67-68). 판사가 앞서 다른 관련 민사절차에 참여한 이후 항소가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공평성에 대한 추정을 반증하는 데 요구되는 증거에 해당하지 않았다(*Golubović v. Croatia*, 2012, § 52). 재판소는 또한 민사 당사자에게 단순히 예의를 갖추고 공감을 표한 것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반대로 사법제도의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Karrar v. Belgium*, 2021, § 35).

281. 법원이 개인적 예단이나 편견이 없다고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재판소의 판례법에서 이미 오래전에 확립된 원칙이다(*Le Compte, Van Leuven and De Meyere v. Belgium*, 1981, § 58; *Driza v. Albania*, 2007, § 75).

282.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판사의 개인적 반감은 강력한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로, 재판소가 객관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심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Rustavi 2 Broadcasting Company Ltd and Others v. Georgia*, 2019, § 359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ii. 객관적 접근법

283. 판사의 행위와는 완전히 별개로 개별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원칙을 재판부에 적용하면, 해당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의 개인적인 행위와는 완전히 별개로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특정 판사(*Morel v. France*, 2000, §§ 45-50; *Pescador Valero v. Spain*, 2003, § 23) 또는 재판부(*Luka v. Romania*, 2009, § 40)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우려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당사자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결정적인 요인은 이러한 우려가 객관적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Micallef v. Malta* [GC], 2009, § 96; *Wettstein v. Switzerland*, 2000, § 44; *Pabla Ky v. Finland*, 2004, § 30).

284. 이와 관련하여 겉으로 드러난 공정성 또한 어느 정도 중요할 것이다. 달리 말해, “정의는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중요한 점은 민주사회의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하지 않다고 우려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Micallef v. Malta* [GC], 2009, § 98; 예를 들어, 판사가 사건 결과와 관련된 공개 진술을 한 경우: *Rustavi 2 Broadcasting Company Ltd and Others v. Georgia*, 2019, §§ 341-342).

285.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필수적인 신뢰를 얻으려면 내부 조직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법 절차, 즉 법관 배제에 관한 규칙이 시행 중인지 여부도 관련 요소로 고려된다(법관 배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에 관해, *Micallef v. Malta* [GC], 2009, §§ 99-100 참조;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관해, *Stoimenovikj and Miloshevikj v. North Macedonia*, 2021, § 40 참조; 소송당사자가 편견에 기초한 판사 기피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포함해 판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의 제6조에 따른 요건에 관해, *Mikhail Mironov v. Russia*, 2020, §§ 34-40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또한 일반적인 기피신청에 관해, *Debled v. Belgium*, 1994, § 37 참조). 이러한 규칙은 입법부가 관련 판사나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모든 합리적 의심을 불식하고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실제로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외관상 편파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며, 따라서 민주사회의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Mežnarić v. Croatia*, 2005, § 27 및 *A.K. v. Liechtenstein*, 2015, §§ 82-83, 제한적인 관할권을 가진 대법원 법관의 기피와 관련된 사건). 관할 행정기관의 위계구조 또한 외관상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Grace Gatt v. Malta*, 2019, §§ 85-86).

286. 판사의 경력과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규율하는 국가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판사의 독립성과 객관적 공정성과 관련하여 재판소에 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51-65 및 특히 § 163을 *Denisov v. Ukraine* [GC], 2018, §§ 68- 80과 *Oleksandr Volkov v. Ukraine*, 2013, §§ 109-117 및 124-29와 비교).

287. 재판소는 최고사법위원회(판사 징계기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판사들이 경력과 징계 절차 사안에 대해 최고사법위원회의 권한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고사법위원회가 내린 결정과 관련하여 판사들의 독립성 문제가 쟁점이 된 구체적인 사건을 심사했다(*Oleksandr Volkov v. Ukraine*, 2013, § 130 및 *Denisov v. Ukraine* [GC] (위반) 사건을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57-165 (위반 없음) 사건과 비교). 재판소는 관련된 두 국가제도를 구별했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58-160 및 *Denisov v. Ukraine* [GC], 2018, § 79).

288. 판사는 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사 경력의 어느 시점에 피고를 포함한 당사자 중 한 명과 유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위험이 판사의 개인 상황과 관련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에 대해 아직 일련의 징계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평성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결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63)²⁰.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징계기구의 구조와 기능 자체가 심각한 쟁점이 되는 경우, 독립성과 공평성의 기본적인 보장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Denisov v. Ukraine* [GC], 2018, § 79 (위반)).

b. 사법적 공평성 결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

289. 다음 두 상황에서 사법적 공평성 결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i. 첫 번째 상황은 *기능적 성격*을 띠며, 예를 들어 사법절차 내에서 동일인이 각기 다른 기능을 맡는 상황이나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과 위계 관계나 기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 있다(*Micallef v. Malta* [GC], 2009, §§ 97- 98). 후자의 경우, 해당 관계의 성격과 정도를 검토해야 한다.
- ii. 두 번째 상황은 *개인적 성격*을 띠며, 해당 사건에서의 판사의 행위나 사건의 당사자나 사건 대리인과의 기존 관계에서 파생된다.

i. 기능적 성격의 상황

a. 같은 사건에서 자문 기능과 사법 기능의 동시 행사

290. 한 기관 내에서 자문 기능과 사법 기능을 연이어 행사할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객관적 관점에서 바라본 해당 기관의 공평성과 관련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Procola v. Luxembourg*, 1995, § 45 – 위반).

291.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일사건”, “동일결정” 또는 “유사한 쟁점”에 관해 자문 기능과 사법 기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Kley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2003, § 200; *Sacilor Lormines v. France*, 2006, § 74 – 위반 없음).

β. 같은 사건에서 사법 기능과 비사법 기능의 동시 행사

292. 청구인의 우려에 대한 객관적 정당성을 판단할 때, 절차에서의 판사의 이중적 역할, 판사가 참여한 두 사건 사이에 경과한 시간, 절차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McGonnell v. the United Kingdom*, 2000, §§ 52-57).

293.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에 직접 개입한 사람이 이후 해당 법령이나 문제의 규칙 문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을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이러한 상황은 사법적 공평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할 것이다(*ibid.*, §§ 55-58, 재판소가 소송절차의 쟁점인 개발계획 채택에 판사가 직접 관여했던 사실을 이유로 제6조제1 위반 판결을 내린 사건; compare with *Pabla Ky v. Finland*, 2004, § 34 – (위반 없음) 사건과 비교).

294.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일인이 한 절차에서는 판사로 재판을 주재하고 다른 절차에서는 상대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을 맡는 이중적 역할을 하는 경우, 청구인은 해당 판사가 자신을 계속해서 상대 당사자로 볼 것으로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Wettstein v. Switzerland*, 2000, §§ 44-47).

295. 절차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청구인의 상대 당사자를 대리한 변호사가 이후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을 맡아 심리를 진행한 사건에서 제6조제1항 위반 판결이 내려졌다(*Mežnarić v. Croatia*, § 36). 제1심 민사절차에서 청구인의 상대 당사자 측 법률 전문가 역할을 맡았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평성에 관해서는, *Švarc and Kavnik v. Slovenia*, 2007, § 44를 참조한다.

20. “독립적인 법원”에 관한 절 참조

χ. 각기 다른 사법 기능의 행사

296. 동일한 판사가 민사사건의 다른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공평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별로 심사해야 한다(*Pasquini v. San Marino*, 2019, § 148). 이 사항은 동일한 판사가 사실관계 측면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ibid.*, § 149)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몇 년 기간을 두고 진행된 절차(*Stoimenovikj and Miloshevikj v. North Macedonia*, 2021, §§ 36-38 및 40)와 같은 별도의 두 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97. 판사가 이미 공판 전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판사가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재판 전 판사가 취한 조치의 범위와 성격이다. 마찬가지로, 판사가 사건 기록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판사가 본안에 대해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간주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예비 분석이 반드시 예단에 기초하여 최종 분석을 수행했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점은 해당 분석이 판결이 내려진 시점의 심리에서 제시된 증거와 변론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는 점이다(*Morel v. France*, 2000, § 45).

298. 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결정된 실질적 쟁점 간의 연관성이 이러한 절차 단계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판사의 공평성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밀접한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Toziczka v. Poland*, 2012, § 36).

299. 여러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 재판소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중 일부가 이전에 특정 입장을 채택한 사실만으로는 재판부 전체가 공평하지 않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입장을 채택에 관여한 판사의 수, 문제의 재판부의 역할과 같은 여러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Fazlı Aslaner v. Turkey*, 2014, §§ 36-43). 심의의 비밀성을 고려할 때, 관련 판사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Stoimenovikj and Miloshevikj v. North Macedonia*, 2021, §§ 39-41 및 § 39에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따라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중 오직 한 판사의 경우에만 객관적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심의의 비밀성 때문에 문제가 된 판사가 재판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을 규명할 수 없는 한, 제6조제1항의 목적상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이를 준용한 사례에 관해, *Karrar v. Belgium*, 2021, §§ 36 및 39 참조).

300.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된 절차를 수행하는 두 기관이 전원 동일한 판사로 구성되고, 공소사실을 제기하는 기능과 쟁점을 판단하는 기능 간 약간의 혼동이 있었던 경우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Kamenos v. Cyprus*, 2017, §§ 105-109). 검사의 기능과 판사의 기능 간 혼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인의 공평성에 대한 객관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104).

301.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들 수 있다.

-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을 파기한 상급법원이 해당 사건을 다른 관할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다른 지부로 환송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평성 의무에서도 출되는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없다(*Ringeisen v. Austria*, 1971, § 97 요약 부분 참조).
- 판사가 동일한 사실관계와 관련된 두 절차에 참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Indra v. Slovakia*, 2005, §§ 51-53).
- 참심원 2인이 참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은 판사는 자신이 다른 제1심 재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해서는 안 된다(*De Haan v. the Netherlands*, 1997, § 51).

- 사실심 판사가 이전에 내린 판결에서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적용했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받은 항소법원은 공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San Leonard Band Club v. Malta*, 2004, § 64). 헌법재판소에 관한 유사한 논증에 관해, *Scerri v. Malta* (2020, § 78) 사건을 참조한다.
- 동일한 판사가 먼저 사건 본안에 대한 판결에 참여하고, 이후 해당 결정에 대한 상소의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그 자체로 공평성 요건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Warsicka v. Poland*, 2007, §§ 38-47).
- 첫 번째 절차에서 청구인 회사의 상대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맡았고 두 번째 절차에서는 항소법원 판사를 맡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 판사: 특히 두 절차 사이의 기간, 첫 번째 절차의 주요 쟁점과 두 번째 절차의 주요 쟁점이 다른 점, 변호사 역할을 수행한 시점과 판사 역할을 수행한 시점이 같지 않았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판사의 공평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Puolitaival and Pirttiaho v. Finland*, 2004, §§ 46-54).
- 재판소는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일부 판사에게 종전의 결정에서 오류를 범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다른 3명의 판사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힌 사건에서 공평성 원칙이 위배되었다고 판결했다(*Driza v. Albania*, 2007, §§ 78-83).
- 법률문제에 대한 항소심에 참여한 판사 중 한 명이 이전에 고등법원 판사로서 해당 사건의 판결에 참여했다(*Peruš v. Slovenia*, 2012, §§ 38-39).
-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사건에서,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검토를 받고 있는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을 겸직했다(§§ 153-156).
- *Bellizzi v. Malta* (2011, §§ 60-61) 사건에서, 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의 사법보좌관이 이전 민사절차에서 청구인의 상대 당사자를 대리한 변호사 팀의 일원이었던 상황을 검토했다.
- 재판소는 이미 대부분의 판사가 이전의 사건에 참여한 점과 이들 판사가 이전의 사건에서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았거나 주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고려할 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결했다(*Fazli Aslaner v. Turkey*, 2014, § 39). 또한, 판사 7명 중 4명이 이미 해당 사건에 참여했던 사실은 이들 4명의 판사가 수행했던 기능의 성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평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ereira da Silva v. Portugal*, 2016, §§ 59-60).
- *Fazli Aslaner v. Turkey* (2014) 사건은 31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의 공평성 문제를 다룬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31명의 판사 중 3명의 판사가 이전 단계에서 절차에 참여했었다. 공평성을 이유로 법관기피 신청이 제기된 판사의 수가 재판부 전체 인원에 비해 적었지만, 재판소는 객관적 공평성에 대한 문제를 판단할 때 공평성 문제가 제기된 판사의 수나 비율은 결정적이지 않다고 판결하며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문제의 판사 3명을 재판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둘째, 문제의 판사 3명 중 1명이 3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아 사건 심의를 이끌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판사의 공평성을 의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40-43; 판결문 § 38에 인용된 다른 사건 비교 및 판사 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중 판사 한 명에 대해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Stoimenovikj and Miloshevikj v. North Macedonia*, 2021, §§ 39-41 비교).
- *Rustavi 2 Broadcasting Company Ltd and Others v. Georgia* (2019) 사건에서, 9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한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고, 청구인은 재판장의 공평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363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 *Svilengaćanin and Others v. Serbia* (2021) 사건에서, 향후 육군 병사의 급여 관련 소송의 피고가 된 국방부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의 절차적 사안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법원의 객관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5-75).

ii. 개인적 성격의 상황

302. 판사가 담당 사건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 또한 공정성 원칙에 위배된다(*Langborger v. Sweden*, 1989, § 35; *Gautrin and Others v. France*, 1998, § 59). 판사의 아내가 소셜미디어에서 발언한 내용이 남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지에 관해서는, *Rustavi 2 Broadcasting Company Ltd and Others v. Georgia*, 2019, §§ 342 이하를 참조하고, 보다 일반적으로, 판사의 가족이 의견을 밝히는 문제에 관해서는, § 344를 참조한다. 헌법재판소가 심판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3명 중 한 재판관의 남편과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Croatian Golf Federation v. Croatia*, 2020, §§ 129-132를 참조한다.

303. 판사가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의 변호사가 직업적,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Micallef v. Malta* [GC], 2009, § 102; *Wettstein v. Switzerland*, 2000, § 47; *Pescador Valero v. Spain*, 2003, § 27; *Tocono and Profesorii Prometeiști v. Moldova*, 2007, § 31). 간접적인 요인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Pétur Thór Sigurðsson v. Iceland*, 2003, § 45). 판사가 해당 절차를 심사하는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당사자에 대해 행한 행위는 국내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성이 결여되었을 수 있다고 우려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판사의 객관적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이를 준용한 사례에 관해, *Karrar v. Belgium*, 2021, §§ 36 및 39 참조).

304. 판사가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구성원과 혈연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Ramljak v. Croatia*, 2017, §§ 29 및 작은 지방에서의 상황과 관련된 사건인, *Koulias v. Cyprus*, 2020, §§ 62-64). 판사의 친척이 해당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 판사의 친척이 문제의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직책, 법률사무소의 규모, 법률사무소의 내부 조직구조, 해당 사건을 수임하여 얻는 금전적 이익, 잠재적인 금전적 이익이나 혜택(및 그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Nicholas v. Cyprus*, 2018, § 62; 또한 *Ramljak v. Croatia*, 2017, §§ 38-39 참조).

305. 판사와 친분이 있거나 심지어 판사와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Steck-Risch and Others v. Liechtenstein*, 2005, § 48). 매우 작은 국가에서, 법조인이 시간제 근무 방식으로 판사 직무도 수행하고 변호사 업무도 수행하며 두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 또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ibid.*, § 39; *Bellizzi v. Malta*, 2011, § 57; 또한 판사와 변호사가 가족인 상황을 다룬 *Micallef v. Malta* [GC], 2009, § 102 비교).

306.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법원의 편향을 이유로 제기되는 법관기피 신청이 국가 법체계의 마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키프로스나 리히텐슈타인과 같이 관할권 범위가 작은 국가에서는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법행정이 지나치게 저해될 수 있다(*A.K. v. Liechtenstein*, 2015, § 82, *Nicholas v. Cyprus*, 2018, § 63). 외관상 공정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경우, 이러한 상황은 절차 초기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처럼, 판사를 재판에서 실제로 배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는 여러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문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Nicholas v. Cyprus*, 2018, §§ 64-66).

307. 그뿐만 아니라, 판사의 발언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며, 판사의 발언을 근거로 해당 판사가 직무상 요구되는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Vardanyan and Nanushyan v. Armenia*, 2016, § 82). 하지만, 성적 만족을 위해 저지른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청구인의 위협성에 대해 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 재판소는 이러한 발언이

판사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일 수는 있으나 판사가 청구인에게 개인적 편견을 가졌거나 편향되어 있거나 문제의 절차에서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Illseher v. Germany* [GC], 2018, § 289).

IV. 절차적 요건

A. 공정성

협약 제6조제1항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을 위하여 결정을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일반 원칙

308. 중요한 위치: 재판소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Stanev v. Bulgaria* [GC], 2012, § 231; *Airey v. Ireland*, 1979, § 24). 이 보장은 “협약의 의미에 따른 모든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Pretto and Others v. Italy*, 1983, § 21). 따라서 제6조제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Moreira de Azevedo v. Portugal*, 1990, § 66). 공정성 요건은 절차 전체에 적용되며, 당사자 간 심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Stran Greek Refineries and Stratis Andreadis v. Greece*, 1994, § 49). 그러므로 절차가 공정한 심리에 대한 요건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체 절차를 검토한다(*De Tommaso v. Italy* [GC], 2017, § 172; *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161, 형사절차에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 사건; *Beuze v. Belgium* [GC], 2018, § 120 참조). 서로 다른 중요성을 가진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Carmel Saliba v. Malta*, 2016, § 79, 이유 제시 요건에 관한 사건).

309. 그렇지만, 재판소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절차적 권리(특정 정보를 열람할 권리 포함)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Adorisio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dec.), 2015).

310. 내용: 민사소송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Fayed v. the United Kingdom*, 1994, § 65)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Sabeh El Leil v. France* [GC], 2011, § 46). 즉, 국가는 협약기관의 제한 또는 심사를 받지 않은 채 법원의 관할권에서 모든 범위의 민사 청구를 제외하거나 특정 범주의 계층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긴급입법명령이 그 시행을 위한 조치에 대한 사법 감독 가능성을 배제하는 명확하거나 명시적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모든 경우, 국가 법원이 모든 자의적인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심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Pişkin v. Turkey*, 2020, § 153). 제6조제1항은 민사절차의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절차적 보장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절차적 보장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이익과 적절한 사법 집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Nideröst-Huber v. Switzerland*, 1997, § 30).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요구되는 유효성 수준을 준수하여 자신의 사건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H. v. Belgium*, 1987, § 53). 이는 절차의 특정 시점에서 입증책임이 소송당사자에게 전환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Xhoxhaj v. Albania*, 2021, § 352).

311. 국가기관의 역할: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개별 사건에서 협약에서 의미하는 “공정한 심리” 요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Dombo Beheer B.V. v. the Netherlands*, 1993, § 33 요약 부분 참조).

312. 소송당사자의 주장: 스트라스부르 재판소 판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²¹,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에서 법원에 의하여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더해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6조제1항에 명시된 보장이 적용된다. 요컨대, 제6조 전체가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구성한다(*Golden v. the United Kingdom*, 1975, § 36). 하지만, 협약 제6조의 문언과 취지 모두 당사자가 특정 조건에 따라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Dilipak and Karakaya v. Turkey*, 2014, § 79; *Schmidt v Latvia*, § 96).

313. 해석 원칙:

-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평가된다. 재판의 거부를 금지하는 국제법 원칙 또한 마찬가지이다. 제6조제1항은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ibid.*, § 35).
-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37 이하에서 재차 강조하는 바와 같이, 제6조제1항의 보장에 따른 법원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는 법치주의가 계약국의 공동유산의 일부임을(*Nejdet Şahin and Perihan Şahin v. Turkey* [GC], 2011, § 57; *Brumărescu v. Romania*, 1999, § 61) 선언하는 협약 서문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Sabeh El Leil v. France* [GC], 2011, § 46). 재판소는 특정 상황에서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평가하는 문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재판소보다 더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판결했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43). 하지만, 재판소는 또한 법치주의 원칙이 상호 연관되고 종종 상호 보완적이기는 하나 일부 상황에서는 상충할 수도 있는 다른 여러 중요한 원칙을 동등하게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237-240).
- 비상사태 상황에서도 법치주의 기본 원칙이 우선시되어야 한다(*Pişkin v. Turkey*, 2020, § 153). 또한, 국가기관에 책임이 있고 법원에서 정당하게 확립된 오류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법치주의에 따라 규율되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201).
- 법적 확실성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기본 요소이다(*Nejdet Şahin and Perihan Şahin v. Turkey* [GC], 2011, § 56; *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116;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38; 또한, 시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는, *Oleksandr Volkov v. Ukraine*, 2013, §§ 137-139 및 *Xhoxhaj v. Albania*, 2021, §§ 348-349 참조; 또한 *Camelia Bogdan v. Romania*, 2020, §§ 47-48 비교, 또는 시효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Sanofi Pasteur v. France*, 2020, § 52 비교).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기판력 원칙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38). 자의적인 조치는 법치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에 해당한다(*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2016, § 145). 이 원칙은 다른 여러 방식으로 위배될 수 있다(*Dolińska-Ficek and Ozimek v. Poland*, 2021, §§ 328-330).
- 협약의 의미에 따른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사법 집행에 대한 권리는 제6조제1항의 제한적 해석이 이 조항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83, 법원의 역할에 관한 사건; *Ryakib Biryukov v. Russia*, 2008, § 37).

21. “범위” 절 참조.

- *Zubac v. Croatia* [GC] (2018) 사건에서는 이들 원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협약의 기본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을 다룬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사건에서도 이들 원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37 이하, § 243).
- 또한, 협약은 이론적이거나 허구적인 권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Perez v. France* [GC], 2004, § 80; *Airey v. Ireland*, 1979, § 24).

314. 국가는 민사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함: 재판소는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에 관한 사건에서 “공정한 심리”의 개념에 내재하는 요건이 형사 소추의 결정에 관한 사건에서 요구되는 것과 반드시 똑같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체약국은 형사 사건을 다룰 때보다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민사 사건을 다룰 때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진다”(*Peleki v. Greece*, 2020, § 70; *Dombo Beheer B.V. v. the Netherlands*, 1993, § 32; *Levages Prestations Services v. France*, 1996, § 46). 민사상의 권리에 관한 사건에 대한 제6조제1항의 요건은 형사 소추에 관한 사건의 요건보다 덜 엄격하다(*König v. Germany*, 1978, § 96). *Moreira Ferreira v. Portugal (no. 2)* [GC] (2017, §§ 66-67) 판결은 형사 범죄로 기소되거나 소추된 자의 권리가 민사절차 당사자들의 권리보다 더 강력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315. 민사상의 권리에 관한 사건에 대한 제6조제1항의 요건은 형사소추에 관한 사건의 요건보다 덜 엄격하다(원칙에 관해, *López Ribalda and Others v. Spain* [GC], 2019, § 152; *Čivinskaitė v. Lithuania*, 2020, § 121 참조, 또한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지 않은 사람에게 퀘석재판에서 내려진 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인, *Dilipak and Karakaya v. Turkey*, 2014, § 80; 형사 범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사건인 *Carmel Saliba v. Malta*, 2016, §§ 67 및 70-71; 군대 징계 절차에 관한 사건인 *R.S. v. Germany* (dec.), 2017, §§ 35 및 43 참조). 형사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기관의 결정은 해당 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고려하여 생성된 증거에 대한 철저한 심사에 기초하고 적절한 이유를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Carmel Saliba v. Malta*, 2016, § 73)²².

316. 마지막으로 특정 사건과 관련된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판소가 국내 법원의 “매우 신속한 결정의 필요성”을 고려한 사례도 있었다(*Adorisio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dec.), 2015).

2. 범위

a. 원칙

317. 실효적인 권리: 절차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해당 의견이 실제로 “청취”된 경우, 즉 사실심 법원이 적절히 고려한 경우에만 실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Donadze v. Georgia*, 2006, § 35). 다시 말해,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청구취지, 주장, 증거를 적절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상소인이 변호사의 변호를 받은 상황에 관해, *Göç v. Turkey* [GC], 2002, § 57; *Perez v. France* [GC], 2004, § 80; *Kraska v. Switzerland*, 1993, § 30; *Van de Hurk v. the Netherlands*, 1994, § 59 참조). 제6조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실효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상소인이 변호사의 변호를 받지 않은 상황에 관해, *Kerojärvi v. Finland*, 1995, § 42; *Fretté v. France*, 2002, § 49 참조).

318. 상소인이 절차의 당사자로서 적절히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전달받지 못한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먼저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Kerojärvi v. Finland*, 1995, § 42). 단순히 상소인이 사건 기록을 참고하여 그 사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 그 자체는 충분한

22. 또한 “제6조제1항(공정한 형사재판)” 절 참조.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Göç v. Turkey* [GC], 2002, § 57). 그뿐만 아니라, 추가 주장과 증거를 국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상소인에 주어져야 한다(예를 들어, 짧은 상소 기한과 관련하여, *Adorisio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dec.), 2015 참조).

319. 행정기관의 의무: 상소인은 필요한 경우 문서공개절차를 신청하여 행정기관에서 보관 중인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McGinley and Egan v. the United Kingdom*, 1998, §§ 86 및 90). 피청구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소인의 사건 번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서 열람을 금지하거나, 해당 문서의 존재를 거짓으로 부인하는 경우, 이는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인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고 따라서 제6조제1항을 위반할 것이다(*ibid.*).

320. 절차 전반에 대한 심사: 절차의 공정성 여부는 절차 전체를 심사하여 결정한다(*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2012, § 197; *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151 및 161; *Ankerl v. Switzerland*, 1996, § 38).

321.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모든 흠결은 특정 조건에 따라 같은 심급의 법원(*Helle v. Finland*, 1997, §§ 46 및 54) 또는 상급법원(*Schuler-Zraggen v. Switzerland*, 1993, § 52; 또한 *Albert and Le Compte v. Belgium*, 1983, § 36; *Feldbrugge v. the Netherlands*, 1986, §§ 45-46 대조)에 의해 절차의 후속 단계에서 시정될 수 있다.

322. 어느 경우이든, 해당 흠결이 최고사법기구의 심급에서 발생한 경우(예를 들어 해당 기구가 제출한 결론에 대응할 가능성이 없음)에는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다(*Ruiz-Mateos v. Spain*, 1993, §§ 65-67).

323.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완전한 관할권을 가지며 제6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법기구가 문제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해당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항소법원이 가진 재심권의 범위이며, 이러한 권한의 범위는 해당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Obermeier v. Austria*, 1990, § 70).²³

324.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지 않은 이전의 결정: 이러한 경우, 완전한 관할권을 가지며 제6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사법기구에서 상소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Oerlemans v. the Netherlands*, 1991, §§ 53-58; *British-American Tobacco Company Ltd v. the Netherlands*, 1995, § 78). 중요한 점은 충분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Air Canada v. the United Kingdom*, 1995, § 62).

325. 형사절차 진행이 어떤 경우에는 “민사” 분쟁 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범죄 수사절차 예비단계에서 후속 민사 분쟁의 목적상 민사상의 권리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절차와 관련된 민사 당사자 또는 민사상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가 공정한 재판 측면의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Mihail Mihăilescu v. Romania*, 2021, §§ 74-89(기판력에 관한 문제), § 90(필요한 보호수준) 등의 관련 원칙 참조, 또한, *Victor Laurențiu Marin v. Romania*, 2021, §§ 144-150 및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참조).

326. 상소법원 절차: 제6조제1항은 계약국이 항소법원이나 파기원을 설치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법원을 설치한 국가는 소송당사자들이 이들 법원에서 제6조제1항에 포함된 기본적인 보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Andrejeva v. Latvia* [GC], 2009, § 97). 하지만, 제6조제1항이 상소법원 절차에 적용되는 방식은 관련 절차의 특수성에 달려 있으며, 국내법 질서에서 수행되는 전체 절차를 고려해야 하고 해당 항소법원(*Helmers v. Sweden*, 1991, § 31) 또는 파기원(*K.D.B. v. the Netherlands*, 1998, § 41; *Levages Prestations Services v. France*, 1996, §§ 44-45)이 국내법 질서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23. 또한 “완전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한 검토”에 관한 절 참조.

327.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에 한정되는 파기원 역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파기원의 절차는 더 형식적일 수 있다(*ibid.*, § 48). 그렇지만,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파기원이 상고를 각하한 결정은 판례법에서 의미하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Oorzhak v. Russia*, 2021, §§ 20-22). 파기원 상고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도록 한 요건 자체가 제6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Bąkowska v. Poland*, 2010, § 45; *G.L. and S.L. v. France* (dec.); *Tabor v. Poland*, § 42).

328. 제한: 국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단을 재판소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재판소의 역할이 아니다(*Dombo Beheer B.V. v. the Netherlands*, 1993, § 31).²⁴ 또한, 상소인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지만, 제6조제1항은 소송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Andronicou and Constantinou v. Cyprus*, 1997, § 201). 게다가 제6조 1항은 법원이 판결문에 항소를 위한 상세한 준비 사항 및 기한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Avotiņš v. Latvia* [GC], 2016, § 123).

329. 재판소는 청구인 자신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성실히 행동하지 않은 결과로 청구인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인, 재판소에 제소하게 된 상황에 청구인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Avotiņš v. Latvia* [GC], 2016, §§ 123-24; *Barik Edidi v. Spain* (dec.), 2016, § 45; 또한 *Zavodnik v. Slovenia*, 2015, §§ 79-80 대조). 절차 진행 중에 발생한 오류는 객관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Zubac v. Croatia* [GC], 2018, §§ 90 및 121). 그러나 개인과 관련기관, 특히 법원의 잘못으로 절차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다(§§ 91-95 및 §§ 114-121).

330. 민사절차의 당사자들은 사건 심리를 위한 절차적 단계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Bąkowska v. Poland*, 2010, § 54). 관련 절차적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성실성”이 발휘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청구인이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절차적 권리는 보통 절차적 의무를 수반할 것이다”(Zubac v. Croatia [GC], 2018, §§ 89 및 93). 이는 재소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 경우 “민사절차의 당사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성실성” 개념은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재소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던 사건인 *Parol v. Poland*, 2018, §§ 42-48, 특히 § 47 및 *Kunert v. Poland*, 2019, §§ 34-37 비교).

331. 외관상 공정성에 대한 법리: 재판소는 사법 행정에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관상 절차의 공정성이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재판소는 또한 당사자의 입장 자체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법원의 절차적 공정성과 대한 당사자들의 우려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Kraska v. Switzerland*, 1993, § 32).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32. 대법원의 검토가 수행되었던 다른 여러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민이 공정한 사법 집행을 더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겉으로 드러난 공정성에 대한 중요성 또한 당연히 커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Kress v. France* [GC], 2001, § 82; *Martinie v. France* [GC], 2006, § 53; *Menchinskaya v. Russia*, 2009, § 32). 재판소는 이들 사건에서 겉으로 드러난 공정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했다(또한 *Vermeulen v. Belgium*, 1996, § 34; *Lobo Machado v. Portugal*, 1996, § 32 참조).

333. 사법 관행: 재판소는 국내법 질서의 현실을 참작하기 위해 국내법이 제6조제1항과 양립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언제나 사법 관행에 일정한 중요성을 부여했다(*Kerojärvi v. Finland*, 1995, § 42; *Gorou v. Greece (no. 2)* [GC], 2009, § 32 실제로, 소송당사자들이 공정한 심리를 받았는지 심사할 때 해당 사건의 일반적 사실관계와 법적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Stankiewicz v. Poland*, 2006, § 70).

24. “제4심”에 관한 절 참조.

334. 국가기관은 국가안보 또는 테러를 이유로 법원의 효과적인 통제를 면제받을 수 없다²⁵. 정당한 안보 우려와 개인의 절차적 권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Dağtekin and Others v. Turkey*, 2007, § 34). 비상사태 시 협약 제15조에 따른 권리축소를 다룬 사건에 대해서는, *Pişkin v. Turkey*, 2020, § 153을 참조한다.

335. 재판소는 언론(*Čivinskaitė v. Lithuania*, 2020, § 122 및 §§ 137-139), 의회 조사보고서 내용(§§ 124 이하) 또는 국가 대표자 및 고위 정치인의 공개 발언(§§ 133이하) 등이 민사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다룬 판례법을 발전시켰다.

336. 절차 결과와의 독립성 원칙 제6조제1항의 절차적 보장은 국내 법원에서 승소하지 못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당사자에게 적용된다(*Philis v. Greece (no. 2)*, 1997, § 45).

b. 예시

337. 판례법은 다음을 비롯해 매우 다양한 상황을 포함한다.

338.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정확한 주소에 통지*: 청구인에게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관할기관은 관련 절차를 통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Dilipak and Karakaya v. Turkey*, 2014, §§ 85-88, 청구인들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했고, 이후 청구인들이 심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심리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건; *Bacaksız v. Turkey*, 2019, § 53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339. *굴석재판으로 진행된 민사절차/송달되지 않은 민사판결*: 형사절차에 관한 판례법에서 영감을 얻은 재판소는 *Bacaksız v. Turkey* (2019, §§ 56-57 및 60) 사건에서 특히 *Dilipak and Karakaya v. Turkey* (2014, §§ 78-80) 판례를 참고하여 이러한 제6조제1항에 부합할 수 있는 조건을 요약했다(*Bacaksız* 사건에서는 이전 판례와 달리 청구인이 이후 새로 진행된 심리에 출석할 수 있었음, §§ 62-65).

340. *법적 조력 미흡*: 이 경우, 민사절차의 피고가 효과적인 변론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McVicar v. the United Kingdom*, 2002, § 50).

341. *법원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분명한 의도로 항소법원에 제출한 견해*: 당사자들은 실제로 항소법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법원이 항소법원에 제출한 견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설령 항소법원의 의견서(*Nideröst-Huber v. Switzerland*, 1997, §§ 26-32)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에 피청구국이 제출한 의견서(*APEH Üldözötteinek Szövetsége and Others v. Hungary*, 2000, § 42)에서 문제의 결정에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관계나 주장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을지라도 법원의 견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42. *선결문제*: 협약은 다른 국가기관(헌법재판소 포함: *Xero Flor w Polsce sp. z o.o. v. Poland*, 2021, § 166) 또는 국제기관(*Coëme and Others v. Belgium*, 2000, § 114; *Acar and Others v. Turkey* (dec.), 2017, § 43)의 선결적 판결을 받기 위해 국내 법원이 사건을 회부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343. 따라서 제6조제1항은 국내 법원이 사건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회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Dotta v. Italy* (dec.), 1999; *Herma v. Germany* (dec.), 2009).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청구인은 해당 요청에 대한 명시적인 이유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John v. Germany* (dec.), 2007; *Somorjai v. Hungary*, 2018, § 60). 국내 법원이 유럽연합법을 올바르게 해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의 관할권을 벗어난 사안이다(§ 54).

25. *테러리즘에 대한 해설서(Guide on terrorism)* 참조.

344. 선결적 부탄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선결적 부탄절차에 따른 사건 회부 요청을 거절한 국내 법원의 결정은 특정 상황에서 절차의 공정성에 위배될 수 있다(*Ullens de Schooten and Rezabek v. Belgium*, 2011, §§ 57-67 및 추가 참고 판례 참조; *Canela Santiago v. Spain* (dec.), 2001). 거절 결정이 자의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 관련 규칙이 선결적 부탄절차 원칙에 대한 예외나 대안을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절 결정이 내려진 경우, 관련 규칙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거절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거절 결정이 사유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Ullens de Schooten and Rezabek v. Belgium*, 2011, § 59).

345. 재판소는 위에서 언급한 판례법을 적용하여 거절 결정이 자의적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심사한다(*Canela Santiago v. Spain* (déc.), 2001). 항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선결적 판결을 위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회부해달라는 요청을 국내 법원이 거절할 때 해당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 재판소는 *Ullens de Schooten and Rezabek v. Belgium* (2011) 판결에서 *Somorjai v. Hungary* (2018) 판결(§§ 57 및 62와 인용된 참고 판례)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 제6조제1항은 선결적 판결을 위한 문제를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비추어 국내 법원이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이에 근거하여 제6조제1항 위반을 주장하는 소장을 심리하는 경우, 스트라스부르 재판소의 임무는 문제의 거절 결정이 해당 이유를 적절히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적절한 이유가 제시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지만, 국내 법원이 관련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범했을 수 있는 오류를 심사하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Repcevirág Szövetkezet v. Hungary*, 2019, § 59).
- 유럽공동체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제234조(현재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267조)의 세 번째 단락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유럽연합 내의 국내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당사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문제에 관해 유럽연합법 해석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결을 요청했으나 국내 법원이 문제 회부 요청을 거절한 경우, 해당 국내 법원은 *Cilfit*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판례법에 규정된 예외를 고려하여 해당 거절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Somorjai v. Hungary*, 2018, §§ 39-41). 그러므로 국내 법원은 선결적 판결을 요청한 문제가 사건 해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 즉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문제의 유럽연합법 조항을 이미 해석했거나 유럽연합법의 올바른 적용이 너무 명백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346. 선결적 판결을 위해 사건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최종심 법원의 결정에 제시된 이유는 사건의 상황과 국내 절차 전반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Krikorian v. France* (dec.), 2013, § 99; *Harisch v. Germany*, 2019, § 42; *Repcevirág Szövetkezet v. Hungary*, 2019, § 59).

347. 재판소는 본안에 대한 항소 자체가 승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선결적 판결을 위해 사건을 회부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국내 법원이 거절 이유를 간략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Stichting Mothers of Srebrenica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dec.), 2013, §§ 173-174 및 형사 문제에서 이를 준용한 사례에 관해, *Baydar v. the Netherlands*, 2018, §§ 48-49 참조). 이러한 상황의 예로는 해당 항소가 국내 심리적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Astikos Kai Paratheristikos Oikodomikos Synetairismos Axiomatikon and Karagiorgos v. Greece* (dec.), 2017, §§ 46-47). 재판소는 또한 *Cilfit* 기준에 따라 선결적 판결 요청을 거절한 구체적인 이유가 해당 법원이 내린 판결의 나머지 논증(*Krikorian v. France* (dec.), 2013, §§ 97-99; *Harisch v. Germany*, 2019, §§ 37- 42; 및 *Ogieriakhi v. Ireland* (dec.), 2019, § 62), 또는 요청을 거절하는 결정에 포함된 다소 묵시적인 논증(*Repcevirág Szövetkezet v. Hungary*, 2019, §§ 57-58)에서 추론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48. *Dhabbi v. Italy* (2014, §§ 32-34)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선결적 판결을 위한

문제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거절할 때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처음으로 제6조 위반 판결을 내렸다. 파기원은 청구인의 선결적 판결 요청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제기된 문제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로 회부하거나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판례법을 들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의가 제기된 판결의 논증에서는 선결적 판결을 요청한 문제가 이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명확히 밝혔거나 해석한 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여겨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무시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또한 *Schipani and Others v. Italy*, 2015, §§ 71-72 참조). *Sanofi Pasteur v. France* (2020, §§ 74-79) 사건에서, 재판소는 또한 파기원 판결문이 “선결적 판결을 위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문제를 회부할 필요가 없으므로”라는 문구를 통해 청구인 회사가 선결적 판결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할 뿐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위반 판결을 내렸다.

349. 그 밖에도, 민사절차의 당사자가 사건 판결에 중요한 특정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위해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내 법원은 문제 회부 거절을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즉, 국내 법원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수행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Xero Flor w Polsce sp. z o.o. v. Poland*, 2021, §§ 171-172).

350. **국내 판례법의 변경:** 법적 확실성 요건과 정당한 기대에 대한 보호는 확립된 법리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Unédic v. France*, 2008, § 74). 판례법 발전이 그 자체로 적절한 사법 집행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116). 역동적이고 진화적인 접근법을 허용되지 않을 경우 개혁이나 개선이 저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Nejdet Şahin and Perihan Şahin v. Turkey* [GC], 2011, § 58; *Albu and Others v. Romania*, 2012, § 34). *Atanasov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0, § 38) 사건에서, 재판소는 확립된 법리의 존재는 대법원이 판례법에서 벗어난 결정을 정당화하는 보다 실질적인 이유를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에 따른 결정을 받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어떤 경우에는 계속 중인 민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법리에 대한 변경이 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Petko Petkov v. Bulgaria*, 2013, §§ 32- 34).

351. 국내 법원 간 또는 같은 법원 내에서의 **판례법상의 이견**이 그 자체로 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Nejdet Şahin and Perihan Şahin v. Turkey* [GC], 2011, § 51 및 *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116).²⁶ 그러나 재판소는 법원 관행의 일관성과 법원 판례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Svilengačanin and Others v. Serbia*, 2021, § 82). 체약국은 불일치하는 판결이 채택되지 않도록 법체계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Nejdet Şahin and Perihan Şahin v. Turkey* [GC], 2011, § 55). 대법원의 진정한 역할은 각기 다른 해석을 포함하는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이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다(*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123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또한 예를 들어, *Svilengačanin and Others v. Serbia*, 2021, § 81 참조).

분명히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일지라도, 여러 국내 법원이 내린 서로 다른 결정을 비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판소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소는 국내 법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재판소는 두 분쟁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문제의 사실관계 차이를 이유로 정당화될 경우에는 판례법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Ferreira Santos Pardal v. Portugal*, 2015, § 42 및 *Hayati Çelebi and Others v. Turkey*, 2016, § 52).

- *Nejdet Şahin and Perihan Şahin v. Turkey* [GC] (2011) 사건은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적이며 계층적으로 관련이 없는 두 최고법원의 판결을 다룬 사건이다. 재판소는 특히 재판소에 대한 청구가 국내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례법의 충돌을 해결 또는 해소하는 수단이나 국내 법원 판결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검토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95).

26. 또한 “국내 판례법의 일관성”에 관한 절 참조.

- The case of *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사건에서는 단일 법원인 대법원 판례법의 심각하고 오랜 불일치와 판례법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재판소는 법적 확실성 원칙이 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최고법원 판례의 일관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약 모든 조항에 내재한 법적 확실성 원칙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를 구성한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38). 상반되는 법원 결정이 계속 유지될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할 가능성이 큰 법적 불확실성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뢰는 분명히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가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116)(또한 판례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행정법원의 두 산하 기관이 다른 입장을 계속 채택했던 사례와 관련하여 *Sine Tsagarakis A.E.E. v. Greece*, 2019, §§ 51-59 참조).

352. 국내 법원의 스트라스부르 재판소 판결 해석: *Bochan v. Ukraine (no. 2)* [GC] (2015) 사건에서, 해당 법체계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내린 위반 판결에 비추어 대법원이 청구인의 민사소송에 대한 사법심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제조치를 청구인에게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제시한 결론이 “매우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 문언을 다르게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에 이르는 것이었다. 따라서 해당 대법원의 논증은 제6조를 위반하는 “극히 자의적”이거나 “정의에 대한 거부”를 수반하는 논증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ibid.* [GC], §§ 63- 65).

35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법령 발효: 재판소는 법령 발효로 인해 아직 진행 중인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소급입법에 내재한 위험을 특히 우려한다.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된 모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National & Provincial Building Society, Leeds Permanent Building Society and Yorkshire Building Society v. the United Kingdom*, 1997, § 112). 원칙적으로 입법부가 민사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를 규율하기 위해 새로운 소급조항을 채택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6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의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법 집행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Zielinski, Pradal, Gonzalez and Others v. France* [GC], 1999, § 57; *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26). 예를 들어, 재판소는 다음 상황에서 위반 판결을 내렸다.

- 입법부의 개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9년 동안 이어진 후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최종적이고 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은 시점에서, 곧 발생할 사건의 결과가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입법부가 개입한 상황(*Stran Greek Refineries and Stratis Andreadis v. Greece*, 1994, §§ 49-50)
- 곧 발생할 사건의 결과가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법령(*Zielinski, Pradal, Gonzalez and Others v. France* [GC], 1999, § 59)
- 파기원 절차에서 실체적 쟁점을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으나 파기원 절차에서 결정적인 시점에 도입된 결과 소송을 무의미하게 만든 법률의 제정(*Papageorgiou v. Greece*, 1997)
-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제정되고 해당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을 보충 근거로 하여 내려진 항소법원의 결정(*Anagnostopoulos and Others v. Greece*, 2000, §§ 20-21)
- 소급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이 진행되는 중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소급입법이 제정되었으나, 해당 조치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력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재판소는 재정적 이유만으로는 분쟁 해결을 위해 입법부가 법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Azienda Agricola Silverfunghi S.a.s. and Others v. Italy*, 2014, §§ 76 및 88-89).

그러나 제6조제1항은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고 있는 법적 절차에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소는 다른 여러 사건에서 피청구국이 제시한 근거가 법의 소급효를 정당화하는 데 요구되는 강력한 공익적 이유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결했다(*National & Provincial Building Society, Leeds Permanent Building Society and Yorkshire Building Society v. the United Kingdom*, 1997, § 112; *Forrer-Niedenthal v. Germany*, 2003, § 64; *OGIS-Institut Stanislas, OGEC Saint-Pie X and Blanche de Castille and Others v. France*, 2004, §§ 71-72; *EEG-Slachthuis Verbist Izegem v. Belgium* (dec.), 2005; *Hôpital local Saint-Pierre d'Oléron and Others v. France*, 2018, §§ 72-73).

354. 이 판례법은 국가가 절차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입법권을 통해 절차를 무효로 하는 상황에도 적용된다(*Ducret v. France*, 2007, §§ 33-42).

355. 다른 유형의 입법적 개입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제6조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법령이 절차가 시작되기 전 제정되거나(*Organisation nationale des syndicats d'infirmiers libéraux (ONSIL) v. France* (dec.), 2000) – (*Azzopardi and Others v. Malta* (dec.), 2019, § 44 비교) – 절차가 종료된 후 제정될 수 있다(*Preda and Dardari v. Italy* (dec.), 1999).
-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아니었고 따라서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일반법 제정이 소송당사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2004, § 72).
-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명백하고 중대한 공익적 정당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판소의 시범적 판결에 따라 소급효가 있는 법이 통과될 수 있다(*Beshiri and Others v. Albania* (dec.), 2020, 수많은 최종 행정 결정이 매우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된 사건).
-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없이 어떤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될 수 있다(*Dolca and Others v. Romania* (dec.), 2012).

356. 입법적 개입의 정당성을 심사할 때 참작해야 할 상기 공익성 고려와 관련하여 재판소가 환경보호를 공공의 이익에 대한 문제로 명시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Dimopoulos v. Turkey*, 2019, §§ 39-40).

357. “국가 법무 관련 기관의 독립적인 공무원”이 제출한 의견이 대법원에 상고한 소송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검사: *Vermeulen v. Belgium*, 1996; *Van Orshoven v. Belgium*, 1997; *K.D.B. v. the Netherlands*, 1998; 검찰 간부/검찰총장: *Göç v. Turkey* [GC], 2002; *Lobo Machado v. Portugal*, 1996; 정부 감독관: *Kress v. France* [GC], 2001; *Martinie v. France* [GC], 2006) 해당 의견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 많은 피청구국은 국가 법무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이 범주의 독립적인 공무원이 해당 절차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어느 당사자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해당 공무원이 절차에서 실제로 담당할 부분, 특히 제출한 의견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Vermeulen v. Belgium*, 1996, § 31; *Kress v. France* [GC], 2001, § 71 요약 부분 참조).

358. 재판소는 민사절차에서 국가 법무 관련 기관의 독립적인 공무원이 제출한 의견이 사전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해당 의견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당사자주의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ibid.*, § 76; *Göç v. Turkey* [GC], 2002, §§ 55-56; *Lobo Machado v. Portugal*, 1996, § 31; *Van Orshoven v. Belgium*, 1996, § 41; *Immeubles Groupe Kosser v. France*, 2002, § 26).

359. 이러한 국가 법무 관련 기관의 공무원이 사건에 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에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심의에 참여한 것은 협약 위반으로 확인되었으며, 심지어는 단순히 재판에 참석한 것조차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Kress v. France* [GC], 2001, § 87; *Van Orshoven v. Belgium*, 1996, § 34; *Lobo Machado v. Portugal*, 1996, § 32). 이 판례법은 외관상 공정성에 대한 법리에 주된 근거를 두고 있다(*Martinie v. France* [GC], 2006,

§ 53).

360. 해당 문제가 소송당사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아니면 국가기관의 태도나 관련 법령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Fretté v. France*, 2002, §§ 49-51), 절차가 제기된 상황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해당 절차에서 당사사주의와 무기대등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검토해야 한다(*Kress v. France* [GC], 2001, § 76 및 *Göç v. Turkey* [GC], 2002, §§ 55-57 비교; 또한 *Marc-Antoine v. France* (dec.), 2013 참조). 유럽공동체/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절차에 관해서는, *Coöperatieve Producentenorganisatie van de Nederlandse Kokkelvisserij U.A. v. Netherlands* (dec.) (2009) 사건을 참조한다.

361. 제한:

- 무기대등의 원칙은 당사자가 절차의 상대 당사자나 보고 판사 또는 사실심 재판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관련 제출물을 심리에 앞서 전달받을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Kress v. France* [GC], 2001, § 73).
- 실질적인 범위나 실체가 없는 권리의 인정은 효력이 없음: 채택된 법적 해결책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으므로 협약에 따른 권리가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가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Stepinska v. France*, 2004, § 18).
- 국내 절차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나 의견의 사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제소한 상황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2010년부터 몇몇 사건에서 새로운 심리적격성 기준인 “상당한 불이익” 기준을 적용했다(협약 제35조제3항제(b)호). 이 기준에 따르면, 순수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권리가 정말로 실질적인 방식으로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은 사소한 사항에 관여치 않는다는 원칙(*principle de minimis non curat praetor*)에 따라, 재판소는 필요한 최소 수준의 강도로 사건을 심사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나 접수된 의견의 사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청구에 대해 상당한 불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Holub v. the Czech Republic* (dec), 2010; *Liga Portuguesa de Futebol Profissional v. Portugal* (dec.), 2012, §§ 36-40; *Kiliç and Others v. Turkey* (dec.), 2013; 또한 *Collaredo Mannsfeld v. the Czech Republic*, 2016, §§ 33-34 대조). 예를 들어, 문제의 관련 서류가 청구인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그 성격이나 내용상 법원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한 상황 등에서 이러한 접근법이 적용되었다. 국내 법원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관련 서류를 참작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상황에서는 이 접근법이 더 확실히 적용될 수 있다(*Cavajda v. the Czech Republic* (dec.), 2011).

3. 제4심

a. 일반 원칙

362. 재판소에 제출된 청구의 특정 범주는 흔히 “제4심”으로 지칭되는 청구로 구성된다. 이 용어는 협약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협약 기관의 판례법을 통해 확립된 것으로(*De Tommaso v. Italy* [GC], 2017, § 170); *Kemmache v. France (no. 3)*, 1994, § 44), 재판소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사항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소 역설적이다. 재판소는 협약 당사국의 법원이 내린 판결을 파기하거나 이들 법원이 심리한 사건을 재심할 수 있는 항소법원이거나 법원이 아니며, 대법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재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4심 신청은 두 가지 수준에서 흔히 발생하는 빈번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363. 첫째, 청구인들 사이에서 협약에 따라 확립된 재판소의 역할과 사법기구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널리 퍼져 있다. 국내 법원을 대체하는 것은 재판소의 역할이 아니다. 재판소의 권한은 협약 가입에 따라 체약국이 수행한 인권 약속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정된다. 게다가 재판소는 체약국의 법체계에 직접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체약국 법체계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국내 법원이 범했다고 주장되는 사실문제나 법률문제에 대한 오류가

협약에서 보호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가 아님을 의미한다.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다른 결정 대신 어떤 결정을 채택하는 데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 자체적인 심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국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소가 자체적인 심사를 수행할 경우, 재판소는 제3심 또는 제4심 법원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재판소의 역할에 부과된 제한을 무시하는 행위일 것이다(*García Ruiz v. Spain* [GC], 1999, § 28; *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2012, § 197; *Avotiņš v. Latvia* [GC], 2016, § 99; *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90; *De Tommaso v. Italy* [GC], 2017, §§ 170-72).

364. 둘째, 협약 제6조제1항의 “공정한”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제6조제1항이 요구하는 “공정성”은 법적 개념의 일부와 윤리적 개념의 일부가 결합한 것으로 사실심 법원에 의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 “실질적” 공정성이 아니다(*Ballıkaş Bingöllü v. Turkey*, 2021, § 78참조). 제6조제1항은 “절차적” 공정성만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심리하고 법원에서 대등한 관계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주의 절차로 해석할 수 있다(*Star Cate Epilekta Gevmata and Others v. Greece* (dec.), 2010). 절차의 공정성은 언제나 전체 절차에 대한 심사를 통해 판단해야 하므로, 단 하나의 오류는 전체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Miroļubovs and Others v. Latvia*, 2009, § 103).

365. 또한, 재판소는 유럽의 법체계와 사법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를 표준화하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의성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렸는지 검토하는 것 역시 재판소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Nejdet Şahin and Perihan Şahin v. Turkey* [GC], 2011, §§ 68, 89 및 94).

b. 재판소의 감독 범위와 한계

366. 국내법을 해석하고 국내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내기관, 특히 법원이 해야 할 역할이며(*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86 및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51), 궁극적으로 재판소는 협약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최종 권위자 자격으로(*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86), 이들 기관은 보충성 원칙과 국가 당사자와 재판소 간 “공유된 책임”에 따라(§ 250) 국내법이 해석되고 적용된 방식이 협약의 원칙과 일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예를 들어, *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91 참조).

367.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범했다고 주장되는 사실문제나 법률문제에 대한 오류가 명백하고 협약에서 보호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재판소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적으로 밝혔다(*García Ruiz v. Spain* [GC], 1999, § 28; *Perez v. France* [GC], 2004, § 82; *De Tommaso v. Italy* [GC], 2017, § 170). 그렇기 때문에, 재판소는 국내기관의 결론이 “자의적이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법률문제에 대해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국내기관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91 및 *Naït-Liman v. Switzerland* [GC], 2018, § 116). 재판소는 또한 국내 법원의 분명한 평가 오류가 재판소의 판례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잘못 해석한 결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6조와 관련하여 재판소가 수행하는 유일한 임무는 국내 법원이 제6조에 명시된 “구체적인 절차적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절차 진행 과정 전반에서 청구인이 공정한 심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청구를 심사하는 것이다(*De Tommaso v. Italy* [GC], 2017, § 171).

368. 그러므로 재판소가 국내 법원의 판결이 자의적이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음을 이유로 국내 법원의 평가에 대해 제6조제1항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예를 들어, 재판소는 *Dulaurans v. France* (2000, § 38) 사건에서 “판결의 명백한 오류”를 근거로 제6조제1항 위반 판결을 내렸다(또한 *Tel v. Turkey*, 2017, § 76 참조). 여기서 “판결의 명백한 오류”라 함은 합리적인 법원이라면 도저히 해당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오류라고 표현할 만큼 국내 법원이 사실문제나 법률문제에 대해 “명백한” 오류를 범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의가 제기된 절차가 “극히 자의적”이었던 *Bochan v. Ukraine (no. 2)* [GC] (2015, § 61) 사건과 *Khamidov v. Russia* (2007, § 170) 사건, “정의에 대한 거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던 *Anđelković v. Serbia* (2013, § 24) 사건과 *Lazarević v. Bosnia and Herzegovina* (2020, § 32) 사건, 국내 법원의 논증이 “극히 자의적”이거나 “정의에 대한 거부”를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Bochan v. Ukraine (no. 2)* [GC] (2015) 사건에서 재판소가 이미 강조했던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 63-65 및 상기 인용한 판례와 *Ballıktaş Bingöllü v. Turkey*, 2021, §§ 77-78을 참조한다(또한 예컨대, *Ballıktaş Bingöllü v. Turkey*, 2021, § 82 및 *Société anonyme d'habitations à loyers modérés Terre et Famille v. France* (dec.), 2004 대조). *Baljak and Others v. Croat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협약 제2조에 따른 재판소 판례법과 해당 국내 법원이 충족 불가능한 입증기준을 청구인에게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내 법원이 “명백히 불합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41).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재판소는 *Carmel Saliba v. Malta* (2016) 사건에서 청구인의 반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밀관적이고 상충하는 증거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서 민사절차에서 청구인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79).

마지막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법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은 점은 청구인의 운명에 부인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Tel v. Turkey*, 2017, § 67).

결론적으로, 국내 법원이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거나 “명백한” 사실적 또는 법적 오류에 근거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정의에 대한 부정”이 발생할 것이다(*Ballıktaş Bingöllü v. Turkey*, 2021, § 77, 형사 영역과 관련하여 *Moreira Ferreira v. Portugal (no. 2)* [GC], 2017, § 85 언급).

369. 이 원칙으로 돌아오자면,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다음 사항에 대한 국내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적 결론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 사건의 사실관계 확립: 일반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는 국내 법원의 소관에 속한다(*Van de Hurk v. the Netherlands*, 1994, § 61).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노골적이고 명백히 자의적인 결정을 내린 경우가 아닌 한 국내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García Ruiz v. Spain* [GC], 1999, §§ 28-29; *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2018, § 150).
- 국내법 해석 및 적용: 국내법의 해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내 법원이 해야 할 역할이며(*Perez v. France* [GC], 2004, § 82), 스트라스부르 재판소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소의 역할은 이러한 해석의 효과가 협약과 양립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Nejdet Şahin and Perihan Şahin v. Turkey* [GC], 2011, § 49). 계약국의 법원이 국내법을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방식으로 해석한 예외적인 사건에서 재판소는 적절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Barać and Others v. Montenegro*, 2011, §§ 32-34, 및 추가 참고 판례 참조; *Anđelković v. Serbia*, 2013, §§ 24-27 (정의에 대한 거부); *Laskowska v. Poland*, 2007, § 61 및 상기 인용된 판례 참조), 이 원칙은 또한 협약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S., v. and A. v. Denmark* [GC], 2012, § 148 및 인용된 참고 판례; *Fabris v. France* [GC], 2013, § 60 또는 *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2007, §§ 85-86; 또한 *Kushoglu v. Bulgaria*, 2007, § 50; *Işyar v. Bulgaria*, 2008, § 48 참조).
- 재판소는 또한 다른 국제조약이나 유럽연합법 준수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결할 권한이 없다. 유럽연합법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임무는 일차적으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소관에 속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권은 예컨대 제6조제1항 등의 협약 요건을 준수하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그 자체로 제6조제1항에

다른 쟁점이 제기될 수 있는 자의성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유럽연합법(*Avotiņš v. Latvia* [GC], 2016, § 100), 일반적인 국제법 또는 국제협정(*Waite and Kennedy v. Germany* [GC], 1999, § 54; *Markovic and Others v. Italy* [GC], 2006, §§ 107-108)의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국내 법원의 판례법 상충은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요건과 양립할 수 없다(이를 준용한 사례에 관해, *Molla Sali v. Greece* [GC], 2018, § 153).

- 증거능력과 증거 평가:²⁷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장은 절차적 차원의 증거 채택 및 사용에 관한 문제에만 적용된다. 증거능력이나 본안에 대한 증거 평가 방법에 관한 문제는 제시된 증거를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내 법원의 일차적 소관에 속한다(*García Ruiz v. Spain* [GC], 1999, § 28; *Farange S.A. v. France* (dec.),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원이 이에 대해 제시하는 이유는 제6조제1항의 목적상 중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재판소의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예를 들어, *Carmel Saliba v. Malta*, 2016, §§ 69-73 참조).

370. *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이 유럽의 공공질서에 관한 헌법적 문서에 해당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당사국들은 최소한 해당 공공질서의 토대를 보전하는 협약 준수에 대해 일정 수준의 심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유럽 공공질서의 기본 요소 중 하나는 법치주의 원칙이며, 자의성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 재판소가 국가기관에 매우 폭넓은 재량권을 허용하는 국내법의 해석과 적용 문제의 경우에도, 재판소는 항상 자의성 금지 원칙이 준수된다는 점을 전제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이러한 재량권을 허용한다(§ 145).

371. 따라서 제6조제1항은 대개 어느 한 당사자가 승소하고 다른 당사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민사 분쟁 결과의 실질적 공정성에 대해 재판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72. 협약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판소는 청구인이 당사자주의 절차의 혜택을 받은 점, 청구인이 해당 절차의 다양한 단계에서 자신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던 점, 상대 당사자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에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졌던 점, 객관적으로 볼 때 법원이 사건 해결과 관련된 청구인의 모든 주장을 적절히 심리하고 검토한 점, 문제의 결정에 대한 사실적, 법적 이유가 자세히 명시된 점 및 이에 따라 진행된 절차가 전반적으로 공정했음을 이유로 제4심 청구를 각하할 것이다(*García Ruiz v. Spain* [GC], 1999, § 29). 제4심 청구의 대다수는 단독 재판부나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별도의 심의를 수행하지 않고서(*de plano*) 각하한다(협약 제27조 및 제28조).

c. 국내 판례법의 일관성²⁸

373. 제6조제1항은 판례법의 일관성에 대한 획득된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판례법 발전이 그 자체로 적절한 사법 집행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역동적이고 진화적인 접근법을 허용되지 않을 경우 개혁이나 개선이 저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Nejdet Şahin and Perihan Şahin v. Turkey* [GC], 2011, § 58; *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116). 판례법의 상충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영토관할권에 속한 지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사실심 법원과 항소법원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모든 사법제도의 내재적 결과이다. 대법원의 진정한 역할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Beian v. Romania* (no. 1), 2007, § 37; *Svilengačanin and Others v. Serbia*, 2021, §§ 81-82).

374. 일견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어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그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국내 법원이 선고한 여러 결정을 비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판소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법 상충 가능성은 자신의 영토관할권에 속한 지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사실심 법원과

27. 또한 “증거 채택 및 사용”에 관한 절 참조.

28. 또한 “판례법의 불일치”에 관한 절 참조.

항소법원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모든 사법제도의 내재적 결과이다. 판례법 상충은 심지어 같은 법원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판례법 상충 자체가 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Santos Pinto v. Portugal*, 2008, § 41). 그뿐만 아니라, 문제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다르게 파악하는 “이견”은 있을 수 없다(*Uçar v. Turkey* (dec.), 2009).

375. 하지만, 판례법 상충이 제6조제1항 위반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의 접근법은 판례법 상충이 동일한 법원 지부 내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두 법원 지부 사이에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376. 첫 번째 상황에서(국내 최고법원의 판례법의 차이), 재판소는 사건을 판단할 때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 판례법의 차이가 “심각하고 오랜” 차이인지 여부
- 국내법이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할 메커니즘을 제공하는지 여부 및
- 해당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결과(*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116-35; *Beian v. Romania* (no. 1), 2007, §§ 37 및 39)

마지막에 언급한 사건에서, 국내 최고법원은 “판이한” 판결을 내렸고, 판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법에 규정된 메커니즘이 신속하게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확실성의 원칙이 훼손되었다.

377. 국가 최고 사법기구의 심각하고 오랜 판례법 상충이 계속 심화된 관행은 그 자체로 협약의 모든 조항에 내포되어 있고 법치주의의 기본 요소의 하나를 구성하는 원칙인 법적 확실성 원칙에 반한다(*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2020, § 238, 언급된 원칙 참조; *Beian v. Romania* (no. 1), 2007, § 39).

- 인용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대법원이 추구해야 할 법령 해석 임무를 이행하는 대신 대법원 자체가 법적 불확실성의 원천으로 행동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언급했다. 재판소는 판례법에 관한 이러한 확실성 결여로 인해 청구인이 법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반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법에 규정된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39-40).
- *Hayati Çelebi and Others v. Turkey* (2016) 사건에서, 파기원 판례법의 명백한 모순은 해당 파기원 관행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은 점과 더불어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각하로 이어졌으나,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청구 본안에 대해 파기원의 검토를 받았다(§ 66).

378. 하지만, 판례법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수립된 제도가 효력이 있음이 증명된 상황에서, 이러한 충돌 해결 제도가 매우 신속히 도입되어 짧은 시간 안에 판례법 충돌 문제를 해결한 경우 재판소는 위반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Albu and Others v. Romania*, 2012, § 42; *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130-132 비교).

379. 두 번째 상황에서, 상충하는 판결들은 법체계의 서로 다른 두 법원의 최종심에서 선고되며, 각 법원은 공통된 사법부 계층구조가 적용되지 않는 독립된 대법원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은 수직적 검토 메커니즘이나 공통의 규제기관(관할권 분쟁 재판소 등)의 이행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법원에 여러 다른 지부가 있고 여러 대법원이 병렬적으로 나란히 존재하며 동시에 나란히 법령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 판례법의 일관성을 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따라서 판례법이 상충하는 기간은 법적 확실성의 훼손 없이 용인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관할권을 가진 두 법원은 유사한 사실관계에 의해 제기된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고서 합리적이고 논증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Nejdet Şahin and Perihan Şahin v. Turkey* [GC], 2011, §§ 81-83 및 86).

4. 당사자주의 절차

380. 당사자 대립 원칙: 공정한 재판의 개념은 당사자주의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이것은 무기대등의 원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146).

당사자주의 절차에 대한 권리와 재판청구권에 따라, 절차의 상대 당사자에 다양한 수준으로 의존하는 자의 변호를 받는 소송당사자는 적절한 조건에서 주장을 제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Capital Bank AD v. Bulgaria*, 2005, § 118).

381. 당사자주의 절차에 대한 권리에서 발생하는 요건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에서 원칙적으로 동일하다(*Werner v. Austria*, 1997, § 66).

382. 시간을 절약하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는 당사자주의 절차에 대한 권리와 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Nideröst-Huber v. Switzerland*, 1997, § 30).

383. 내용(아래 명시된 한계가 적용됨): 당사자주의 절차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또는 민사재판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된 모든 증거나 의견을 전달받고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 법무 관련 기관의 독립적인 공무원이 해당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Kress v. France* [GC], 2001, § 74; *Ruiz-Mateos v. Spain*, 1993, § 63; *McMichael v. the United Kingdom*, 1995, § 80; *Vermeulen v. Belgium*, 1996, § 33; *Lobo Machado v. Portugal*, 1996, § 31). 이 요건은 헌법재판소에도 적용될 수 있다(*Milatová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2005, §§ 63-66; *Gaspari v. Slovenia*, 2009, § 53).

- 법원의 결정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Nideröst-Huber v. Switzerland*, 1997, § 27; *Ziegler v. Switzerland*, 2002, § 38).
- 당사자 대립 원칙은 국가 법무 관련 기관의 독립적인 공무원, 행정부의 대표자, 하급법원 또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대해 타당한 만큼이나 절차의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타당하게 적용된다(*Köksoy v. Turkey*, 2020, §§ 34-35 및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 당사자주의 절차에 대한 권리는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절차의 당사자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거의 존재, 내용, 진정성에 대해 적절한 형태로 적절한 시간 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Krčmář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2000, § 42; *Immeubles Groupe Kosser v. France*, 2002, § 26), 필요한 경우 휴정을 신청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Yvon v. France*, 2003, § 39).
-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를 공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Clinique des Acacias and Others v. France*, 2005, § 37).
- 예를 들어, 법원이 직권으로 제기한 사유나 이익에 근거하여 사건을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대립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Čepek v. the Czech Republic*, 2013, § 45, 또한 *Clinique des Acacias and Others v. France* (2005, § 38) 사건을 *Andret and Others v. France* (dec.) (2004) 사건(기각)과 비교: 위에서 언급한 사건 중 마지막 사건에서 파기원은 새로운 근거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으며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청구인이 법정에서 반론할 기회를 보장함).
- 상대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나 증인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는 분쟁 당사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소송당사자의 신뢰는 사건 기록의 모든 문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음을 알고 있었던 것에 기초한다(법원이 자체적으로 획득한 문서 포함: *K.S. v. Finland*, 2001, § 22; *Nideröst-Huber v. Switzerland*, 1997, § 29; *Pellegrini v. Italy*, 2001, § 45).

384. 다음 문서나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결과 당사자주의 절차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사례:

- 심리에서 아동의 부모에게 보고서 내용이 전달된 상황일지라도, 아동의 보호시설 수용에 관한 절차에서 보호 대상 아동에 관한 정보,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 권고안을 담은 사회복지기관의 보고서(*McMichael v. the United Kingdom*, 1995, § 80)
- 검사를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제시한 증거: 검사는 무엇보다도 검사 직무에 부여된 권한으로 인해 관련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Ferreira Alves v. Portugal (no. 3)*, 2007, §§ 36-39).
- 해당 의견서에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급법원이 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ibid.*, § 41)
- 판사가 직접 입수한 것으로 사건 본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담은 문서(*K.S. v. Finland*, 2001, §§ 23-24)

385. 제한²⁹: 당사자주의 절차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이 권리의 범위는 해당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Hudáková and Others v. Slovakia*, 2010, §§ 26-27), 재판소는 최종심에 대해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146- 147). 마지막에 언급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절차가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당사자 대립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다른 절차적 보호조치에 의해 충분히 상쇄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151-161).

- 당사자 대립 원칙은 각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문서를 상대 당사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Yvon v. France*, 2003, § 38).

- 매우 특별한 상황을 다룬 몇몇 사건에서, 재판소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공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해당 증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나 청구인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고 법원이 결정한 법적 해결책이 논의 대상에 속하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Stepinska v. France*, 2004, § 18; *Salé v. France*, 2006, § 19; *Asnar v. France (no. 2)*, 2007, § 26).

386. 당사자 대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구가 판례법에서 의미하는 “완전한 관할권”을 갖는 한 이를 시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항소법원의 절차적 흠결은 사건이 환송된 하급법원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Köksoy v. Turkey*, 2020, §§ 36-39).

5. 무기대등의 원칙³⁰

387. “무기대등”의 원칙은 더 광범위한 개념인 공정한 재판의 개념에 내재하며 당사자 대립 원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146). “무기대등의 원칙” 요건은 당사자 간 “공정한 균형”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적용된다(*Feldbrugge v. the Netherlands*, 1986, § 44).

388. 내용: 당사자 간 “공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무기대등의 원칙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과 비교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 그의 증거를 포함한 그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대등은 각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보다 상당히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증거를 포함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Kress v. France [GC]*, 2001, § 72; *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146; *Dombo Beheer B.V. v. the Netherlands*, 1993, § 33).

29. 또한 위 “예시” 절 참조.

30. 또한 제한에 관한 위 “예시” 절 참조.

- 계약국 절차법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이 원칙은 당사자에 대한 재판 문서 송달이라는 특정 영역에 적용될 수 있으나, 제6조제1항이 특정 형태의 문서 송달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Avotiņš v. Latvia* [GC], 2016, § 119).
- 상대 당사자가 통지를 받지 못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나 주장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가 답변이 필요한 문서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단독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APEH Üldözötteinek Szövetsége and Others v. Hungary*, 2000, § 42).
- 하지만, 법원에 제출된 의견이 당사자 중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을 경우, 이는 무기대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며(*Kress v. France* [GC], 2001, § 73), 다만 더 광범위한 개념인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다(*Nideröst-Huber v. Switzerland*, 1997, §§ 23-24; *Clinique des Acacias and Others v. France*, 2005, §§ 36-37).

389. 무기대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 다음 사건에서는 당사자 중 하나가 분명히 불리했기 때문에 무기대등의 원칙이 위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당사자의 항소장이 상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상대 당사자가 항소에 대응할 수 없었다(*Beer v. Austria*, 2001, § 19).
- 시효가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중단되어 상대 당사자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Platakou v. Greece*, 2001, § 48; *Wynen and Centre hospitalier interrégional Edith-Cavell v. Belgium*, 2002, § 32).
- 두 주요 증인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이 허용되었다(*Dombo Beheer B.V. v. the Netherlands*, 1993, §§ 34-35).
- 상대 당사자는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사안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렸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했으며, 법원의 심사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Yvon v. France*, 2003, § 37).
- 상대 당사자가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직위나 직무를 맡고 있었고 법원은 다른 당사자가 관련 문서 증거나 증인이 제시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진지하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게 되었다(*De Haes and Gijssels v. Belgium*, 1997, §§ 54 및 58).
- 행정절차에서 행정기관이 제시한 이유는 너무 간략하고 일반적이어서 상소인이 행정기관의 평가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담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또한 사실심 법정은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Hentrich v. France*, 1994, § 56).
- 당사자 중 하나가 제출한 법적 조력 신청을 거절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법적 조력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신보다 훨씬 부유한 상대 당사자를 상대로 자신을 주장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기할 기회를 박탈했다(*Stee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2005, § 72).
- *Martinie v. France* [GC], (2006, § 50) 사건에서, 재판소는 회계법원 절차에서 정부 변호사의 직위로 인해 소송당사자들 간 균형이 유지되지 않았고 특정 당사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정부 변호사는 상대 당사자와 달리 심리에 출석하여 보고 판사의 의견을 미리 전달받았고, 심리에서 보고 판사의 의견을 직접 들 수 있었으며, 절차에 충분히 참여하여 상대 당사자의 반론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고, 해당 절차가 공개 심리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절차의 불균형이 더욱 기울어졌다.
- 검사가 절차에 개입하여 청구인의 상대 당사자 측 주장을 지지했다(*Menchinskaya v. Russia*, 2009, §§ 35-39).
- 청구인이 응급상황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청구인의 변호사가 심리에서 청구인을 변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심리 연기 요청을 거절했고, 따라서 상대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적절히 대응할 청구인의 권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Vardanyan and Nanushyan v. Armenia*, 2016, §§ 88-90).

390. 그러나 재판소는 당사자의 증인신문에 대한 법원의 차등적인 대우가(한 당사자에게는 선서한 후 증언하도록 하고 다른 당사자에게는 선서하지 않은 채 증언하도록 함) 절차의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차등적인 대우가 제6조제1항과 양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Ankerl v. Switzerland*, 1996, § 38). 또한, 재판소는 해당 사건이 꽤 단순하고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기 때문에, 상대 당사자가 실제로 답변서를 준비할 시간이 더 많았던 상황에서 청구인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Ali Riza v. Switzerland*, 2021, §§ 131-135). 보다 일반적으로, *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절차가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당사자 대립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다른 절차적 보호조치에 의해 충분히 상쇄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51-161).

391. 민사소송의 구체적 사례: 재판소는 민사 당사자의 소송을 수반하는 고소 제도와 부여받은 공권력을 행사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기한 소송을 구별했다(*Guigue and SGEN-CFDT v. France* (dec.), 2004). 그 결과, 항소 절차의 형식 조건과 기한이 다른 점(민사 당사자의 항소 기한이 더 짧음)은 민사절차에서 구제책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무기대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해당 체계의 특수성 비교).

392. 재판소는 또한 검사의 역할과 목적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 가능성은 제한하지 않은 채 민사 당사자의 상소 가능성만을 제한하는 조항이 무기대등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Berger v. France*, 2002, § 38).

393. 검찰과 사인(私人)이 당사자로 대립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검찰은 법질서 보호라는 정당한 이유로 특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민사절차의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Stankiewicz v. Poland*, 2006, §§ 68-69, 제기한 민사절차에서 패소한 검찰이 소송비용 상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

6. 증거 채택 및 사용

394. 일반 원칙:³¹ 협약에는 증거에 대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Mantovanelli v. France*, 1997, § 34). 증거능력과 증거 평가 방법은 일차적으로 국내법과 국내 법원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 문제이다(*García Ruiz v. Spain* [GC], 1999, § 28; *Moreira de Azevedo v. Portugal*, 1990, §§ 83-84). 이 원칙은 증거의 증명력 및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Tiemann v. France and Germany* (dec.), 2000). 또한 제시된 증거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일은 국내 법원의 소관이다(*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2012, § 198). 사실상의 추정이나 법률상의 추정은 모든 법체계에서 인정되며, 협약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추정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개인에게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Lady S.R.L. v. Republic of Moldova*, 2018, § 27). 또한 재판소는 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벗어날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당해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법원이 이전 사건에서 내린 판단을 신뢰하는 당사자는 법적 확실성 원칙에 따라 해당 법원이 기존의 판단과 일치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Siegle v. Romania*, 2013, §§ 38-39 및 *Rozalia Avram v. Romania*, 2014, §§ 42-43).

395. 그러나 협약에 따라 재판소는 증거 입수 방법을 비롯한 절차 전반의 공정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Elsholz v. Germany* [GC], 2000, § 66; *Devinar v. Slovenia*, 2018, § 45). 따라서 재판소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증거가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Blücher v. the Czech Republic*, 2005, § 65). 재판소는 제4심 기관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국내 법원의 판결이 자의적이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국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제6조제1항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Bochan v.*

31. 또한 “제4심”에 관한 절 참조.

Ukraine (no. 2) [GC], 2015, § 61 및 *López Ribalda and Others v. Spain* [GC], 2019, §§ 149, 159-161).

396. 그러므로 국내법의 관점에서 불법으로 획득한 증거 등 특정 유형의 증거가 채택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판소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소는 증거 확보 방법을 포함한 전체 절차가 공정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여기에는 문제의 불법성에 대한 검토와 다른 협약상의 권리가 위반된 경우, 확인된 위반의 성격이 포함된다(형사절차 맥락에서 발전된 이 원칙이 민사사건에 적용된 사건인 *López Ribalda and Others v. Spain* [GC], 2019, § 150 및 §§ 150-152 참조). 인용된 판결에서, 재판소는 제8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획득한 정보를 증거로 채택한 결과 민사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명시했다(§§ 151-152).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직원들을 비밀리에 비디오로 감시한 것이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 사건의 비디오 감시장비가 국내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으며, 국내 법원은 이 문제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비밀리에 이루어진 비디오 감시를 통해 얻은 영상을 민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한 것이 절차의 전반적인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검토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제6조가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54-158).

397.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제8조와 관련하여 이들의 존엄성과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Evers v. Germany*, 2020, §§ 82-84).

398. 국내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청구사항, 주장, 증거를 적절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Van de Hurk v. the Netherlands*, 1994, § 59). 그러므로 소송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Fleischner v. Germany*, 2019, §§ 40-41).

a. 증인의 증거

399. 제6조제1항은 증인을 소환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아니하며, 증인이 제시한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문제이다. 하지만, 증거 채택 방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절차가 제6조제1항의 의미에 따른 “공정한” 절차이어야 한다(*Dombo Beheer B.V. v. the Netherlands*, 1993, § 31).

- 재판소는 적절하게 제출된 증인신문 요청에 답변해야 한다(*Carmel Saliba v. Malta*, 2016, § 77).
- 법원이 증인 소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은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증인 소환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증인 소환 요청을 거절하기로 한 결정이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할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Wierzbicki v. Poland*, 2002, § 45).
- 당사자의 증인신문에 대한 차등적인 대우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Ankerl v. Switzerland*, 1996, § 38, 청구인이 차등적인 대우를 받아 상대 당사자보다 상당히 불리하게 되지 않았다고 재판소가 판결한 사건; 문제가 된 사건의 참여자 두 명 중 한 명만이 증거를 제시하도록 허용된 사건인 *Dombo Beheer B.V. v. the Netherlands*, 1993, § 35 대조(위반)).
- 재판소는 또한 증인이 제시한 증거가 신뢰할 수 없거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Carmel Saliba v. Malta*, 2016, §§ 69-70).
- 증인 반대신문 요청에 대한 거절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할 수 있다(*Carmel Saliba v. Malta*, 2016, § 76).

b. 전문가 의견

400. 전문가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국내법 규정은 소송당사자가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Letinčić v. Croatia*, 2016, § 50). 재판소는 *Hamzagić v. Croatia* (2021, §§ 40-44) 판결에서 관련 일반 원칙을 거듭 명시했다.

401. 전문가 의견 제출 명령 요청에 대한 거절:

- 전문가 의견 제출을 명령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재판소는 절차 전반의 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H. v. France*, 1989, § 61 및 70). 거절 이유는 합리적이어야 한다(*Hamzagić v. Croatia*, 2021, §§ 57-58).
-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에서 심리평가보고서 제출 명령 요청을 거절한 것 또한 사건의 특정 상황에 비추어 검토해야 한다(*Elsholz v. Germany* [GC], 2000, § 66 및 이를 준용한 사례에 관해 *Sommerfeld v. Germany* [GC], 2003, § 71).
- 아동 유괴 사건(*Tiemann v. France and Germany* (dec.), 2000)에서 재판소는 항소법원이 청구인의 2차 전문가 의견 요청을 거절한 사유가 합리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소법원이 요청 거절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는지 검토했다.

402. 전문가 선임: 법원에서 전문가를 선임한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인터뷰에 참석하거나 해당 전문가가 참고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절차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Letinčić v. Croatia*, 2016, § 50; *Devinar v. Slovenia*, 2018, § 46).

403. 협약 제6조제1항은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에게 법원 자체와 동일한 독립성 및 공정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Sara Lind Eggertsdóttir v. Iceland*, 2007, § 47; *Letinčić v. Croatia*, 2016, § 51). 그러나 전문가의 중립성 결여는 절차에서 전문가가 맡은 지위 및 역할과 맞물리며 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고 다른 당사자에게는 불리하도록 절차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된다(*Sara Lind Eggertsdóttir v. Iceland*, 2007, § 53; *Letinčić v. Croatia*, 2016, § 51). 마찬가지로, 전문가는 소송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고 법원의 평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Yvon v. France*, 2003, § 37; *Letinčić v. Croatia*, 2016, § 51). 요컨대,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가가 차지하는 지위, 직무수행 방식, 판사가 전문가의 의견을 평가하는 방식 등은 무기대등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관련 요소이다(*Devinar v. Slovenia*, 2018, § 47).

404. 판사가 잘 알지 못하는 전문분야에 관한 의료전문가 보고서는 사실관계 판단에서 어느 하나가 우세해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전문가 보고서는 필수적인 증거이며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Mantovanelli v. France*, 1997, § 36; *Storck v. Germany*, 2005, § 135).

405. 예를 들어, 장애급여와 관련하여 한 전문기관이 법원에 유일한 전문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독립적인 전문가의 2차 의견이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전문기관의 의견이 법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Devinar v. Slovenia*, 2018, §§ 49-50; 또한 *Hamzagić v. Croatia*, 2021, §§ 45-58 참조). 단,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협약은 분쟁 대상 쟁점의 성격상 전문기관이 사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 국내 법원이 사건 당사자인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전문가 의견에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Letinčić v. Croatia*, 2016, § 61; *Devinar v. Slovenia*, 2018, § 47). 전문가가 사건 당사자인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반대 당사자인 청구인 측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안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러한 의심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Devinar v. Slovenia*, 2018, §§ 48 및 51; 한 국가에서 수급 자격이 인정되었지만 다른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은 장애연금에 관한 사건으로 청구인의 의심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확인된 *Hamzagić v. Croatia*, 2021, §§ 49-52 참조).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한 2차 의견을 요청할 경우, 청구인은 2차 의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Devinar v. Slovenia*, §§ 56-58). 청구인이 전문가 의견에 답변하고 서면 및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자신이 선정한 전문가의 반대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재판소는 제6조가 위반되었다고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56). 또한 여러 전문가가 사안을 검토한 후 서로 의견이 일치했고, 청구인이 이 점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Krunoslava Zovko v. Croatia*, 2017, §§ 48-50).

406. 전문가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Feldbrugge v. the Netherlands* (1986, § 44) 사건(위반)과 *Olsson v. Sweden (no. 1)* (1988, §§ 89) 사건(위반 없음)을 비교한다. 불리한 보고서의 공개 요건에 관해, *L. v. the United Kingdom (dec.)* (1999) 사건을 참조하고, 후견 관련 사건 기록에 포함된 자료를 열람하는 사안에 관해, *Evers v. Germany* (2020, §§ 86-93) 사건을 참조한다. 청구인의 건강상태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의료 전문가 선임에 관해, *Hamzagić v. Croatia* (2021, § 54) 사건을 참조한다.

c. 증거 비공개

407. 특정 사건에서, 한 당사자가 최우선적인 국익을 이유로 당사자주의 절차를 완전히 보장받지 못했다(*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Miryana Petrova v. Bulgaria*, 2016, §§ 39-40).

408. 재판소는 관련 증거 공개에 대한 권리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 중 이 권리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만이 제6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다.

409. 이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의 권리 제한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발생한 어려움이 사법기관의 절차에 의하여 충분히 상쇄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증거를 청구인에게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재판소는 의사결정 절차가 당사자주의 절차와 무기대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최대한 준수하고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최대한 포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결정 절차를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147-49).

410. 인용된 사건에서는 기밀문서의 비밀유지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재판소는 절차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당사자 대립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 다른 절차적 보호조치에 의해 충분히 상쇄되었는지 검토했다(§ 151).

7. 사법적 결정의 논증

411. 제6조제1항에 명시된 보장은 법원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포함한다(*H. v. Belgium*, 1987, § 53). 적절한 이유를 명시한 결정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실제로 고려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더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해준다(*Magnin v. France (dec.)*, 2012, § 29).

412. 국내 법원은 주장을 선택하고 증거를 채택할 때 일정한 판단재량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결정 이유를 제시하여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Suominen v. Finland*, 2003, § 36; *Carmel Saliba v. Malta*, 2016, §§ 73 및 79).

413. 법원이 제시한 이유는 당사자들이 기존 상소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Hirvisaari v. Finland*, 2001, § 30 요약 부분 참조).

414. 제6조제1항은 법원이 결정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나, 이 의무를 모든 주장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García Ruiz v. Spain [GC]*, 1999, § 26; *Perez v. France [GC]*, 2004, § 81; *Van de Hurk v. the Netherlands*, 1994, § 61; *Jahnke and Lenoble v. France (dec.)*, 2000).

415. 이처럼 이유를 제시할 의무의 적용 범위는 결정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Ruiz Torija v. Spain*, 1994, § 29; *Hiro Balani v. Spain*, 1994, § 27), 해당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다양한 의견과 법령 조항, 관습 규칙, 법적 의견, 판결문 발표 및 작성에 관한 계약국 간 차이 등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uiz Torija v. Spain*, 1994, § 29; *Hiro Balani v. Spain*, 1994, § 27). 파기원이 청구인의 항소 이유를 심사하지 않았는지, 또는 파기원이 간단한 논증을 통해 청구인의 상고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상고 이유의 관련성을 평가했는지에 관해, *Tourisme d'affaires v. France*, 2012, §§ 28 이하 및 *Higgins and Others v. France*, 1998, § 43을 참조한다. 법원이 청구인의 청구를 명시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법원이 해당 청구에 대해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사건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 각하로 타당하게 간주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Čivinskaitė v. Lithuania*, 2020, §§ 142-144).

416. 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절차의 결과에 결정적인 경우, 법원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Ruiz Torija v. Spain*, 1994, § 30; *Hiro Balani v. Spain*, 1994, § 28 및 *Petrović and Others v. Montenegro*, 2018, § 43 비교).

417. 그러므로 법원은 다음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 소송당사자들의 핵심 주장(*Buzescu v. Romania*, 2005, § 67; *Donadze v. Georgia*, 2006, § 35) 및 구체적이고 관련이 있으며 중요한 논점(*Mont Blanc Trading Ltd and Antares Titanium Trading Ltd v. Ukraine*, 2021, §§ 82 및 84).
- 협약과 그 의정서가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에 관한 항변: 국내 법원은 이러한 사항을 특별히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Fabris v. France* [GC], 2013, § 72 요약 부분 참조; *Wagner and J.M.W.L. v. Luxembourg*, 2007, § 96). 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이다.

418. 대법원이 단순히 특정 법령 조항을 적용하여 승소 전망이 없음을 이유로 법률문제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더 이상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 제6조제1항은 대법원이 더 자세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Gorou v. Greece (no. 2)* [GC], 2009, § 41; *Burg and Others v. France* (dec.), 2003).

419. 마찬가지로 최고법원의 청구 심리와 최종 판결의 선결 조건인 상고 허가신청 사건에서, 제6조제1항이 상고 허가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Bufferne v. France* (dec.), 2002; *Kukkonen v. Finland (no. 2)*, 2009, § 24). *Gorou v. Greece (no. 4)* (2007, § 22) 사건을 비교한다.

420. 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소법원은 상소 기각 결정을 내릴 때 하급법원의 결정 이유를 단순히 승인할 수 있다(*García Ruiz v. Spain* [GC], 1999, § 26; *Tatishvili v. Russia*, 2007, § 62 대조). 하지만, 공정한 절차의 개념에 따라, 하급법원의 이유를 포함하든 그렇지 않든 결정 이유를 거의 제시하지 않은 국내 법원은 자신의 재판관할 사항에 속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직접 검토해야 하며, 독자적인 의견을 추가하지 않은 채 하급법원의 판결을 단순히 그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Helle v. Finland*, 1997, § 60). 이 요건은 소송당사자가 국내 절차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 구두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경우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ibid.*).

421. 그러나 근거 없는 항소를 걸러낼 책임이 있고 민사절차의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심사할 책임이 있는 항소법원(제2심)은 항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Hansen v. Norway*, 2014, §§ 77- 83). 인용된 사건의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 민사절차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신청을 기각할 때 단순히 “항소심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힘으로써, 항소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로 단순히 민사소송법의 문구를 그대로 제시했다.

422. 그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서명과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는 실제적 흠결이 아닌 형식적 흠결이었으며,

해당 혐결이 확인된 후 신속히 시정됨)을 언급한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은 사건에서 협약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Mugoša v. Montenegro*, 2016, § 63). 하지만, 재판소는 예컨대 범죄와 관련된 민사책임 소송에서 해당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충분한 이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Carmel Saliba v. Malta*, 2016, § 78과 “형사” 문제에서의 보호조치와의 관련성 참조).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결정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의에 대한 거부”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Ballıktaş Bingöllü v. Turkey*, 2021, § 77 및 위 “제4심” 이하 참조)³².

32. “제4심”에 관한 절 참조

B. 공개 심리

협약 제6조제1항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며, 다만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정의의 이익(interests of justice)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하여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리

423. **일반 원칙:**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들은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는 공공의 감시를 벗어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사법 행정으로부터 소송당사자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공개는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제6조제1항의 목적, 즉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Malhous v. the Czech Republic* [GC], 2001, §§ 55-56). 공개 심리는 제6조제1항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만, 공개 심리를 진행할 의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De Tommaso v. Italy* [GC], 2017, § 163). 구두변론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는 절차에서 구두로 증거를 제시할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87). 재판이 공개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절차 전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Axen v. Germany*, 1983, § 28).

424. 정당한 사유에 따라 구두변론에 의한 심리를 생략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Hesse-Anger and Anger v. Germany* (dec.), 2001; *Mirovni Inštitut v. Slovenia*, 2018, § 36), 단심제 절차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는 “구두변론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Göç v. Turkey* [GC], 2002, § 47; *Fredin v. Sweden (no. 2)*, 1994, §§ 21-22; *Allan Jacobsson v. Sweden (no. 2)*, 1998, § 46; *Selmani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7, §§ 37-39). 이러한 상황의 예외적 특성은 전적으로 법률문제에 대한 문제이거나 매우 전문적인 분야의 문제에 관한 절차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절차에서 다루지는 쟁점의 성격에서 발생하며(*Koottummel v. Austria*, 2009, § 19),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빈도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Miller v. Sweden*, 2005, § 29; *Mirovni Inštitut v. Slovenia*, 2018, § 37). 판례법 요약에 대해,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88-190을 참조한다.

425. 제2심 또는 제3심에서 심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심리가 진행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특수성을 들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Helmerts v. Sweden*, 1991, § 36, 그러나 §§ 38-39 대조; *Salomonsson v. Sweden*, 2002, § 36). 따라서 상고 허가 절차와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만을 다루는 절차는 상소인(항소인 또는 상고인)이 항소법원이나 파기원의 심리에 직접 출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다(*Miller v. Sweden*, 2005, § 30). 그러므로 최고법원 절차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26. 재판소는 하급심에서 공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흠결이 항소심에서 진행된 공개 심리를 통해 치유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많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항소 절차의 심사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특히 사실관계 검토와 해당 처벌이 위법행위에 비례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항소법원이 사건 본안을 심사할 수 없는 경우 항소법원에서 공개 심리를 진행했다는 점이 하급법원에서 공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완전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하급심에서 공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흠결이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공개 심리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92 및 이 사건에서 언급된 판례법 참조). 따라서 공개 심리를 열지 않았다고 제기한 청구는 항소기구가 수행한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ibid.*, § 193). 사실심 법원에서 공개 심리가 진행되지 않은 흠결은 항소법원에서 공개 심리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만 시정될 수 있다(*Khrabrova v. Russia*, 2012, § 52).

427. 재판소는 제6조의 보장을 준수하지 않은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수행하는 사법기관에서 대심적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해당 사법기관은 기존 결정에서 제시된 사실 근거가 제6조의 보장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211). 이 사건에서, 징계결정 단계나 사법심사 단계에서 공개 심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사법심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점과 함께 제6조제1항 위반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214).

428. 따라서 정당한 사유에 따라 공개 심리를 생략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90의 판례법 요약 참조), 제6조제1항에 따른 심리를 받을 권리는 적어도 어느 한 심급 법원에서 구두변론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내포한다(*Fischer v. Austria*, 1995, § 44; *Salomonsson v. Sweden*, 2002, § 36).

429. *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2007, § 74) 사건에서, 재판소는 심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제6조제1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심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법원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들이 심리를 요청할 수 있었다는 점, 법원이 심리를 열지 않기로 한 이유를 제시했다는 점, 청구인들이 서면으로 주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ibid.*). 공개 심리를 열지 않은 채 임시 조치를 명령한 사건에 관해, *Helmut Blum v. Austria*, 2016, §§ 70-74를 참조하라.

430. 일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는 것 또한 정당할 수 있다(*Eker v. Turkey*, 2017, § 29). 인용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두 심급에 걸쳐 진행된 절차에서 공개 심리가 수행되지 않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법적 쟁점이 특별히 복잡하지 않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31). 이 사건의 분쟁은 사건 기록이 얼마나 충분한지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될 수 있는 문헌적, 기술적 사안을 다뤘다. 게다가, 두 심급에 걸쳐 진행된 절차는 예외적인 긴급 절차(신문에 대한 반론 보도 명령 신청)를 포함했는데, 재판소는 이 절차가 언론의 적절한 기능이라는 이익에 필수적이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431. 징계 절차의 맥락에서, 재판소가 사건의 쟁점, 즉 관련 당사자의 생명과 경력에 미칠 수 있는 처벌의 영향과 이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구술변론에 의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예외적인 조치여야 하며, 재판소 판례법에 따라 명확히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208-211). 인용된 사건은 판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판례이다. 재판소는 판사에 대해 수행된 징계 절차의 구체적인 맥락을 강조했다(§§ 196, 211 및 214).

432. 재소자에 관한 절차의 경우, 당사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상황 자체는 민사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Igranov and Others v. Russia*, 2018, §§ 34-35). 실무상의 이유를 고려할 수 있지만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피고에게 심리 출석을 요청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Altay v. Turkey (no. 2)*, 2019, § 77). 국내법에 심리 출석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규정되지 않은 경우 재소자가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정에 출두할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78).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문제는 분쟁의 성격상 재소자가 직접 출두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렇다면, 국가기관은 재소자가 민사사건의 심리에 효과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절차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Yevdokimov and Others v. Russia*, 2016, §§ 33-47 - 영상 전송과 다른 유형의 실용적 방법을 이용한 심리 참석에 관한 *Marcello Viola v. Italy* (2006) 사건을 참조;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 및 § 52). 인용된 사건에서, 국내

법원은 국내 법원은 재소자를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에 대한 국내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절차의 당사자인 재소자가 심리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국가기관이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존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52 – 또한 *Altay v. Turkey (no. 2)*, 2019, §§ 78-81 참조).

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다른 국가에서 복역 중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무상의 문제는 심리에 참석할 청구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현대 통신 기술의 활용과 같은 다른 절차적 대안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Pönkä v. Estonia*, 2016, § 39).

433.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사건에서, 대재판부는 심리가 필요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의 몇 가지 예시를 간략히 설명했다(§§ 190-191).

434. *구체적인 적용 사례:*

- 심리가 필요한 신빙성 문제나 경합 사실에 대한 쟁점이 없는 경우 심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과 그 밖의 서면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Döry v. Sweden*, 2002, § 37; *Saccoccia v. Austria*, 2008, § 73; *Mirovni Inštitut v. Slovenia*, 2018, § 37).
- 재판소는 또한 단순히 제한적인 성격의 법률문제를 제기하거나(*Allan Jacobsson v. Sweden (no. 2)*, 1998, § 49; *Valová, Slezák and Slezák v. Slovakia*, 2004, §§ 65-68) 사실문제를 제기한 사건(*Ali Riza v. Switzerland*, 2021, § 117) 또는 별로 복잡하지 않은 법률문제를 제기한 사건(*Varela Assalino v. Portugal (dec.)*, 2002; *Speil v. Austria (dec.)*, 2002)의 경우 심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매우 전문적인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예를 들어, *Ali Riza v. Switzerland*, 2021, § 119). 재판소는 구두변론보다 서면 심사가 더 적절할 수 있는 사회보장 급여 분쟁의 전문적인 성격을 고려했다. 재판소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요구되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심리 수행이 사회보장 절차에 필요한 성실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심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판결했다(*Schuler-Zraggen v. Switzerland*, 1993, § 58; *Döry v. Sweden*, 2002, § 41; 또한 *Salomonsson v. Sweden*, 2002, §§ 39-40 대조).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판결은 일부 논의의 전문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쟁점에 따라 공개적인 심사가 투명성과 소송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조건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8 및 210).
- 이와 대조적으로, 예컨대 법률문제와 중요한 사실문제를 검토하는 경우(*Fischer v. Austria*, 1995, § 44) 또는 국가기관이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확정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Malhous v. the Czech Republic* [GC], 2001, § 60), 분쟁 중인 사실관계를 더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211), 법원이 사건 상황에 대한 청구인의 개인적 의견이 필요하여 청구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청구인의 개인적 상황을 설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Miller v. Sweden*, 2005, § 34 요약 부분 참조; *Andersson v. Sweden*, 2010, § 57) 등은 구두변론에 의한 심리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청구인의 개인적 의견이 필요한 예로는, 법원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의 개인적 고통에 대한 증언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Göç v. Turkey* [GC], 2002, § 51; *Lorenzetti v. Italy*, 2012, § 33) 청구인의 성격, 행동 및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De Tommaso v. Italy* [GC], 2017, § 167; *Evers v. Germany*, 2020, § 98) 또는 법원이 심리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사항에 대한 논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Fredin v. Sweden (no. 2)*, 1994, § 22; *Lundevall v. Sweden*, 2002, § 39).

435. *Põnkä v. Estonia* (2016) 사건은 약식절차 절차(소액사건에 적용) 및 법원이 이러한 서면 절차를 적용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심리 요청을 거절한 것을 다룬 사건이다(§§ 37-40). *Mirovni Inštitut v. Slovenia* (2018) 사건은 입찰 절차에서 입찰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관한 사건이다. 국내 법원은 심리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청구인 기관의 심리 요청을 단순히 처리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는지,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44). 두 사건 모두에서 재판소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제6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Põnkä v. Estonia*, 2016, § 40; *Mirovni Inštitut v. Slovenia*, 2018, § 45). 제시되어야 할 이유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Cimperšek v. Slovenia* 판례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5).

436.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진행된 심리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제재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공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사실관계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청구인에 대한 제재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오명을 씌웠으며 청구인의 직업적 명예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스포츠중재재판소가 공개 심리를 수행하지 않은 점이 제6조제1항에 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Mutu and Pechstein v. Switzerland*, 2018, §§ 182-183).

437. 구두 심리가 진행되는 모든 경우, 당사자들은 구두 의견을 제시하거나(법적문제에 대한 항소와 관련하여 검찰이 예정보다 일찍 심리를 진행하여 법정에 출두할 청구인의 권리를 박탈한 것과 관련하여, *Andrejeva v. Latvia* [GC], 2009, §§ 99-101 참조) 다른 절차 참여 방법을 선택하거나(예를 들어, 대리인을 선임하여) 휴정을 요청하기 위해 심리에 출석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심리에 앞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리 기일과 장소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사건 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 전 심리 통지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법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분석은 단순히 사법 소환장 송달을 언급하는 것 외에 여러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불출석 않은 당사자가 실제로 심리 일정에 대해 실제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통보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국내 법원이 불출석 당사자가 적시에 소환장을 받았는지 여부 및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심리를 연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심리의 원칙을 진정으로 존중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소는 제6조제1항 위반 판결을 내릴 것이다(*Gankin and Others v. Russia*, 2016, §§ 39 및 42 참조, 또한 심리 통지, 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심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에 관한 판례법에서 확립된 원칙에 대한 요약에 관해, §§ 34-38 참조).

438. 어떤 상황에서는 직접 심리에 출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판소는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변호사를 법정에 출석시킨 상태에서 영상 전송(Skype)을 통해 민사절차에 참여한 것이 특정 사건의 상황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와 양립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Jallow v. Norway*, 2021,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 청구인이 당사자로 참가하는 친권 소송절차와 관련된 사건).

439. 언론 및 대중의 방청: 사법기관 절차의 공공성은 공공의 감시를 벗어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사법 행정으로부터 소송당사자를 보호하므로 법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써 공정한 재판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Diennet v. France*, 1995, § 33; *Martinie v. France* [GC], 2006, § 39; *Gautrin and Others v. France*, 1998, § 42; *Hurter v. Switzerland*, 2005, § 26; *Lorenzetti v. Italy*, 2012, § 30). 그러나 제6조제1항은 법원이 해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약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Martinie v. France* [GC], 2006, §§ 40-44). 전체이든 일부이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해당 사건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Lorenzetti v. Italy*, 2012, § 30). 제6조제1항의 문구는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440. 제6조제1항의 문구에 따라,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하여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B. and P. v. the United Kingdom, 2001, § 39; Zagorodnikov v. Russia, 2007, § 26)
-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예로는 부모의 별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관련 소송이나 같은 가족 간의 분쟁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ibid.*, § 38); 그러나 아동의 공공기관 입소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공공의 감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Moser v. Austria*, 2006, § 97). 의사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직업상 비밀유지의무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해당 사건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Diennet v. France*, 1995, § 34; 또한 변호사에 대해 제기된 절차 사례: *Hurter v. Switzerland*, 2005, §§ 30- 32).
- “또는 절차 공개가 정의의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증인의 안전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보와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절차 공개와 공공성을 제한할 수 있다(*B. and P. v. the United Kingdom*, 2001, § 38; *Osinger v. Austria*, 2005, § 45).

441. 재판소는 제6조제1항(위 참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와 주로 관련이 있는 심리 개최에 관한 판례법이 일반 대중에 공개된 심리에 대해서도 유추에 의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내법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 심리를 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국내 법원에서 결정할 쟁점의 성격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공개 심리를 진행할 의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De Tommaso v. Italy* [GC], 2017, §§ 163-67). “특정 주제가 공공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닌 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매우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를 비롯한 예외적인 상황은 공개 심리를 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Lorenzetti v. Italy*, 2012, § 32).

442. 사건 기록에 기밀 정보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공개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특정 절차에서 일반인을 배제하기 전에 해당 금지 조치가 공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추구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엄격하게 필요한 것으로 이 조치를 제한해야 한다(*Nikolova and Vandova v. Bulgaria*, 2013, §§ 74-77, 국가기밀로 분류된 문서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 관한 사건; 또한 관련 원칙에 관해, *Vasil Vasilev v. Bulgaria*, 2021, §§ 105-106참조). 변호사의 전화통화 감청과 관련된 손해배상 절차에도 유사한 접근법이 적용된다(*ibid.*, §§ 107-109).

443. 마지막으로, 심리를 열지 않은 것은 절차의 후속 단계에서 충분히 시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Malhous v. the Czech Republic* [GC], 2001, § 62; *Le Compte, Van Leuven and De Meyere v. Belgium*, 1981, §§ 60-61; *Diennet v. France*, 1995, § 34).

444.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의 포기/공개 심리 출석: 제6조제1항의 문언과 취지 모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명백하게 또는 묵시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포기는 명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중요한 공익에 반해서도 안 된다(*Le Compte, Van Leuven and De Meyere v. Belgium*, 1981, § 59; *Håkansson and Stureson v. Sweden*, 1990, § 66; *Exel v. the Czech Republic*, 2005, § 46). 출두 소환장은 적시에 송달되어야 한다(*Yakovlev v. Russia*, 2005, §§ 20-22; *Dilipak and Karakaya v. Turkey*, 2014, §§ 79-87).

445.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의 포기에 적용되는 조건: 관련 당사자는 자발적으로(*Albert and Le Compte v. Belgium*, § 35) 동의해야 한다(*Le Compte, Van Leuven and De Meyere v. Belgium*, 1981, § 59). 이 권리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Le Compte, Van Leuven and De Meyere v. Belgium*, 1981, § 59). 그러나 재판소가 최근 *Vasil Vasilev v. Bulgaria* (2021, § 111) 사건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권리의 포기는 명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Albert and Le Compte v. Belgium*, 1983, § 35; *Håkansson and Stureson v. Sweden*, 1990, § 67), 중요한 공익에 반해서도 안 된다(*Håkansson and Stureson v. Sweden*, § 66).

446. 공개 심리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관련 당사자가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관련 국내법을 참작해야 한다(*Göç v. Turkey* [GC], 2002, § 48 요약 부분 참조; *Exel v. the Czech Republic*, 2005, § 47; 또한 *Vasil Vasilev v. Bulgaria*, 2021, § 111 참조). 청구인이 공개 심리를 요청했는지 여부는 관련 국내법에서 그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경우 아무런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Eisenstecken v. Austria*, 2000, § 33).

447. 예: 징계 절차에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의 포기: *Le Compte, Van Leuven and De Meyere v. Belgium*, 1981, § 59; *H. v. Belgium*, 1987, § 54.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의 명백한 포기: *Schuler-Zraggen v. Switzerland*, 1993, § 58; 또한 *Exel v. the Czech Republic*, 2005, §§ 48-53; 및 *Vasil Vasilev v. Bulgaria*, 2021, § 111 대조.

2. 선고

448. 사법기관 절차의 공공성은 공공의 감시를 벗어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사법 행정으로부터 소송당사자를 보호하며 자의성을 방지하는 기본적 보호조치를 구성한다(*Fazliyski v. Bulgaria*, 2013, § 69, 기밀 사건 관련 - 위반 판결). 사법기관 절차의 공공성은 또한 법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수단이다(*Pretto and Others v. Italy*, 1983, § 21). 테러 활동과 관련된 사건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국가안보 사건일지라도, 일부 국가는 결정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을 우려하여 사법적 결정의 일부를 비밀로 분류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사법적 결정의 공개와 같은 근본적인 절차적 보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서도 정당한 안보 우려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보여준다(*Fazliyski v. Bulgaria*, 2013, § 69).

449. 제6조제1항에는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며”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개 법정에서 낭독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판소는 “공개적인 판결이 되도록 하는 다른 방법” 또한 제6조제1항과 양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Moser v. Austria*, 2006, § 101).

450. 국내법에 규정된 공개 형식이 제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판결의 공개 선고 요건과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에서 국내법에 따른 판결에 대한 공개 형식은... 해당 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6조제1항의 대상과 목적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Pretto and Others v. Italy*, 1983, § 26; *Axen v. Germany*, 1983, § 31). 이러한 맥락에서 제6조제1항이 추구하는 목적, 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대한 공공의 감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달성되어야 하며, 절차 전반에 걸쳐 달성되어야 한다(*ibid.*, § 32).

451.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52. 다음 사례에서는 판결이 공개 선고 이외의 방법으로 충분히 공개되었다.

- 법률문제에 대한 상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고하지 않은 상급법원: 파기원의 판결 선고 방식이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질서에서 수행된 모든 절차와 국내법 질서에서 해당 법원이 담당하는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Pretto and Others v. Italy*, 1983, § 27). 제6조제1항이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결할 때, 재판소는 절차의 단계, 상급법원이 수행한 심사(법률문제에 대한 심사로 한정됨), 상급법원이 청구인의 사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채 하급법원의 결정을 확정판결 선고의 내용을 특히 중요하게 고려했다. 재판소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후, 판결문이 법원 사무국에 보관되어 모든 사람이 판결문 전문을 열람할 수 있었던 경우(*ibid.*, §§ 27-28), 또는 공개적으로 선고된 하급법원 판결을 상급법원이 심리를 열지 않은 채 확정 판결을 내린 경우(*Axen v. Germany*, 1983, § 32) 공개 선고 요건이 준수되었다고 판결했다.

- 사실심 법원: 심리를 진행했으나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하지 않은 제1심 법원의 결정을 항소법원이 간략히 서술한 후 제1심 법원의 결정을 확정하는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이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Lamanna v. Austria*, 2001, §§ 33-34).
- 아동의 거주지를 정하는 문제에 관한 사건: 국내기관이 아동과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의의 이익을 해하지 않기 위해 집무실에서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지만,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상당 부분 저해할 것이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판결의 공개 선고 요건은 이해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결문 전문을 참조하거나 그 사본을 입수할 수 있으며, 특별히 관심을 갖는 판결문의 전문이 정기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대중은 법원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에 접근하는 방법과 이러한 사건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B. and P. v. the United Kingdom*, 2001, § 47).

453. 다음 사건에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하지 않은 것이 협약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 부모와 공공기관 간 아동의 거주지 결정 문제에 관한 사건: 사건에서 법적 이익이 있음을 확립한 당사자가 사건 기록과 특별히 관심을 갖는 판결문(대부분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 선고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Moser v. Austria*, 2006, §§ 102-03).
-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이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를 집무실에서 검토한 후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고하거나 결정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공개되도록 보장되지 않은 경우 협약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Werner v. Austria*, 1997, §§ 56-60).
- 손해배상 청구를 비공개로 검토한 후 대중이 어떤 형태로든 접근할 수 없었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사자에게 판결을 전달한 경우(소송당사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협약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Vasil Vasilev v. Bulgaria*, 2021, §§ 116-117).

454. 판결의 주문 부분만 공개 낭독된 사례: 결정 이유를 명시한 판결문 중 낭독되지 않은 부분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해당 판결이 공공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공개의 형식을 검토해야 한다(*Ryakib Biryukov v. Russia*, 2008, §§ 38-46 및 §§ 33-36에 인용된 참고 판례 참조). 청구인의 청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대중이 열람할 수 없었던 경우, 제6조제1항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ibid.*, § 45).

C. 절차의 기간

협약 제6조제1항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 의 결정을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55. 협약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함에 있어, 사법절차의 효과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지연을 유발하지 않은 채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H. v. France*, 1989, § 58; *Katte Klitsche de la Grange v. Italy*, 1994, § 61).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국은 국내 법원이 협약의 다양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내법 체계를 구성할 의무가 있다.

456. 재판소는 사법절차의 효과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지연을 유발하지 않은 채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224). 재판소는 특정 계약국의 관행이 협약과 일치하지 않아 “합리적인 기간” 요건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이것이 “제6조제1항 위반의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Bottazzi v. Italy* [GC], 1999, § 22; *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225). 집행 절차의 기간에 관해서는, “판결 집행” 절을 참조한다.

1. 절차의 기간에 대한 판단

457. 관련 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기간은 일반적으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시작된다(*Poiss v. Austria*, 1987, § 50; *Bock v. Germany*, 1989, § 35). 단,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행정기관에 먼저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관련 기간은 이러한 의무적 예비 행정절차 기간을 포함한다(*Kress v. France* [GC], 2001, § 90; *König v. Germany*, 1978, § 98; *X v. France*, 1992, § 31; *Schouten and Meldrum v. the Netherlands*, 1994, § 62).

458.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는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절차 개시 명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합리적인 기간이 시작될 수 있다(*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2007, § 65; *Golder v. the United Kingdom*, 1975, § 32 요약 부분 참조; *Erkner and Hofauer v. Austria*, 1987, § 64).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예컨대 절차의 선행 조건으로 특정 예비단계가 요구될 때 인정된 바 있다(*Blake v. the United Kingdom*, 2006, § 40). 민사 당사자의 청구 사건에 관해서는,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207-208; *Arnoldi v. Italy*, 2017, §§ 25-40; and *Koziy v. Ukraine*, 2009, § 25를 참조한다.

459. 완전한 사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사법기관의 감독과 긴밀히 연계된 절차에도 제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공증인 2명이 입회한 가운데 비논쟁적으로 수행되었으나 법원의 명령과 승인을 받은 재산 분할 절차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Siegel v. France*, 2000, §§ 33-38).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의 계산에서 공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수행한 절차의 기간이 반영되었다.

460. 기간 종료 시점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간은 상소절차를 포함해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전체 기간을 포함하며(*König v. Germany*, 1978, § 98 요약 부분 참조) 분쟁을 해결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종료된다(*Poiss v. Austria*, 1987, § 50).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 요건은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며, 본안 판결 이후의 후속 단계를 제외하지 않는다(*Robins v. the United Kingdom*, 1997, §§ 28-29). 이는 기간 계산 시 관련 비용과 경비의 최종 결정 절차에 대한 기간이 포함될 것임을 의미한다(*Čičmanec v. Slovakia*, 2016, § 50).

461. 그러므로 관련 기간의 계산 목적상 법원이 내린 판결 집행은 절차의 필수 요소로 간주한다(*Martins Moreira v. Portugal*, 1988, § 44; *Silva Pontes v. Portugal*, 1994, § 33; *Di Pede v. Italy*, 1996, § 24). 절차의 기간은 절차에서 주장된 권리가 실제로 효력을 갖기 전까지 중단되지 않는다(*Estima Jorge v. Portugal*, 1998, §§ 36-38).

462. 헌법재판소가 본안을 심사할 권리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일반법원에 제기된 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 절차 기간 또한 반영된다(*Deumeland v. Germany*, 1986, § 77; *Pammel v. Germany*, 1997, §§ 51-57; *Süßmann v. Germany*, 1996, § 39).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건을 심리할 의무를 일반법원에 적용되는 의무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ibid.*, § 56; *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 109).

463. 마지막으로, 제3자의 민사절차 참가와 관련하여, 청구인 자신이 당사자로 국내 절차에 참여한 경우 관련 기간은 청구인이 절차에 참여한 시점부터 시작되지만,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절차 전체 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16, § 220).

2. 합리적인 기간 요건에 대한 심사

a. 원칙

464. 회원국의 의무: 회원국은 국내 법원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받을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Comingersoll S.A. v. Portugal* [GC], 2000, § 24; *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142).

465. 특정 사건에 대한 심사: 제6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따른 절차 기간의 합리성은 특정 상황에 따라 각 사건에 대해 심사를 수행해야 하며(*Frydlender v. France* [GC], 2000, § 43), 이 경우 사건 전반에 대한 심사가 요구될 수 있다(*Comingersoll S.A. v. Portugal* [GC], 2000, § 23;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214; *Obermeier v. Austria*, 1990, § 72).

466. 전체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König v. Germany*, 1978, § 98 요약 부분 참조).

- 각 지연 사례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별 지연을 누적적으로 모두 합할 경우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Deumeland v. Germany*, 1986, § 90). 따라서 절차의 각 단계에 소요된 기간(약 1년 6개월) 자체로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더라도, 이를 모두 합한 전체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었을 수 있다(*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2017, §§ 210-11).
- 전체 절차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을 경우, 절차의 특정 단계에서의 지연이 허용될 수 있다(*Preto and Others v. Italy*, 1983, § 37).
- 국가기관은 절차적 흠결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동안에도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했을 수 있다(*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213).
- 아무런 설명도 제시되지 않은 채 “절차가 오랜 기간 중단”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Beaumartin v. France*, 1994, § 33).

467. 절차에 소요된 기간의 합리성에 대한 심사에서는 해당 절차의 특수성 또한 고려할 수 있다(22년 넘게 진행된 상속인들 간 피상속인의 재산 분할 절차에 관해, *Omdahl v. Norway*, 2021, §§ 47 및 54-55 참조).

468. 제6조제1항이 금지명령을 포함한 예비 절차나 임시 조치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특정 조건의 이행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Micallef v. Malta* [GC], 2009, §§ 83-86).³³

469.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결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국내기관에 책임이 있는 절차의 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2017, § 208; *Pafitis and Others v. Greece*, 1998, § 95).

33. “범위”에 관한 절 참조

470. 국가가 합리적인 기간 원칙이 위반된 상황에 대해 보상적 구제 조치를 도입했으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구제 조치가 협약 제34조의 목적상 청구인의 “피해자” 지위를 박탈하지 않은 경우, 이는 합리적인 기간의 초과에 따른 제6조제1항 위반 상황의 “가중사유”에 해당한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225).

b. 기준

471. 절차의 기간이 합리적이었는지는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사건의 복잡성, 청구인과 관련 기관의 행위, 분쟁에서의 청구인의 쟁점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Comingersoll S.A. v. Portugal* [GC], 2000; *Frydlender v. France* [GC], 2000, § 43; *Sürmeli v. Germany* [GC], 2006, § 128; *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143;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209).

i. 사건의 복잡성

472. 사건의 복잡성은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모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Papachelas v. Greece* [GC], 1999, § 39; *Katte Klitsche de la Grange v. Italy*, 1994, § 55). 예를 들어, 사건의 복잡성은 여러 당사자의 사건 참가(*H. v. the United Kingdom*, 1987, § 72) 또는 획득해야 하는 증거의 다양성(*Humen v. Poland* [GC], 1999, § 63)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국내 판례가 부족하거나 유럽법 해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결을 받을 필요성 때문에 사건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2017, § 212).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사건에서, 민사 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절차는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절차였는데, 이 사건이 복잡했던 이유는 많은 전문가 보고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210).

473. 국내 절차의 복잡성은 절차에 소요된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Tierce v. San Marino*, 2003, § 31). 그러나 재판소는 파산 절차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약 25년 6개월의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Cipolletta v. Italy*, 2018, § 44).

474. 사건 자체가 특별히 복잡하지 않더라도 국내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결여는 사건 심사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절차가 지연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150).

ii. 청구인의 행위

475. 제6조는 청구인이 사법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국내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완전히 거쳤다는 점(*Erkner and Hofauer v. Austria*, 1987, § 68) 또는 건강 상태로 인한 결과(*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211)에 대해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절차의 기간이 증가한 책임을 국가기관에 물어서는 안 된다(*ibid.*).

476. 관련 당사자는 자신과 관련된 절차적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연 전술을 삼가고 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국내법 규정 범위 내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Unión Alimentaria Sanders S.A. v. Spain*, 1989, § 35).

477. 청구인의 행위는 피청구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며, 제6조제1항에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인의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Poiss v. Austria*, § 57; *Wiesinger v. Austria*, 1991, § 57; *Humen v. Poland* [GC], 1999, § 66). 청구인의 행위 그 자체는 국가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478. 청구인의 행위와 관련된 일부 사례:

- 당사자들이 법원이 요구한 제출물을 신속히 제출하지 않은 점은 절차가 지연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Vernillo v. France*, 1991, § 34)
- 빈번한/반복적인 변호사 교체(*König v. Germany*, 1978, § 103)
-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청이나 누락(*Acquaviva v. France*, 1995, § 61) 또는 절차적 단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Keaney v. Ireland*, 2020, § 95); 또한 *Sürmeli v. Germany* [GC], 2006, § 131 참조)
- 화해를 위한 시도(*Pizzetti v. Italy*, 1993, § 18; *Laino v. Italy* [GC], 1999, § 22)
-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절차(*Beaumartin v. France*, 1994, § 33)
- 수많은 신청과 기타 청구를 제시한 사실을 통해 입증된 소송을 일삼는 행위(*Pereira da Silva v. Portugal*, 2016, §§ 76-79)

479. 피고의 행위에 대해 국내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당사자 중 하나가 지연 전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할 국가기관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Mincheva v. Bulgaria*, 2010, § 68).

iii. 관할 기관의 행위

480. 국가는 모든 국가기관, 즉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Martins Moreira v. Portugal*, 1988, § 60). 국가에 책임이 귀속되는 지연만이 “합리적인 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결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Humen v. Poland* [GC], 1999, § 66; *Buchholz v. Germany*, 1981, § 49; *Papageorgiou v. Greece*, 1997, § 40). 재판소는 전체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이는 국가기관이 절차 지연을 초래한 특정 절차적 흠결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제6조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심사할 의무를 이행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211).

481. 당사자들이 절차적 주도권을 가진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법체계에서조차 당사자들의 태도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었더라도 제6조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신속한 재판을 보장할 법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Sürmeli v. Germany* [GC], 2006, § 129; *Pafitis and Others v. Greece*, 1998, § 93; *Tierce v. San Marino*, 2003, § 31).

482. 이는 절차에서 전문가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건의 준비와 신속한 재판 진행에 대한 책임은 판사에게 있다(*Sürmeli v. Germany* [GC], 2006, § 129; *Capuano v. Italy*, 1987, §§ 30-31; *Versini v. France*, 2001, § 29).

483.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의무는 헌법재판소에도 적용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의무를 일반법원에 적용되는 의무와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므로 단순히 헌법재판소 사건 목록에 등재된 시간 순서 외에도 사건의 성격과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중요성과 같은 다른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 109; *Süßmann v. Germany*, 1996, §§ 56-58; *Voggenreiter v. Germany*, 2004, §§ 51-52 비교). 또한, 제6조가 사법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제6조는 적절한 사법 집행이라는 더 일반적인 원칙도 강조하고 있다(*Von Maltzan and Others v. Germany* (dec.) [GC], 2005, § 132). 그렇더라도, 만성적인 업무 부담은 과도하게 지연된 절차 기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Probstmeier v. Germany*, 1997, § 64). 헌법재판소 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된 사례에 관해서는, *Project-Trade d.o.o. v. Croatia*, 2020, §§ 101-102를 참조한다.

484. 회원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법적 결정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내법 체계를 구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도한 업무 부담은 고려해야 할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Vocaturò v. Italy*, 1991, § 17; *Cappello v. Italy*, 1992, § 17). 그렇지만, 국가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시정조치를 타당하게 도입할 경우 경우 일시적으로 지연된 사건 처리는 국가의 책임을 유발하지 않는다(*Buchholz v. Germany*, 1981, § 51). 임시방편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에는 사건이 접수된 순서가 아니라 긴급성과 중요성, 특히 관련 당사자의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따라 특정 순서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장기화되고 구조적 조직의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러한 방법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되며 국가는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Zimmermann and Steiner v. Switzerland*, 1983, § 29; *Guincho v. Portugal*, 1984, § 40). 사건 처리 지연이 일상화되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절차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Unión Alimentaria Sanders S.A. v. Spain*, 1989, § 40).

485. 그 밖에도, 회원국은 미결 사건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건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개혁을 도입했다고 해서 절차 지연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Fisanotti v. Italy*, 1998, § 22). 이와 관련하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이 도입한 국내 구제 조치의 적절성 등은 재판소가 확립한 원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78 이하 및 223). 특정 법원의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사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은 체약국이 협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Bara and Kola v. Albania*, 2021, §§ 68-71).

486. 국내 법원이 청구인의 정신상태에 초점을 맞춰 지나치게 엄격히 심사를 수행한 사건에서 합리적인 기간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점 또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내렸다. 국내 법원은 청구인의 정신상태가 건강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5건의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건의 후견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정신상태를 계속 의심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송은 9년 넘게 진행되었다(*Bock v. Germany*, 1989, § 47).

487. 변호사가 변호사협회에서 제명된 것 자체는 체약국에 “합리적인 기간” 요건에 대한 책임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요건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가 그 결과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Papageorgiou v. Greece*, 1997, § 47).

488. 판사가 반복적으로 교체되어 새로 사건을 맡은 판사마다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사건 진행이 지연된 경우, 국가는 사법 행정의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간 요건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Lechner and Hess v. Austria*, 1987, § 58).

489. 국내 법원이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것은 재판소가 담당하는 역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판소는 기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판결이 대개 하급법원이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내려지며, 이러한 판결이 반복되는 사법제도의 결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2016, § 147).

iv. 분쟁의 쟁점

490. 사건의 성격상 특히 긴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범주의 예:

- 민사상의 지위와 능력에 관한 사건인 경우 특히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Bock v. Germany*, 1989, § 49; *Laino v. Italy* [GC], 1999, § 18; *Mikulić v. Croatia*, 2002, § 44).
-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건은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하며(*Hokkanen v. Finland*, 1994, § 72; *Niederböster v. Germany*, 2003, § 39), 시간이 흐를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Tsikakis v. Germany*, 2011, §§ 64 and 68). 마찬가지로, 부모의 책임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건은 특히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Laino v. Italy* [GC], 1999, § 22; *Paulsen-Medalen and Svensson v. Sweden*, 1998, § 39).

- 고용 분쟁은 그 성격상 신속히 결정되어야 한다(*Frydlender v. France* [GC], 2000, § 45; *Vocaturò v. Italy*, 1991, § 17 및 *Ruotolo v. Italy*, 1992, § 17; 또한 *Bara and Kola v. Albania*, 2021, § 72의 참고 판례 참조). 해당 쟁점이 자유 전문직 접근에 관한 것인지(*Thlimmenos v. Greece* [GC], 2000, §§ 60 및 62), 청구인의 직업적 생계 수단 전체에 관한 것인지(*König v. Germany*, 1978, § 111), 청구인의 직업 지속 여부에 관한 것인지(*Garcia v. France*, 2000, § 14), 청구인의 해고(*Frydlender v. France* [GC], 2000, § 45; *Buchholz v. Germany*, 1981, § 52), 청구인의 정직(*Obermeier v. Austria*, 1990, § 72), 전근(*Sartory v. France*, 2009, § 34) 또는 복직(*Ruotolo v. Italy*, 1992, § 117) 등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또는 보상청구 금액이 청구인에게 매우 중요한 경우인지(*Doustaly v. France*, 1998, § 48) 등의 사항과 관계없이 신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이 범주에는 연금에 대한 분쟁이 포함된다(*Borgese v. Italy*, 1992, § 18). 승진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Bara and Kola v. Albania*, 2021, § 72 를 참조한다.
- “난치병”을 앓고 있어 “기대수명이 감소한” 청구인의 사건을 다루는 국가기관은 특별히 신속하게 사건을 심사해야 한다(*X v. France*, 1992, § 47; *A and Others v. Denmark*, 1996, §§ 78-81; *Pailot v. France*, 1998, § 68).

491. 기타 판례:

- 피해자가 경찰관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사건을 특히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Caloc v. France*, 2000, § 120).
- 청구인의 장애연금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건에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절차는 청구인에게 특히 중요했으며, 국내기관이 특히 신속하게 심사해야 할 정당한 근거에 해당했다(*Mocié v. France*, 2003, § 22).
- 신체상해를 당해 민사 당사자로서 소송 참가를 신청할 때 65세였던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쟁점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이 특히 신속하게 심사할 것이 요구되었다(*Codarcea v. Romania*, 2009, § 89).
- 청구인에 대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 쟁점이 교육에 대한 권리일 수도 있다(*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 109).

492. 반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213) 또는 *Omdahl v. Norway*, 2021, §§ 63-6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속인들 간 피상속인의 재산 분할에 관한 청구 등은 특히 신속한 심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참조는 유럽인권재판소 재판부가 본안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단 중 이 개정판 발간 당시 협약 제44조에서 의미하는 최종확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래 목록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에는 "(a) 당사자가 사건을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경우, (b) 당사자가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c) 대재판부의 패널(panel)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부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재판부의 패널이 회부 요청을 수락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후 대재판부의 판단이 최종판단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의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y), 위원회의 판례(결정 및 보고서), 그리고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두 공식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또한 30개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된 많은 주요 판례의 번역본과 제3자가 작성한 약 100개의 온라인 판례집에 대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A—

A. v. the United Kingdom, no. 35373/97, ECHR 2002-X
A.K. v. Liechtenstein, no. 38191/12, 9 July 2015
A. and Others v. Denmark, 8 February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
Acar and Others v. Turkey (dec.), nos. 26878/07 and 32446/07, 12 December 2017
Áćimović v. Croatia, no. 61237/00, ECHR 2003-XI
Acquaviva v. France, 21 November 1995, Series A no. 333-A
Adorisio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dec.), no. 47315/13 and 2 others, 17 March 2015
Aerts v. Belgium, 30 Jul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
Agrokompleks v. Ukraine, no. 23465/03, 6 October 2011
Air Canada v. the United Kingdom, 5 May 1995, Series A no. 316-A
Airey v. Ireland, 9 October 1979, Series A no. 32
Ait-Mouhoub v. France, 28 Octo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II
Akashev v. Russia, no. 30616/05, 12 June 2008
Aksoy v. Turkey, 18 Dec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I
Alaverdyan v. Armenia (dec.), no. 4523/04, 24 August 2010
Al-Adsani v. the United Kingdom [GC], no. 35763/97, ECHR 2001-XI
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no. 5809/08, ECHR 2016
Alatulkkila and Others v. Finland, no. 33538/96, 28 July 2005
Albert and Le Compte v. Belgium, 10 February 1983, Series A no. 58
Albu and Others v. Romania, nos. 34796/09 and 63 others, 10 May 2012

Aleksandar Sabev v. Bulgaria, no. 43503/08, 19 July 2018
Alexandre v. Portugal, no. 33197/09, 20 November 2012
Alexandrescu and Others v. Romania, nos. 56842/08 and 7 others, 24 November 2015
Ali Rıza and Others v. Turkey, nos. 30226/10 and 4 others, 28 January 2020
Ali Rıza v. Switzerland, no. 74989/11, 13 July 2021
Allan Jacobsson v. Sweden (no. 2), 19 Februar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
Alminovich v. Russia (dec.), no. 24192/05, 20 October 2019
Altay v. Turkey (no. 2), no. 11236/09, 9 April 2019
Amat-G Ltd and Mebaghishvili v. Georgia, no. 2507/03, ECHR 2005-VIII
Anagnostopoulos and Others v. Greece, no. 39374/98, ECHR 2000-XI
Anđelković v. Serbia, no. 1401/08, 9 April 2013
Andersson v. Sweden, no. 17202/04, 7 December 2010
Andrejeva v. Latvia [GC], no. 55707/00, ECHR 2009
Andret and Others v. France (dec.), no. 1956/02, 25 May 2004
Andronicou and Constantinou v. Cyprus, 9 Octo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
Andronikashvili v. Georgia (dec.), no. 9297/08, 22 June 2010
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no. 73049/01, ECHR 2007-I
Ankarcrona v. Sweden (dec.), no. 35178/97, ECHR 2000-VI
Ankerl v. Switzerland, 23 Octo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
Annoni di Gussola and Others v. France, nos. 31819/96 and 33293/96, ECHR 2000-XI
Apay v. Turkey, no. 3964/05, 11 December 2007
APEH Üldözötteinek Szövetsége and Others v. Hungary, no. 32367/96, ECHR 2000-X
Apostol v. Georgia, no. 40765/02, ECHR 2006-XIV
Argyrou and Others v. Greece, no. 10468/04, 15 January 2009
Arléwin v. Sweden, no. 22302/10, 1 March 2016
Arnoldi v. Italy, no. 35637/04, 7 December 2017
Arribas Antón v. Spain, no. 16563/11, 20 January 2015
Arrozpide Sarasola and Others v. Spain, nos. 65101/16 and 2 others, 23 October 2018
Arvanitakis v. France (dec.), no. 46275/99, ECHR 2000-XII
Arvanitakis and Others v. Greece (dec.), no. 21898/10, 26 August 2014
Ashingdane v. the United Kingdom, 28 May 1985, Series A no. 93
Asnar v. France (no. 2), no. 12316/04, 18 October 2007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nos. 56176/18 and 5 others, 1 July 2021
Astikos Kai Paratheristikos Oikodomikos Synetairismos Axiomatikon and Karagiorgos v. Greece (dec.), nos. 29382/16 and 489/17, 9 May 2017
Astikos Oikodomikos Synetairismos Nea Konstantinoupolis v. Greece (dec.), no. 37806/02, 20 January 2005
Atanasova v. Bulgaria, no. 72001/01, 2 October 2008
Atanasov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36815/03, 14 January 2010
Ateş Mimarlık Mühendislik A.Ş. v. Turkey, no. 33275/05, 25 September 2012
Athanassoglou and Others v. Switzerland [GC], no. 27644/95, ECHR 2000-IV
Augusto v. France, no. 71665/01, 11 January 2007
Aviakompaniya A.T.I., ZAT v. Ukraine, no. 1006/07, 5 October 2017
Avotiņš v. Latvia [GC], no. 17502/07, 23 May 2016
Axen v. Germany, 8 December 1983, Series A no. 72
Azienda Agricola Silverfunghi S.a.s. and others v. Italy, nos. 48357/07 and 3 others, 24 June 2014
Azzopardi and Others v. Malta (dec.), nos. 16467/17 and 24115/17, 12 March 2019

—B—

B. and P. v. the United Kingdom, nos. 36337/97 and 35974/97, ECHR 2001-III
Bacaksız v. Turkey, no. 24245/09, 10 December 2019
Baka v. Hungary [GC], no. 20261/12, ECHR 2016
Bakan v. Turkey, no. 50939/99, 12 June 2007
Baljak and Others v. Croatia, no. 41295/19, 25 November 2021
Bara and Kola v. Albania, nos. 43391/18 and 17766/19, 12 October 2021
Bąkowska v. Poland, no. 33539/02, 12 January 2010
Ballıktaş Bingöllü v. Turkey, no. 76730/12, 22 June 2021
Balmer-Schafroth and Others v. Switzerland, 26 August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V
Barać and Others v. Montenegro, no. 47974/06, 13 December 2011
Barik Edidi v. Spain (dec.), no. 21780/13, 26 April 2016
Baydar v. the Netherlands, no. 55385/14, 24 April 2018
Bayer v. Germany, no. 8453/04, 16 July 2009
Beaumartin v. France, 24 November 1994, Series A no. 296-B
Beer v. Austria, no. 30428/96, 6 February 2001
Beg S.p.a. v. Italy, no. 5312/11, 20 May 2021
Beian v. Romania (no. 1), no. 30658/05, ECHR 2007-V (extracts)
Běleš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no. 47273/99, ECHR 2002-IX
Bellet v. France, 4 December 1995, Series A no. 333-B
Bellizzi v. Malta, no. 46575/09, 21 June 2011
Beneficio Cappella Paolini v. San Marino, no. 40786/98, ECHR 2004-VIII (extracts)
Benthem v. the Netherlands, 23 October 1985, Series A no. 97
Berger v. France, no. 48221/99, ECHR 2002-X (extracts)
Bertuzzi v. France, no. 36378/97, ECHR 2003-III
Beshiri and Others v. Albania (dec.), no. 29026/06, 17 March 2020
Beuze v. Belgium [GC], no. 71409/10, 9 November 2018
Biagioli v. San Marino (dec.), no. 8162/13, 8 July 2014
Bilan v. Croatia (dec.), no. 57860/14, 20 October 2020
Bilgen v. Turkey, no. 1571/07, 9 March 2021
Blake v. the United Kingdom, no. 68890/01, 26 September 2006
Blücher v. the Czech Republic, no. 58580/00, 11 January 2005
Bochan v. Ukraine, no. 7577/02, 3 May 2007
Bochan v. Ukraine (no. 2) [GC], no. 22251/08, ECHR 2015
Bock v. Germany, 29 March 1989, Series A no. 150
Borgese v. Italy, 26 February 1992, Series A no. 228-B
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CEDH 2005-VI
Bottazzi v. Italy [GC], no. 34884/97, ECHR 1999-V
Bouilloc v. France (dec.), no. 34489/03, 28 November 2006
Boulois v. Luxembourg [GC], no. 37575/04, ECHR 2012
British-American Tobacco Company Ltd v. the Netherlands, 20 November 1995, Series A no. 331
Brualla Gómez de la Torre v. Spain, 19 Dec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I
Brudnicka and Others v. Poland, no. 54723/00, ECHR 2005-II
Brumărescu v. Romania [GC], no. 28342/95, ECHR 1999-VII
Bryan v. the United Kingdom, 22 November 1995, Series A no. 335-A
Buchholz v. Germany, 6 May 1981, Series A no. 42
Bufferne v. France (dec.), no. 54367/00, ECHR 2002-III (extracts)
Buj v. Croatia, no. 24661/02, 1 June 2006
Burdov v. Russia, no. 59498/00, ECHR 2002-III

Burdov v. Russia (no. 2), no. 33509/04, ECHR 2009
Burg and Others v. France (dec.), no. 34763/02, ECHR 2003-II
Bursa Barosu Başkanlığı and Others v. Turkey, no. 25680/05, 19 June 2018
Buscemi v. Italy, no. 29569/95, ECHR 1999-VI
Buzescu v. Romania, no. 61302/00, 24 May 2005

—C—

C.G.I.L. and Cofferati v. Italy (no. 2), no. 2/08, 6 April 2010
C.N. v. Luxembourg, no. 59649/18, 12 October 2021
Caloc v. France, no. 33951/96, ECHR 2000-IX
Camelia Bogdan v. Romania, no. 36889/18, 20 October 2020
Canela Santiago v. Spain (dec.), no. 60350/00, 4 October 2001
Cañete de Goñi v. Spain, no. 55782/00, ECHR 2002-VIII
Cappello v. Italy, 27 February 1992, Series A no. 230-F
Capital Bank AD v. Bulgaria, no. 49429/99, ECHR 2005-XII (extracts)
Capuano v. Italy, 25 June 1987, Series A no. 119
Carmel Saliba v. Malta, no. 24221/13, 29 November 2016
Cătănciu v. Romania (dec.), no. 22717/17, 6 December 2018
Cavajda v. the Czech Republic (dec.), no. 17696/07, 29 March 2011
Central Mediterranean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 v. Malta (no. 2), no. 18544/08, 22 November 2011
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no. 38433/09, ECHR 2012
Černius and Rinkevičius v. Lithuania, nos. 73579/17 and 14620/18, 18 February 2020
Chapman v. Belgium (dec.), no. 39619/06, 5 March 2013
Chaudet v. France, no. 49037/06, 29 October 2009
Chevrol v. France, no. 49636/99, ECHR 2003-III
Čičmanec v. Slovakia, no. 65302/11, 28 June 2016
Cimperšek v. Slovenia, no. 58512/16, 30 June 2020
Cindrić and Bešlić v. Croatia, no. 72152/13, 6 September 2016
Cingilli Holding A.Ş. and Cingilioğlu v. Turkey, nos. 31833/06 and 37538/06, 21 July 2015
Cipolletta v. Italy, no. 38259/09, 11 January 2018
Círová v. the Czech Republic (dec.), no. 33273/03, 22 March 2005
Čivinskaitė v. Lithuania, no. 21218/12, 15 September 2020
Clarke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3695/02, ECHR 2005-X (extracts)
Clavien v. Switzerland (dec.), no. 16730/15, 12 September 2017
Clinique des Acacias and Others v. France, nos. 65399/01 and 3 others, 13 October 2005
Cocchiarella v. Italy [GC], no. 64886/01, ECHR 2006-V
Codarcea v. Romania, no. 31675/04, 2 June 2009
Čolić v. Croatia, no. 49083/18, 18 November 2021
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dec.), no. 75218/01, 28 March 2006
Colloredo Mannsfeld v. the Czech Republic, nos. 15275/11 and 76058/12, 15 December 2016
Comingersoll S.A. v. Portugal [GC], no. 35382/97, ECHR 2000-IV
Cooper v. the United Kingdom [GC], no. 48843/99, ECHR 2003-XII
Coöperatieve Producentenorganisatie van de Nederlandse Kokkelvisserij U.A. v. Netherlands (dec.), no. 13645/05, ECHR 2009
Cordova v. Italy (no. 1), no. 40877/98, ECHR 2003-I
Cordova v. Italy (no. 2), no. 45649/99, ECHR 2003-I (extracts)
Cosmos Maritime Trading and Shipping Agency v. Ukraine, no. 53427/09, 27 June 2019
Croatian Golf Federation v. Croatia, no. 66994/14, 17 December 2020

Crompton v. the United Kingdom, no. 42509/05, 27 October 2009
Cubaniț v. Romania (dec.), no. 31510/02, 4 January 2007
Cudak v. Lithuania [GC], no. 15869/02, ECHR 2010
Cyprus v. Turkey [GC], no. 25781/94, ECHR 2001-IV

—D—

Dağtekin and Others v. Turkey, no. 70516/01, 13 December 2007
Dalea v. France (dec.), no. 964/07, 2 February 2010
Debled v. Belgium, 22 September 1994, Series A no. 292-B
De Bruin v. the Netherlands (dec.), no. 9765/09, 17 September 2013
De Geouffre de la Pradelle v. France, 16 December 1992, Series A no. 253-B
De Haan v. the Netherlands, 26 August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V
De Haes and Gijssels v. Belgium, 24 February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
De Moor v. Belgium, 23 June 1994, Series A no. 292-A
De Tommaso v. Italy, no. 43395/09, ECHR 2017 (extracts)
Del Sol v. France, no. 46800/99, ECHR 2002-II
Denisov v. Ukraine [GC], no. 76639/11, 25 September 2018
Deumeland v. Germany, 29 May 1986, Series A no. 100
Devinar v. Slovenia, no. 28621/15, 22 May 2018
Deweere v. Belgium, 27 February 1980, Series A no. 35
Dhahbi v. Italy, no. 17120/09, 8 April 2014
Di Pede v. Italy, 26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Diennet v. France, 26 September 1995, Series A no. 325-A
Dilipak and Karakaya v. Turkey, nos. 7942/05 and 24838/05, 4 March 2014
Dimopoulos v. Turkey, no. 37766/05, 2 April 2019
Dolca and Others v. Romania (dec.), nos. 59282/11 and 2 others, 4 September 2012
Dolińska-Ficek and Ozimek v. Poland, nos. 49868/19 and 57511/19, 8 November 2021
Dombo Beheer B.V. v. the Netherlands, 27 October 1993, Series A no. 274
Donadze v. Georgia, no. 74644/01, 7 March 2006
Döry v. Sweden, no. 28394/95, 12 November 2002
Dos Santos Calado and Others v. Portugal, nos. 55997/14 and 3 others, 31 March 2020
Dotta v. Italy (dec.), no. 38399/97, 7 September 1999
Doustaly v. France, 23 April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
Driza v. Albania, no. 33771/02, ECHR 2007-V (extracts)
Ducret v. France, no. 40191/02, 12 June 2007
Dulaurans v. France, no. 34553/97, 21 March 2000
Dzhidzheva-Trendafilova v. Bulgaria (dec.), no. 12628/09, 9 October 2012

—E—

EEG-Slachthuis Verbist Izegem v. Belgium (dec.), no. 60559/00, ECHR 2005-XII
Efstratiou and Others v. Greece, no. 53221/14, 19 November 2020
Eiffage S.A. and Others v. Switzerland (dec.), no. 1742/05, 15 September 2009
Eisenstecken v. Austria, no. 29477/95, ECHR 2000-X
Eker v. Turkey, no. 24016/05, 24 October 2017
Elcomp sp. z o.o. v. Poland, no. 37492/05, 19 April 2011
Elsholz v. Germany [GC], no. 25735/94, ECHR 2000-VIII
Ellès and Others v. Switzerland, no. 12573/06, 16 December 2010
Emesa Sugar N.V. v. the Netherlands (dec.), no. 62023/00, 13 January 2005
Eminağaoğlu v. Turkey, no. 76521/12, 9 March 2021

Emine Araç v. Turkey, no. 9907/02, ECHR 2008
Enea v. Italy [GC], no. 74912/01, ECHR 2009
Erkner and Hofauer v. Austria, 23 April 1987, Series A no. 117
Ernst and Others v. Belgium, no. 33400/96, 15 July 2003
Essaadi v. France, no. 49384/99, 26 February 2002
Estima Jorge v. Portugal, 21 April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
Eternit v. France (dec.), no. 20041/10, 27 March 2012
Evers v. Germany, no. 17895/14, 28 May 2020
Exel v. the Czech Republic, no. 48962/99, 5 July 2005
Ezgeta v. Croatia, no. 40562/12, 7 September 2017

—F—

Fabris v. France [GC], no. 16574/08, ECHR 2013 (extracts)
Farange S.A. v. France (dec.), no. 77575/01, 14 September 2004
Fayed v. the United Kingdom, 21 September 1994, Series A no. 294-B
Fazia Ali v. the United Kingdom, no. 40378/10, 20 October 2015
Fazlı Aslaner v. Turkey, no. 36073/04, 4 March 2014
Fazliyski v. Bulgaria, no. 40908/05, 16 April 2013
Feilazoo v. Malta, no. 6865/19, 11 March 2021
Feldbrugge v. the Netherlands, 29 May 1986, Series A no. 99
Fernandes de Oliveira v. Portugal [GC], no. 78103/14, 31 January 2019
Ferrazzini v. Italy [GC], no. 44759/98, ECHR 2001-VII
Ferreira Alves v. Portugal (no. 3), no. 25053/05, 21 June 2007
Fisanotti v. Italy, 23 April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
Fischer v. Austria, 26 April 1995, Series A no. 312
Fiume v. Italy, no. 20774/05, 30 June 2009
Flux v. Moldova (no. 2), no. 31001/03, 3 July 2007
Fociac v. Romania, no. 2577/02, 3 February 2005
Fodor v. Germany (dec.), no. 25553/02, 11 December 2006
Fogarty v. the United Kingdom [GC], no. 37112/97, ECHR 2001-XI (extracts)
Fomenko and Others v. Russia (dec.), nos. 42140/05 and 4 others, 24 September 2019
Forrer-Niedenthal v. Germany, no. 47316/99, 20 February 2003
Fraile Iturralde v. Spain (dec.), no. 66498/17, 7 May 2019
Frantzeskaki v. Greece (dec.), nos. 57275/17 and 2 others, 12 February 2019
Fredin v. Sweden (no. 2), 23 February 1994, Series A no. 283-A
Fretté v. France, no. 36515/97, ECHR 2002-I
Frezadou v. Greece, no. 2683/12, 8 November 2018
Frydlander v. France [GC], no. 30979/96, ECHR 2000-VII
Fuklev v. Ukraine, no. 71186/01, 7 June 2005

—G—

G.L. and S.L. v. France (dec.), no. 58811/00, ECHR 2003-III (extracts)
Gajtani v. Switzerland, no. 43730/07, 9 September 2014
Ganci v. Italy, no. 41576/98, ECHR 2003-XI
Gankin and Others v. Russia, nos. 2430/06 and 3 others, 31 May 2016
Garcia v. France, no. 41001/98, 26 September 2000
García Manibardo v. Spain, no. 38695/97, ECHR 2000-II
García Ruiz v. Spain [GC], no. 30544/96, ECHR 1999-I
Gaspari v. Slovenia, no. 21055/03, 21 July 2009

Gautrin and Others v. France, 20 Ma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I
Georgel and Georgeta Stoicescu v. Romania, no. 9718/03, 26 July 2011
Georgiadis v. Greece, 29 May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II
Geraguyn Khorhurd Patgamavorakan Akumb v. Armenia (dec.), no. 11721/04, 14 April 2009
Gerasimov and Others v. Russia, nos. 29920/05 and 10 others, 1 July 2014
Ghrenassia v. Luxembourg, no. 27160/19, 7 December 2021
Gnahoré v. France, no. 40031/98, ECHR 2000-IX
Gil Sanjuan v. Spain, no. 48297/15, 26 May 2020
Göç v. Turkey [GC], no. 36590/97, ECHR-2002-V
Gogić v. Croatia, no. 1605/14, 8 October 2020
Golder v. the United Kingdom, 21 February 1975, Series A no. 18
Golubović v. Croatia, no. 43947/10, 27 November 2012
Golyshev v. Russia (dec.), no. 51116/14, 3 September 2019
Gorou v. Greece (no. 2) [GC], no. 12686/03, 20 March 2009
Gorou v. Greece (no. 4), no. 9747/04, 11 January 2007
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no. 62543/00, ECHR 2004-III
Grace Gatt v. Malta, no. 46466/16, 8 October 2019
Gracia Gonzalez v. Spain, no. 65107/16, 6 October 2020
Granos Organicos Nacionales S.A. v. Germany, no. 19508/07, 22 March 2012
Gražulevičiūtė v. Lithuania, no. 53176/17, 14 December 2021
Guðmundur Andri Ástráðsson v. Iceland [GC], no. 26374/18, 1 December 2020
Guigue and SGEN-CFDT v. France (dec.), no. 59821/00, ECHR 2004-I
Guincho v. Portugal, 10 July 1984, Series A no. 81
Gülmez v. Turkey, no. 16330/02, 20 May 2008
Gutfreund v. France, no. 45681/99, ECHR 2003-VII



H. v. Belgium, 30 November 1987, Series A no. 127-B
H. v. France, 24 October 1989, Series A no. 162-A
H. v. the United Kingdom, 8 July 1987, Series A no. 120
Håkansson and Stuesson v. Sweden, 21 February 1990, Series A no. 171-A
Hamzagić v. Croatia, no. 68437/13, 9 December 2021
Hansen v. Norway, no. 15319/09, 2 October 2014
Harabin v. Slovakia, no. 58688/11, 20 November 2012
Harisch v. Germany, no. 50053/16, 11 April 2019
Hasan Tunç and Others v. Turkey, no. 19074/05, 31 January 2017
Hayati Çelebi and Others v. Turkey, no. 582/05, 9 February 2016
Helle v. Finland, 19 Dec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I
Helmers v. Sweden, 29 October 1991, Series A no 212-A
Helmut Blum v. Austria, no. 33060/10, 5 April 2016
Hentrich v. France, 22 September 1994, Series A no. 296-A
Herma v. Germany (dec.), no. 54193/07, 8 December 2009
Hesse-Anger and Anger v. Germany (dec.), no. 45835/99, ECHR 2001-VI
Higgins and Others v. France, 19 Februar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
Hiro Balani v. Spain, 9 December 1994, Series A no. 303-B
Hirvisaari v. Finland, no. 49684/99, 27 September 2001
Hokkanen v. Finland, 23 September 1994, Series A no. 299-A
Holding and Barnes PLC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352/02, ECHR 2002-IV
Holub v. the Czech Republic, no. 24880/05, 14 December 2010

Hôpital local Saint-Pierre d'Oléron and Others v. France, nos. 18096/12 and 20 others, 8 November 2018

Hornsby v. Greece, 19 March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I

Hotter v. Austria (dec.), no. 18206/06, 7 October 2010

Howald Moor and Others v. Switzerland, nos. 52067/10 and 41072/11, 11 March 2014

Hudáková and Others v. Slovakia, no. 23083/05, 27 April 2010

Humen v. Poland [GC], no. 26614/95, 15 October 1999

Hurter v. Switzerland, no. 53146/99, 15 December 2005

Hussein and Others v. Belgium, no. 45187/12, 16 March 2021

— I —

I.T.C. Ltd v. Malta (dec.), no. 2629/06, 11 December 2007

Igranov and Others v. Russia, no. 63246/10, 9 January 2018

Ilmseher v. Germany [GC], nos. 10211/12 and 27505/14, 4 December 2018

Immeubles Groupe Kosser v. France, no. 38748/97, 21 March 2002

Immobiliare Saffi v. Italy [GC], no. 22774/93, ECHR 1999-V

Indra v. Slovakia, no. 46845/99, 1 February 2005

Işyar v. Bulgaria, no. 391/03, 20 November 2008

Ivan Atanasov v. Bulgaria, no. 12853/03, 2 December 2010

— J —

J.C. and Others v. Belgium, no. 11625/17, 12 October 2021

Jahnke and Lenoble v. France (dec.), no. 40490/98, ECHR 2000-IX

Jallow v. Norway, no. 36516/19, 2 December 2021

Jam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1 February 1986, Series A no. 98

Jenița Mocanu v. Romania, no. 11770/08, 17 December 2013

John v. Germany (dec.), no. 15073/03, 13 February 2007

Jon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s. 34356/06 and 40528/06, ECHR 2014

Jovanović c. Serbie, no 32299/08, 2 octobre 2012

Juričić c. Croatie, no 58222/09, 26 juillet 2011

Jurismic and Collegium Mehrerau v. Austria, no. 62539/00, 27 July 2006

— K —

K.D.B. v. the Netherlands, 27 March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

K.S. v. Finland, no. 29346/95, 31 May 2001

Kakamoukas and Others v. Greece [GC], no. 38311/02, 15 February 2008

Kalogeropoulou and Others v. Greece and Germany (dec.), no. 59021/00, ECHR 2002-X

Kamenos v. Cyprus, no. 147/07, 31 October 2017

Kamenova v. Bulgaria, no. 62784/09, 12 July 2018

Karahasanoğlu v. Turkey, nos. 21392/08 and 2 others, 16 March 2021

Károly Nagy v. Hungary [GC], no. 56665/09, ECHR 2017

Karrar v. Belgium, no. 61344/16, 31 August 2021

Katte Klitsche de la Grange v. Italy, 27 October 1994, Series A no. 293-B

Keaney v. Ireland, no. 72060/17, 30 April 2020

Kemmache v. France (no. 3), 24 November 1994, Series A no. 296-C

Kenedi v. Hungary, no. 31475/05, 26 May 2009

Kerojärvi v. Finland, 19 July 1995, Series A no. 322

Khamidov v. Russia, no. 72118/01, 15 November 2007
Khrabrova v. Russia, no. 18498/04, 2 October 2012
Kılıç and Others v. Turkey, no. 33162/10, 3 December 2013
Kingsley v. the United Kingdom [GC], no. 35605/97, ECHR 2002-IV
Kinský v. the Czech Republic, no. 42856/06, 9 February 2012
Klausecker v. Germany, no. 415/07, 6 January 2015
Klauz v. Croatia, no. 42856/06, 9 February 2012
Kley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nos. 39343/98 and 3 others, ECHR 2003-VI
Kök v. Turkey, no. 1855/02, 19 October 2006
Köksoy v. Turkey, no. 31885/10, 13 January 2021
König v. Germany, 28 June 1978, Series A no. 27
Konkurrenten.no AS v. Norway (dec.), no. 47341/15, 5 November 2019
Kontalexis v. Greece, no. 59000/08, §§ 42-44, 31 May 2011
Koottummel v. Austria, no. 49616/06, 10 December 2009
Kosmidis and Kosmidou v. Greece, no. 32141/04, 8 November 2007
Koulias v. Cyprus, no. 48781/12, 26 May 2020
Kövesi v. Romania, no. 3594/19, 5 May 2020
Kožemiakina v. Lithuania, no. 231/15, 2 October 2018
Koziy v. Ukraine, no. 10426/02, 18 June 2009
Kraska v. Switzerland, 19 April 1993, Series A no. 254-B
Krčmář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no. 35376/97, 3 March 2000
Kress v. France [GC], no. 39594/98, ECHR 2001-VI
Kreuz v. Poland, no. 28249/95, ECHR 2001-VI
Krikorian v. France (dec.), no. 6459/07, 26 November 2013
Kristiansen and Tyvik AS v. Norway, no. 25498/08, 2 May 2013
Krunoslava Zovko v. Croatia, no. 56935/13, 23 May 2017
Kübler v. Germany, no. 32715/06, 13 January 2011
Kudła v. Poland [GC], no. 30210/96, ECHR 2000-XI
Kukkonen v. Finland (no. 2), no. 47628/06, 13 January 2009
Kunert v. Poland, no. 8981/14, 4 April 2019
Kurşun v. Turkey, no. 22677/10, 30 October 2018
Kushoglu v. Bulgaria, no. 48191/99, 10 May 2007
Kutić v. Croatia, no. 48778/99, ECHR 2002-II
Kuzhelev and Others v. Russia, nos. 64098/09 and 6 others, 15 October 2019
Kyprianou v. Cyprus [GC], no. 73797/01, ECHR 2005-XIII
Kyrtatos v. Greece, no. 41666/98, ECHR 2003-VI (extracts)



L.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4222/96, ECHR 1999-VI
L'Érablière A.S.B.L. v. Belgium, no. 49230/07, ECHR 2009
Laçi v. Albania, no. 28142/17, 19 October 2021
Lady S.R.L. v. Republic of Moldova, no. 39804/06, 23 October 2018
Laidin v. France (no. 2), no. 39282/98, 7 January 2003
Laino v. Italy [GC], no. 33158/96, ECHR 1999-I
Lamanna v. Austria, no. 28923/95, 10 July 2001
Langborger v. Sweden, 22 June 1989, Series A no. 155
Laskowska v. Poland, no. 77765/01, 13 March 2007
Lavents v. Latvia, no. 58442/00, 28 November 2002
Le Calvez v. France, 29 Jul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
Le Compte, Van Leuven and De Meyere v. Belgium, 23 June 1981, Series A no. 43

Lechner and Hess v. Austria, 23 April 1987, Series A no. 118
Letinčić v. Croatia, no. 7183/11, 3 May 2016
Levages Prestations Services v. France, 23 Octo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
Libert v. Belgium (dec.), no. 44734/98, 8 July 2004
Liga Portuguesa de Futebol Profissional v. Portugal (déc.), no. 49639/09, 3 April 2012
Lithgow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8 July 1986, Series A no. 102
Lobo Machado v. Portugal, 20 February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
Loiseau v. France (dec.), no. 46809/99, ECHR 2003-XII
López Ribalda and Others v. Spain, [GC], nos. 1874/13 and 8567/13, 17 October 2019
Loquifer v. Belgium, nos. 79089/13 and 2 others, 20 July 2021
Lorenzetti v. Italy, no. 32075/09, 10 April 2012
Lovrić v. Croatia, no. 38458/15, 4 April 2017
Luka v. Romania, no. 34197/02, 21 July 2009
Lunari v. Italy, no. 21463/93, 11 January 2001
Lundevall v. Sweden, no. 38629/97, 12 November 2002
Luordo v. Italy, no. 32190/96, ECHR 2003-IX
Lupaş and Others v. Romania, nos. 1434/02 and 2 others, ECHR 2006-XV (extracts)
Lupeni Greek Catholic Parish and Others v. Romania [GC], no. 76943/11, ECHR 2016 (extracts)

—M—

M.L. v. Slovakia, no. 34159/17, 14 October 2021
Maaouia v. France [GC], no. 39652/98, ECHR 2000-X
Mackay and BBC Scotland v. the United Kingdom, no. 10734/05, 7 December 2010
Magnin v. France (dec.), no. 26219/08, 10 May 2012
Magomedov and Others v. Russia, nos. 33636/09 and 9 others, 28 March 2017
Majorana v. Italy (dec.), no. 75117/01, 26 May 2005
Malhous v. the Czech Republic [GC], no. 33071/96, 12 July 2001
Mamatkulov and Askarov v. Turkey [GC], nos. 46827/99 and 46951/99, ECHR 2005-I
Manoilescu and Dobrescu v. Romania and Russia (dec.), no. 60861/00, ECHR 2005 VI
Mantovanelli v. France, 18 mars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I
Manzano Diaz v. Belgium, no. 26402/17, 18 May 2021
Marc-Antoine v. France (dec.), no. 54984/09, 4 June 2013
Marcello Viola v. Italy, no. 45106/04, ECHR 2006-XI (extracts)
Marić v. Croatia (déc), no. 37333/17, 10 November 2020
Marini v. Albania, no. 3738/02, 18 December 2007
Markovic and Others v. Italy [GC], no. 1398/03, ECHR 2006-XIV
Martinie v. France [GC], no. 58675/00, ECHR 2006-VI
Martins Moreira v. Portugal, 26 October 1988, Series A no. 143,
Marušić v. Croatia (dec.), no. 79821/12, 23 May 2017
Masson and Van Zon v. the Netherlands, 28 September 1995, Series A no. 327-A
Matheus v. France, no. 62740/00, 31 March 2005
Mats Jacobsson v. Sweden, 28 June 1990, Series A no. 180-A
McElhinney v. Ireland [GC], no. 31253/96, ECHR 2001-XI (extracts)
McGinley and Egan v. the United Kingdom, 9 June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I
McGonnell v. the United Kingdom, no. 28488/95, ECHR 2000-II
McMichael v. the United Kingdom, 24 February 1995, Series A no. 307-B
McVicar v. the United Kingdom, no. 46311/99, ECHR 2002-III
Melnyk v. Ukraine, no. 23436/03, 28 March 2006
Menchinskaya v. Russia, no. 42454/02, 15 January 2009
Mercieca and Others v. Malta, no. 21974/07, 14 June 2011

Mérigaud v. France, no. 32976/04, 24 September 2009
Metaxas v. Greece, no. 8415/02, 27 May 2004
Mežnarić v. Croatia, no. 71615/01, 15 July 2005
Micallef v. Malta [GC], no. 17056/06, ECHR 2009
Miessen v. Belgium, no. 31517/12, 18 October 2016
Mihalache v. Romania [GC], no. 54012/10, 8 July 2019
Mihova v. Italy (dec.), no. 25000/07, 30 March 2010
Mihail Mihăilescu v. Romania, no. 3795/15, 12 January 2021
Mikhail Mironov v. Russia, no. 58138/09, 6 October 2020
Mikhno v. Ukraine, no. 32514/12, 1 September 2016
Mikulić v. Croatia, no. 53176/99, ECHR 2002-I
Milatová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no. 61811/00, ECHR 2005-V
Miller v. Sweden, no. 55853/00, 8 February 2005
Mincheva v. Bulgaria, no. 21558/03, 2 September 2010
Miracle Europe Kft v. Hungary, no. 57774/13, 12 January 2016
Miragall Escolano and Others v. Spain, nos. 38366/97 and 9 others, ECHR 2000-I
Miroļubovs and Others v. Latvia, no. 798/05, 15 September 2009
Mirovni Inštitut v. Slovenia, no. 32303/13, 13 March 2018
Miryana Petrova v. Bulgaria, no. 57148/08, 21 July 2016
Mocié v. France, no. 46096/99, 8 April 2003
Molla Sali v. Greece [GC], no. 20452/14, 19 December 2018
Momčilović v. Croatia, no. 11239/11, 26 March 2015
Momčilović v. Serbia, no. 23103/07, 2 April 2013
Monnel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2 March 1987, Series A no. 115
Mont Blanc Trading Ltd and Antares Titanium Trading Ltd v. Ukraine, no. 11161/08, 14 January 2021
Montcornet de Caumont v. France (dec.), no. 59290/00, ECHR 2003-VII
Morawska v. Poland (dec.), no. 3508/12, 7 January 2020
Moreira de Azevedo v. Portugal, 23 October 1990, Series A no. 189
Moreira Ferreira v. Portugal (no. 2) [GC], no. 19867/12, ECHR 2017 (extracts)
Morel v. France, no. 34130/96, ECHR 2000-VI
Morice v. France [GC], no. 29369/10, ECHR 2015
Moroko v. Russia, no. 20937/07, 12 June 2008
Moser v. Austria, no. 12643/02, 21 September 2006
Mosteanu and Others v. Romania, no. 33176/96, 26 November 2002
Mugoša v. Montenegro, no. 76522/12, 21 June 2016
Munteanu v. Romania (dec.), no. 54640/13, 11 February 2020
Mustafa Tunç and Fecire Tunç v. Turkey [GC], no. 24014/05, 14 April 2015
Musumeci v. Italy, no. 33695/96, 11 January 2005
Mutu and Pechstein v. Switzerland, nos. 40575/10 and 67474/10, 2 October 2018

—N—

Naït-Liman v. Switzerland [GC], no. 51357/07, 15 March 2018
Naki and AMED Sportif Faaliyetler Kulübü Derneği v. Turkey, no. 48924/16, 18 May 2021
Naku v. Lithuania and Sweden, no. 26126/07, 8 November 2016
Nataliya Mikhaylenko v. Ukraine, no. 49069/11, 30 May 2013
National & Provincial Building Society, Leeds Permanent Building Society and Yorkshire Building Society v. the United Kingdom, 23 Octo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
Nazsız v. Turkey (dec.), no. 22412/05, 26 May 2009
Ndayegamiye-Mporamazina v. Switzerland, no. 16874/12, 5 February 2019
Nedelcho Popov v. Bulgaria, no. 61360/00, 22 November 2007

Nejdet Şahin and Perihan Şahin v. Turkey [GC], no. 13279/05, 20 October 2011
Neshev v. Bulgaria (dec.), no. 40897/98, 13 March 2003
Nicholas v. Cyprus, no. 63246/10, 9 January 2018
Nicholas v. Cyprus (dec.), no. 37371/97, 14 March 2000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no. 41720/13, 25 June 2019
Nideröst-Huber v. Switzerland, 18 February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
Niederböster v. Germany, no. 39547/98, ECHR 2003-IV (extracts)
Nikolyan v. Armenia, no. 74438/14, 3 October 2019
Nikoloudakis v. Greece, no. 35322/12, 26 March 2020
Nikolova and Vandova v. Bulgaria, no. 20688/04, 17 December 2013
Nunes Dias v. Portugal (dec.), nos. 2672/03 and 69829/01, ECHR 2003-IV

—O—

Obermeier v. Austria, 28 June 1990, Series A no. 179
Oerlemans v. the Netherlands, 27 November 1991, Series A no. 219
Ogieriakhi v. Ireland (dec.), no. 57551/17, 30 April 2019
OGIS-Institut Stanislas, OGEC Saint-Pie X and Blanche de Castille and Others v. France, nos. 42219/98 and 54563/00, 27 May 2004
Ohneberg v. Austria, no. 10781/08, 18 September 2012
Okay and Others v. Turkey, no. 36220/97, ECHR 2005-VII
Oleksandr Volkov v. Ukraine, no. 21722/11, ECHR 2013
Oleynikov v. Russia, no. 36703/04, 14 March 2013
Olsson v. Sweden (no. 1), 24 March 1988, Series A no. 130
Olujić v. Croatia, no. 22330/05, 5 February 2009
Omdahl v. Norway, no. 46371/18, 22 April 2021
OOO Link Oil SPB v. Russia (dec.), no. 42600/05, 25 June 2009
Organisation nationale des syndicats d'infirmiers libéraux (ONSIL) v. France (dec.), no. 39971/98, ECHR 2000-IX
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no. 15766/03, ECHR 2010
Ortenberg v. Austria, 25 November 1994, Series A no. 295-B
Osinger v. Austria, no. 54645/00, 24 March 2005
Osman v. the United Kingdom 28 Octo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II
Oorzhak v. Russia, no. 4830/18, 30 March 2021
Ouzounis and Others v. Greece, no. 49144/99, 18 April 2002

—P—

P., C. and S. v. the United Kingdom, no. 56547/00, ECHR 2002-VI
Pabla Ky v. Finland, no. 47221/99, ECHR 2004-V
Pafitis and Others v. Greece, 26 Februar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
Pailot v. France, 22 April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
Paksas v. Lithuania [GC], no. 34932/04, ECHR 2011
Pammel v. Germany, 1 July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V
Panjeheighalehei v. Denmark (dec.), no. 11230/07, 13 October 2009
Papachelas v. Greece [GC], no. 31423/96, ECHR 1999-II
Papaioannou v. Greece, no. 18880/15, 2 June 2016
Papageorgiou v. Greece, 22 Octo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
Papon v. France (dec.), no. 344/04, ECHR 2005-XI
Parlov-Tkalčić v. Croatia, no. 24810/06, 22 December 2009

Parol v. Poland, no. 65379/13, 11 October 2018
Pasquini v. San Marino, no. 50956/16, 2 May 2019
Pastore v. Italy (dec.), no. 46483/99, 25 May 1999
Paulsen-Medalen and Svensson v. Sweden, 19 Februar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
Pedro Ramos v. Switzerland, no. 10111/06, 14 October 2010
Peleki v. Greece, no. 69291/12, 5 March 2020
Pellegrin v. France [GC], no. 28541/95, ECHR 1999-VIII
Pellegrini v. Italy, no. 30882/96, ECHR 2001-VIII
Peñafiel Salgado v. Spain (dec.), no. 65964/01, 16 April 2002
Pereira da Silva v. Portugal, no. 77050/11, 22 March 2016
Perez v. France [GC], no. 47287/99, ECHR 2004-I
Pérez de Rada Cavanilles v. Spain, 28 Octo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II
Peruš v. Slovenia, no. 35016/05, 27 September 2012
Pescador Valero v. Spain, no. 62435/00, ECHR 2003-VII
Petko Petkov v. Bulgaria, no. 2834/06, 19 February 2013
Petrella v. Italy, no. 24340/07, 18 March 2021
Petrović and Others v. Montenegro, no. 18116/15, 17 July 2018
Pétur Thór Sigurðsson v. Iceland, no. 39731/98, ECHR 2003-IV
Philis v. Greece (no. 1), 27 August 1991, Series A no. 209
Philis v. Greece (no. 2), 27 June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V
Pierre-Bloch v. France, 21 Octo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
Pini and Others v. Romania, nos. 78028/01 and 78030/01, ECHR 2004-V (extracts)
Pişkin v. Turkey, no. 33399/18, 15 December 2020
Pizzetti v. Italy, 26 February 1993, Series A no. 257-C
Platakou v. Greece, no. 38460/97, ECHR 2001-I
Pocius v. Lithuania, no. 35601/04, 6 July 2010
Podbielski and PPU Polpure v. Poland, no. 39199/98, 26 July 2005
Poiss v. Austria, 23 April 1987, Series A no. 117
Polyakh and Others v. Ukraine, nos. 58812/15 and 4 others, 17 October 2019
Pönkä v. Estonia, no. 64160/11, 8 November 2016
Posti and Rahko v. Finland, no. 27824/95, ECHR 2002-VII
Potocka and Others v. Poland, no. 33776/96, ECHR 2001-X
Pravednaya v. Russia, no. 69529/01, 18 November 2004
Preda and Dardari v. Italy (dec.), nos. 28160/95 and 28382/95, ECHR 1999-III
Pretto and Others v. Italy, 8 December 1983, Series A no. 71
Pridatchenko and Others v. Russia, nos. 2191/03 and 3 others, 21 June 2007
Prince Hans-Adam II of Liechtenstein v. Germany [GC], no. 42527/98, ECHR 2001-VIII
Probstmeier v. Germany, 1 July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V
Procola v. Luxembourg, 28 September 1995, Series A no. 326
Prodan v. Moldova, no. 49806/99, ECHR 2004-III (extracts)
Project-Trade d.o.o. v. Croatia, no. 1920/14, 19 November 2020
Pudas v. Sweden, 27 October 1987, Series A no. 125-A
Puolitaival and Pirttiaho v. Finland, no. 54857/00, 23 November 2004

—R—

R.P.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38245/08, 9 October 2012
R.S. v. Germany (dec.), no. 19600/15, 28 March 2017
RTBF v. Belgium, no. 50084/06, ECHR 2011
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nos. 37685/10 and 22768/12, 20 March 2018

Ramljak v. Croatia, no. 5856/13, 27 June 2017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nos. 55391/13 and 2 others, 6 November 2018
Raylyan v. Russia, no. 22000/03, 15 February 2007
Reczkowicz v. Poland, no. 43447/19, 22 July 2021
Refah P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dec.), nos. 41340/98 and 3 others, 3 October 2000
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no. 35289/11, 19 September 2017
Repecevirág Szövetkezet v. Hungary, no. 70750/14, 30 April 2019
Reuther v. Germany (dec.), no. 74789/01, ECHR 2003-IX
Ringeisen v. Austria, 16 July 1971, Series A no. 13
Robins v. the United Kingdom, 23 Sept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
Roche v. the United Kingdom [GC], 32555/96, ECHR 2005-X
Rolf Gustafson v. Sweden, 1 July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V
Romańczyk v. France, no. 7618/05, 18 November 2010
Ronald Vermeulen v. Belgium, no. 5475/06, 17 July 2018
Rotaru v. Romania [GC], no. 28341/95, ECHR 2000-V
Rozalia Avram v. Romania, no. 19037/07, 16 September 2014
Ruianu v. Romania, no. 34647/97, 17 June 2003
Ruiz-Mateos v. Spain, 23 June 1993, Series A no. 262
Ruiz Torija v. Spain, 9 December 1994, Series A no. 303-A
Ruotolo v. Italy, 27 February 1992, Series A no. 230-D
Rustavi 2 Broadcasting Company Ltd and Others v. Georgia, no. 16812/17, 18 July 2019
Ryabykh v. Russia, no. 52854/99, ECHR 2003-IX
Ryakib Biryukov v. Russia, no. 14810/02, ECHR 2008

—S—

S., v. and A. v. Denmark [GC], nos. 35553/12 and 2 others, 22 October 2018
Sabeh El Leil v. France [GC], no. 34869/05, 29 June 2011
Sabin Popescu v. Romania, no. 48102/99, 2 March 2004
Sablon v. Belgium, no. 36445/97, 10 April 2001
Saccoccia v. Austria (dec.), no. 69917/01, 5 July 2007
Saccoccia v. Austria, no. 69917/01, 18 December 2008
Sace Elektrik Ticaret ve Sanayi A.Ş. v. Turkey, no. 20577/05, 22 October 2013
Sacilor Lormines v. France, no. 65411/01, ECHR 2006-XIII
Sailing Club of Chalkidiki "I Kelyfos" v. Greece, nos. 6978/18 and 8547/18, 21 November 2019
Sakellaropoulos v. Greece (dec.), no. 38110/08, 6 January 2011
Salesi v. Italy, no. 26 February 1993, Series A no. 257-E
Salomonsson v. Sweden, no. 38978/97, 12 November 2002
Şamat v. Turkey, no. 29115/07, 21 January 2020
San Leonard Band Club v. Malta, no. 77562/01, ECHR 2004-IX
Sanglier v. France, no. 50342/99, 27 May 2003
Sanofi Pasteur v. France, no. 25137/16, 13 February 2020
Santambrogio v. Italy, no. 61945/00, 21 September 2004
Santos Pinto v. Portugal, no. 39005/04, 20 May 2008
Saoud v. France, no. 9375/02, 9 October 2007
Sara Lind Eggertsdóttir v. Iceland, no. 31930/04, 5 July 2007
Sartory v. France, no. 40589/07, 24 September 2009
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no. 931/13, ECHR 2017 (extracts)
Savino and Others v. Italy, nos. 17214/05 and 2 others, 28 April 2009

Savitskyy v. Ukraine, no. 38773/05, 26 July 2012
Scerri v. Malta, no. 36318/18, 7 July 2020
Schipani and Others v. Italy, no. 38369/09, 21 July 2015
Schmidt v Latvia, no. 22493/05, 27 April 2017
Schouten and Meldrum v. the Netherlands, 9 December 1994, Series A no. 304
Schuler-Zraggen v. Switzerland, 24 June 1993, Series A no. 263
Scordino v. Italy (no. 1) [GC], no. 36813/97, ECHR 2006-V
Sdružení Jihočeské Matky v. the Czech Republic (dec.), no. 19101/03, 10 July 2006
Sedat Doğan v. Turkey, no. 48909/14, 18 May 2021
Sekul v. Croatia (dec.), no. 43569/13, 30 June 2015
Selin Aslı Öztürk v. Turkey, no. 39523/03, 13 October 2009
Selmani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67259/14, 9 February 2017
Sharxhi and Others v. Albania, no. 10613/16, 11 January 2018
Siatkowska v. Poland, no. 8932/05, 22 March 2007
Siegel v. France, no. 36350/97, ECHR 2000-XII
Siegle v. Romania, no. 23456/04, 16 April 2013
Sigalas v. Greece, no. 19754/02, 22 September 2005
Sigma Radio Television Ltd v. Cyprus, nos. 32181/04 and 35122/05, 21 July 2011
Šikić v. Croatia, no. 9143/08, 15 July 2010
Silva Pontes v. Portugal, 23 March 1994, series A no 286-A
Sine Tsaggarakis A.E.E. v. Greece, no. 17257/13, 23 May 2019
Skorobogatykh v. Russia (dec.), no. 37966/02, 8 June 2006
Słomka v. Poland, no. 68924/12, 6 December 2018
Smirnov v. Russia (dec.), no. 14085/04, 6 July 2006
Société anonyme d'habitations à loyers modérés Terre et Famille v. France (dec.), no. 62033/00, 17 February 2004
Société de gestion du port de Campoloro and Société fermière de Campoloro v. France, no. 57516/00, 26 September 2006
Sokurenko and Strygun v. Ukraine, nos. 29458/04 and 29465/04, 20 July 2006
Sommerfeld v. Germany [GC], no. 31871/96, ECHR 2003-VIII (extracts)
Somorjai v. Hungary, no. 60934/13, 28 August 2018
Sotiris and Nikos Koutras ATTEE v. Greece, no. 39442/98, ECHR 2000-XII
Sovtransavto Holding v. Ukraine, no. 48553/99, ECHR 2002-VII
Speil v. Austria (dec.), no. 42057/98, 5 September 2002
Sporrong and Lönnroth v. Sweden, 23 September 1982, Series A no. 52
Spūlis and Vaškevičs v. Latvia (dec.), nos. 2631/10 and 12253/10, 18 November 2014
Sramek v. Austria, 22 October 1984, Series A no. 84
Stanev v. Bulgaria [GC], no. 36760/06, ECHR 2012
Stankiewicz v. Poland, no. 46917/99, ECHR 2006-VI
Stankov v. Bulgaria, no. 68490/01, 12 July 2007
Star Cate Epilekta Gevmata and Others v. Greece (dec.), no. 54111/07, 6 July 2010
Staroszczyk v. Poland, no. 59519/00, 22 March 2007
Stavroulakis v. Greece (dec.), no. 22326/10, 28 January 2014
Steck-Risch and Others v. Liechtenstein, no. 63151/00, 19 May 2005
Stee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no. 68416/01, ECHR 2005-II
Stegarescu and Bahrin v. Portugal, no. 46194/06, 6 April 2010
Stepinska v. France, no. 1814/02, 15 June 2004
Stichting Landgoed Steenberge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no. 19732/17, 16 February 2021
Stichting Mothers of Srebrenica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dec.), no. 65542/12, ECHR 2013 (extracts)
Stoimenovikj and Miloshevijk v. North Macedonia, no. 59842/14, 25 March 2021
Storck v. Germany, no. 61603/00, ECHR 2005-V

Stran Greek Refineries and Stratis Andreadis v. Greece, 9 December 1994, Series A no. 301-B
Stubbing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2 Octo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Succi and Others v. Italy, nos. 55064/11 and 2 others, 28 October 2021
Suda v. the Czech Republic, no. 1643/06, 28 October 2010
Suküt v. Turkey (dec.), no. 59773/00, 11 September 2007
Suominen v. Finland, no. 37801/97, 1 July 2003
Sürmeli v. Germany [GC], no. 75529/01, ECHR 2006-VII
Süßmann v. Germany, 16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Švarc and Kavnik v. Slovenia, no. 75617/01, 8 February 2007
Svilengačanin and Others v. Serbia, nos. 50104/10 and 9 others, 12 January 2021
Syngelidis v. Greece, no. 24895/07, 11 February 2010
Szücs v. Austria, 24 Nov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



Tabbane v. Switzerland (dec.), no. 41069/12, 1 March 2016
Tabor v. Poland, no. 12825/02, 27 June 2006
Taratukhin v. Russia, no. 74778/14, 15 September 2020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no. 46117/99, ECHR 2004-X
Tatishvili v. Russia, no. 1509/02, ECHR 2007-I
Tel v. Turkey, no. 36785/03, 17 October 2017
Tence v. Slovenia, no. 37242/14, 31 May 2016
Ternovskis v. Latvia, no. 33637/02, 29 April 2014
Terra Woningen B.V. v. the Netherlands, 17 Dec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I
Teteriny v. Russia, no. 11931/03, 30 June 2005
The Holy Monasteries v. Greece, 9 December 1994, Series A no. 301-A
Thiam v. France, no. 80018/12, 18 October 2018
Thlimmenos v. Greece [GC], no. 34369/97, ECHR 2000-IV
Tiemann v. France and Germany (dec.), nos. 47457/99 and 47458/99, ECHR 2000-IV
Tierce v. San Marino, no. 69700/01, ECHR 2003-VII
Tiğrak v. Turkey, no. 70306/10, 6 July 2021
Timofeyev and Postupkin v. Russia, nos. 45431/14 and 22769/15, 19 January 2021
Tinnelly & Sons Ltd and Others and McElduff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0 Jul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V
Titan Total Group S.R.L.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61458/08, 6 July 2021
Tocono and Profesorii Prometeiști v. Moldova, no. 32263/03, 26 June 2007
Tolstoy Miloslavsky v. the United Kingdom, 13 July 1995, Series A no. 316-B
Torri v. Italy, 1 July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V
Tourisme d'affaires v. France, no. 17814/10, 16 February 2012
Toziczka v. Poland, no. 29995/08, 24 July 2012
Transado - Transportes Fluviais Do Sado, S.A. v. Portugal (dec.), no. 35943/02, ECHR 2003-XII
Trapeznikov and Others v. Russia, nos. 5623/09 and 3 others, 5 April 2016
Tre Traktörer Aktiebolag v. Sweden, 7 July 1989, Series A no. 159
Tregubenko v. Ukraine, no. 61333/00, 2 November 2004
Treska v. Albania and Italy (dec.), no. 26937/04, ECHR 2006-XI (extracts)
Trevisanato v. Italy, no. 32610/07, 15 September 2016
Tsanova-Gecheva v. Bulgaria, no. 43800/12, 15 September 2015
Tsfayo v. the United Kingdom, no. 60860/00, 14 November 2006
Tsikakis v. Germany, no. 1521/06, 10 February 2011

Turczanik v. Poland, no. 38064/97, ECHR 2005-VI
Tuziński v. Poland (dec), no. 40140/98, 30 March 1999

—U—

Uçar v. Turkey (dec.), no. 12960/05, 29 September 2009
Ullens de Schooten and Rezabek v. Belgium, nos. 3989/07 and 38353/07, 20 September 2011
Ulyanov v. Ukraine (dec.), no. 16472/04, 5 October 2010
Unédic v. France, no. 20153/04, 18 December 2008
Unión Alimentaria Sanders S.A. v. Spain, 7 July 1989, Series A no. 157
Urechean and Pavlicenco v. the Republic of Moldova, nos. 27756/05 and 41219/07, 2 December 2014
Užukauskas v. Lithuania, no. 16965/04, 6 July 2010

—V—

Valová, Slezák and Slezák v. Slovakia, no. 44925/98, 1 June 2004
Van de Hurk v. the Netherlands, 19 April 1994, Series A no. 288
Van Marle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26 June 1986, Series A no. 101
Van Orshoven v. Belgium, 25 June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II
Vardanyan and Nanushyan v. Armenia, no. 8001/07, 27 October 2016
Varela Assalino v. Portugal (dec.), no. 64336/01, 25 April 2002
Vasil Vasilev v. Bulgaria, no. 7610/15, 16 November 2021
Vasilchenko v. Russia, no. 34784/02, 23 September 2010
Verein gegen Tierfabriken Schweiz (VgT) v. Switzerland (no. 2), no. 32772/02, 4 October 2007
Verlagsgruppe News GmbH v. Austria (dec.), no. 62763/00, 16 January 2003
Vermeulen v. Belgium, 20 February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
Vernillo v. France, 20 February 1991, Series A no. 198
Versini v. France, no. 40096/98, 10 July 2001
Victor Laurențiu Marin v. Romania, no. 75614/14, 12 January 2021
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no. 63235/00, ECHR 2007-II
Vocaturo v. Italy, 24 May 1991, Series A no. 206-C
Voggenreiter v. Germany, no. 47169/99, ECHR 2004-I (extracts)
Von Maltzan and Others v. Germany (dec.) [GC], nos. 71916/01 and 2 others, ECHR 2005-V

—W—

Wagner and J.M.W.L. v. Luxembourg, no. 76240/01, 28 June 2007
Waite and Kennedy v. Germany [GC], no. 26083/94, ECHR 1999-I
Wallishauser v. Austria, no. 156/04, 17 July 2012
Warsicka v. Poland, no. 2065/03, 16 January 2007
Weissman and Others v. Romania, no. 63945/00, ECHR 2006-VII (extracts)
Werner v. Austria, 24 Nov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
Wettstein v. Switzerland, no. 33958/96, ECHR 2000-XII
Wierzbicki v. Poland, no. 24541/94, 18 June 2002
Wiesinger v. Austria, 30 October 1991, Series A no. 213
Woś v. Poland, no. 22860/02, ECHR 2006-VII
Wynen and Centre hospitalier interrégional Edith-Cavell v. Belgium, no. 32576/96, ECHR 2002-VIII

—X—

X v. France, 31 March 1992, Series A no. 234-C
X and Others v. Russia, nos. 78042/16 and 66158/14, 14 January 2020
Xero Flor w Polsce sp. z o.o. v. Poland, no. 4907/18, 7 May 2021
Xhoxhaj v. Albania, no. 15227/19, 9 February 2021

—Y—

Yagtzilar and Others v. Greece, no. 41727/98, ECHR 2001-XII
Yakovlev v. Russia, no. 72701/01, 15 March 2005
Yankov v. Bulgaria (dec.), no. 44768/10, 18 June 2019
Yavorivskaya v. Russia, no. 34687/02, 21 July 2005
Yevdokimov and Others v. Russia, nos. 27236/05 and 10 others, 16 February 2016
Yvon v. France, no. 44962/98, ECHR 2003-V

—Z—

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29392/95, ECHR 2001-V
Zagorodnikov v. Russia, no. 66941/01, 7 June 2007
Zalli v. Albania (dec.), no. 52531/07, 8 February 2011
Zander v. Sweden, 25 November 1993, Series A no. 279-B
Zapletal v. the Czech Republic (dec.), no. 12720/06, 30 November 2010
Zappia v. Italy, 26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Zavodnik v. Slovenia, no. 53723/13, 21 May 2015
Ziegler v. Switzerland, no. 33499/96, 21 February 2002
Zielinski, Pradal, Gonzalez and Others v. France [GC], nos. 24846/94 and 9 others, ECHR 1999-VII
Zimmermann and Steiner v. Switzerland, 13 July 1983, Series A no. 66
Zollmann v. the United Kingdom (dec.), no. 62902/00, ECHR 2003-XII
Zolotas v. Greece, no. 38240/02, 2 June 2005
Zubac v. Croatia [GC], no. 40160/12, 5 April 2018
Zumtobel v. Austria, 21 September 1993, Series A no. 268-A
Zustović v. Croatia, no. 27903/15, 22 April 2021
Zvolský and Zvolská v. the Czech Republic, no. 46129/99, ECHR 2002-IX